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결산분석시리즈 IV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민석 예산분석관

권인오 예산분석관

문소희 예산분석관

**지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채현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2026. 7.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

#### I. 결산 개요 / 5

- 1. 현 황 ..... 5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9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0

#### II. 주요 사업 분석 / 11

##### 〈일반회계〉

-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11
- 2. 의정아카데미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17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I. 결산 개요 / 23

- 1. 현 황 ..... 23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7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8

## II. 주요 사업 분석 / 29

### 〈일반회계〉

- 1. 기본경비의 연례적 전용 및 세목조정 문제 ..... 29

### [대통령경호처]

#### I. 결산 개요 / 35

- 1. 현 황 ..... 35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9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40

## II. 주요 사업 분석 / 41

### 〈일반회계〉

- 1.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불용 과다 문제 ..... 41

### [국가인권위원회]

#### I. 결산 개요 / 47

- 1. 현 황 ..... 47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51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 I. 결산 개요 / 57

- 1. 현 황 ..... 57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64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65

#### II. 주요 사업 분석 / 66

##### 〈일반회계〉

- 1. 형사보상금으로의 이·전용 최소화 필요 ..... 66
-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73
  - 2-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 73
  - 2-2. 동감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 77
- 3.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관리 강화 등 필요 ..... 80
- 4.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의 국외여비 집행 필요 ..... 87
- 5. 법무부 및 소속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최소화 필요 ..... 90
- 6.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계 기능 등 개선 필요 ..... 96
- 7. 마약수사 일반수용비 집행부진 ..... 107
- 8. 법무연수원 비상임연구위원 제도 운영 검토 필요 ..... 111
- 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시설·장비 기준 등 ..... 116



# CONTENTS

10. 실무수습변호사 제도 운영 체계화 필요 .....	120
11.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관리 강화 필요 .....	125
12. 장기·과다 미수납 과태료 등 체계적 관리 필요 .....	132
13. 관서운영경비 적정 집행 필요 .....	137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체계 강화 필요 .....	140
------------------------------------	-----

## [법제처]

### I. 결산 개요 / 147

1. 현 황 .....	147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50

## [감사원]

### I. 결산 개요 / 153

1. 현 황 .....	153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57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8

## II. 주요 사업 분석 / 159

### 〈일반회계〉

- 1. 감사원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및 법정기한 준수 필요 등 ..... 159
  - 1-1. 감사원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필요 ..... 160
  - 1-2. 감사원 성과지표 실적 제고 등 ..... 16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I. 결산 개요 / 173

- 1. 현 황 ..... 173

### [헌법재판소]

#### I. 결산 개요 / 179

- 1. 현 황 ..... 179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82

## [대법원]

### I. 결산 개요 / 185

- 1. 현 황 ..... 185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92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93

### II. 주요 사업 분석 / 194

#### 〈일반회계〉

- 1.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계약 체결 지연 ..... 194
- 2.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의 연례적 이월 ..... 199
- 3.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의 불용 ..... 202
  - 3-1.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 후 불용 ..... 202
  - 3-2. HW 및 상용 SW 구입 지연 ..... 206
- 4. 재판일반경비지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209
  - 4-1.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사업의 연례적인 지연 ..... 209
  - 4-2.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의 장비구매 문제 ..... 212
  - 4-3.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 개선 필요 ..... 216
- 5.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한 환류 체계 보완 필요 ..... 218

#### 〈등기특별회계〉

- 6. 일반회계 전출금의 연례적 불용 ..... 222
- 7.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의 불용 및 노후장비 교체 지연 ..... 227



# CONTENTS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8.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지연 ..... 230
- 9. 감정관리센터 신규 개소 시 발생한 임차료 불용 ..... 236



# 국회운영위원회







국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억 1,800만원이며, 47억 8,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1.8%인 45억 9,900만 원을 수납하고 5,000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3,500만 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518	4,518	4,518	4,784	4,599	50	135	101.8

자료: 국회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023억 7,200만원이며, 이 중 94.1%인 7,551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180억 1,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2억 5,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 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76,135	776,135	802,372	755,105	18,010	29,257	94.1

자료: 국회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회의 자산은 5조 9,774억 7,400만원, 부채는 465억 9,1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9,308억 8,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9억 5,300만원, 유·무형자산 5조 9,572억 7,900만원, 기타 자산 182억 4,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3억 8,500만원(0.0%) 감소하였다. 이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감가상각 등 유·무형자산의 153억 6,1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463억 5,100만원, 충당부채 1,400만원, 기타부채 2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억 7,300만원(2.3%) 감소하였다. 이는 차입부채 5억 원, 기타부채 5억 7,300만원 감소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977,474	5,978,859	△1,385	△0.0
Ⅰ. 금융자산	1,953	2,326	△373	△16.0
Ⅱ. 유·무형자산	5,957,279	5,972,640	△15,361	△0.3
Ⅲ. 기타자산	18,243	3,892	14,351	368.7
부 채	46,591	47,664	△1,073	△2.3
Ⅰ. 차입부채	46,351	46,851	△500	△1.1
Ⅱ. 충당부채	14	14	-	-
Ⅲ. 기타부채	226	799	△573	△71.7
순 자 산	5,930,883	5,931,195	△312	△0.0

자료: 국회

국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158억 4,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순원가 3,076억 8,800만원, 관리운영비 5,119억 800만원, 비배분비용 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7억 6,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50억 4,000만원(3.2%) 증가한 8,158억 4,000만원이며, 이는 의정지원 활동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76억 7,700만원, 관리운영비가 177억 5,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프로그램별 순원가는 의정지원활동(1,030억 5,600만원)과 국회사무처운영(1,520억 9,100만원), 국회도서관운영(431억 9,200만원), 예산정책처운영(43억 5,900만원), 입법조사처운영(33억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239억 3,800만원과 기본경비 879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국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307,688	300,011	7,677	2.6 %
II. 관리운영비	511,908	494,157	17,751	3.6 %
III. 비배분비용	7	-	7	-
IV. 비배분수익	3,763	3,368	395	11.7 %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15,840	790,800	25,040	3.2 %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15,840	790,800	25,040	3.2 %

자료: 국회

국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조 9,311억 9,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9,308억 8,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억 1,200만원(0.0%)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50억 4,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47억 7,000만원 증가하고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및 기타이전수익 등 재원의 조달 8,203억 6,6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5억 9,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억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5,931,195	5,951,247	△20,052	△0.3 %
II. 재정운영결과	815,840	790,800	25,040	3.2 %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15,767	770,997	44,770	5.8 %
IV. 조정항목	△238	△249	11	4.4 %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5,930,883	5,931,195	△312	△0.0 %

자료: 국회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남북철도연결 및 개성공단 시찰, ② 의회정보자문단 운영 등이 있다.

남북철도연결사업 및 개성공단 시찰 관련 활동비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5백만원 감액(순감)되었고, 의회정보자문단 운영은 국회의 입법 및 정책심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내역 및 회의 개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 예산 6백만원 감액(12백만원 → 6백만원)되었다.<sup>1)</sup>

---

1)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2025년도 국회는 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 ②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국회, ③ 국가 위상 제고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의회외교, ④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회세종지사당추진단은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사무처는 의정아카데미가 강의 주제 및 내용, 운영방식에 있어 참여 유인을 유발하고, 계획된 개최 횟수 및 참여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II

## 주요 사업 분석

### 1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가. 현황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사업<sup>1)</sup>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을 지원하고, 건축·도시·행정 등 각계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5,000만원 중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회세종의사당 추진단 운영	250	250	-	±8	250	228	20	2	258

자료: 국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sup>2)</sup>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업무 효율성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의 상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사업으로 2019년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1,170억 5,700만원 중 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167억 1,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033-303

2)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33-315

[2025회계연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35,000	82,057	±1,500	117,057	340	116,717	-	95,64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최근 주요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2026년 현재 총사업비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주요 추진 경과]

구분	내 용
2021.10.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
2022.4.	국회세종의사당 입지 선정
2023.4.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2023.10.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24.1.시행) * (위치) 세종동, (부지면적) 63.1만㎡, (이전대상) 11개 상임위+예결위+예정처·조사처 등
2023.12.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4.9.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구성 * 도시·건축 전문가, 국회사무총장(당연직), 국회의원 4인 등 15인으로 구성
2024.11.	사업추진방식 결정(실시설계 기술제안*) * 설계공모 당선자가 기본/실시설계 진행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설계서대로 시공
2024.12.	기재부 협의 총사업비 규모 결정
2025.5.~	총사업비 협의(KDI, 사재·타재 이원화하여 진행)
2025.8.	국회세종의사당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선정·운영
2025.10.~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025.12.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건물 총사업비 협의 완료(37,415억원)
2026.1.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공고
2026.5.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선정
2026.5.~	마스터플랜(당선작) 구체화 용역

자료: 국회사무처

## 나. 분석의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총 4조 2,323 억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이후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2025년 1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現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는데,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총사업비도 기본계획과 조정 요구 시점의 차이에 따른 물가상승분, 국민주권 공간 조성, 친환경 국회 조성, 국민소통 SOC 건립 등을 위한 추가분을 반영하여 총 5.6조원 규모로 제시하였다.

2025년 4월에 총사업비 협의방식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와 타당성재조사로 이원화하여,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4.7조원)는 위원회, 의원회관 등 공공청사 중심의 건축물에 대하여, 타당성재조사(0.9조원)는 홍보관 등 국회세종의사당 부대시설 건축물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는 2025년 5월부터 실시되어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국회 간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에 총사업비 규모가 최종 결정되었는데, 4.7조원 요구 대비 3.7조원이 반영되었다.

한편, 타당성재조사의 경우 2025년 5월 착수되어 국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예산처 간 검토·협의를 계속 진행 중으로, 아직 총사업비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재조사 진행 경과]

구분	내 용
2020.6.	총사업비 최초 등록(1,166억원)
2025.1.	총사업비 조정 요구(1,166억원 → 5조 6,430억원)
2025.4.	총사업비 협의 방식 이원화 결정(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타당성재조사)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4.7조원): 위원회, 의원회관 등 공공청사 중심의 건축물 * 타당성 재조사(0.9조원): 홍보관 등 국회세종의사당 부대시설 건축물
2025.7.	토지매입비 우선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1,166억원 → 4,693억원)
2025.5.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타당성 재조사 착수
2025.5.~10.	KDI·기획재정부(재정관리국)·국회 간 총사업비 검토·협의
2025.11.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결과 심의(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6.1.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 최종 결정* (기획예산처 예산실) * (협의 결과) 요구 47,753억원 → 반영 37,415억원
2026.6.현재	KDI·기획예산처·국회 간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협의 중

자료: 국회사무처

아울러,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였다. 2026년 1월 마스터플랜 공모를 공고하여 총 15개사가 공모안을 제출하였고, 4월 1차 심사에서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5월 2차 심사에서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당선작 조감도는 아래와 같다. 이후 마스터플랜 당선작 구체화 용역에 착수하여 보완 및 구체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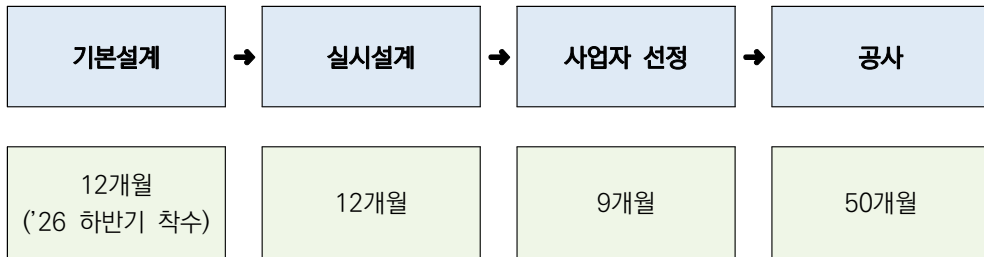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자료: 국회사무처

향후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기본설계에 착수한다고 보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4개월, 사업자 선정 9개월, 시공에 50개월이 소요되므로, 설계 및 시공에 총 83개월, 약 7년이 소요되어 대략 2033년에 완공이 가능하게 된다.

[설계 및 시공 추진일정(안)]



자료: 국회사무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재, 타당성재조사가 진행 중으로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결정되어야 부지매입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2025년에 이월된 부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있는 만큼,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KDI, 기획예산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은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정책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sup>1)</sup>은 국회최고위과정, 직원연구모임, 직원연수회, 입법지원 서비스 능력개발과정, 역량강화과정·역량평가교육, 의정아카데미 등 국회 인적자원 개발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억 9,900만원 중 5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의정인적역량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연수활동지원	5,106	5,106	10	81	5,197	4,926	-	272	5,404
의정인적 역량강화	738	738	-	△27	699	556	-	143	746

자료: 국회

### 나. 분석의견

국회사무처는 의정아카데미가 강의 주제 및 내용, 운영방식에 있어 참여 유인을 유발하고, 계획된 개최 횟수 및 참여 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정아카데미는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 함양 및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5,350만원 대비 3,510만원을 집행(집행률 65.6%)하였으며, 총 6회 계획 대비 4회 실시, 계획 인원 420명 대비 331명이 참석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하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 실적이 50~70%대를 유지하여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실시 횟수나 참석 인원이 계획 대비 미달하였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033-300의 내역사업

[최근 3년간 의정아카데미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계획		실적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3	56.5	29.3	6	420	6	772
2024	57.6	44.1	6	420	4	380
2025	53.5	35.1	6	420	4	331

자료: 국회

국회사무처는 의정아카데미가 전 직원 대상 교양강의 과정으로, 2025년에는 기존 정규 강좌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국회 입법박람회 계기 특강 개설 등으로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 과정 개설 및 집행이 일부 축소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으로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국회최고위과정이 있는데, 동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회 전 직원<sup>2)</sup>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AI, 경제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예산현액 2억 1,700만원 대비 1억 5,700만원(집행률 72.5%)을 집행하였으나 총 12회 계획 대비 12회 실시, 계획 인원 720명 대비 1,446명이 참석하여 계획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였다. 최근 3년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예산 집행 56.4%, 계획 인원 540명 대비 271명 참석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2024년에는 예산 집행 100%, 계획 인원 600명 대비 860명 참석 등 2024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3년간 국회최고위과정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계획		실적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3	87.6	49.4	9	540	9	271
2024	122.0	122.0	12	600	12	860
2025	217.0	157.4	12	720	12	1,446

자료: 국회

2) 현장강의는 국회의원,국장급 이상 대상이나, 온라인강의는 국회 전직원 대상이다.

국회최고위 과정은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입법·정책 리더십 및 국가 아젠다 논의, 인문·교양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수강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미래전략, 기후위기, 과학기술전략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의정아카데미는 국회 전 직원의 공직소양·교양 강화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운영해 온 과정으로, 최근 문화예술, 기후위기, 글로벌경제 등을 다루어 양 과정이 사실상 주제면에서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최고위과정이 국회 전 직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됨에 따라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최고위 과정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아침 시간에 진행하는 반면, 의정아카데미는 국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대상과 운영방식에 차이를 두고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차이에 부합하게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아카데미와 국회최고위과정 비교(2026년 기준)]

구분	국회최고위과정	의정아카데미
목적	입법·정책 리더십 및 국가 아젠다 논의	직원 역량개발 및 교양·소양 강화
대상	(현장강의)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국회공무원 (온라인강의) 국회 전직원	국회 전직원
방식	3시즌제(조찬 강의)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2시즌제 및 특강 수요가 있을 경우 실시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기타	총 3점 취득 가능 (시즌별 4강 중 3강 수강 시 교육점수 각 1점)	총 1점 취득 가능 (2개 시즌 통합하여 4강 중 3강 수강할 경우 교육점수 1점)

자료: 국회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의정아카데미가 강의 주제 및 내용, 운영방식에 있어 참여 유인을 유발하고, 계획된 개최 횟수 및 참여인원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9,700만원이며, 4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8%인 4억 5,7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97	297	297	467	457	10	-	97.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159억 1,100만원이며, 이 중 81.5%인 944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214억 2,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비비					
일반회계	95,623	99,753	115,911	115,911	94,488	-	21,423	81.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은 7,925억 7,900만원, 부채는 11억 1,100만원으로 순자산은 7,914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5억 1,100만원, 유·무형자산 7,920억 2,600만원, 기타자산 4,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9억 3,100만원(0.4%)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 유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전년 대비 27억 9,6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총당부채 10억 8,100만원, 기타부채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1,900만원(12.0%) 증가하였다. 이는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총당금 증가에 따라 총당부채가 9,4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건물 선수임대료 증가 등으로 기타부채가 2,6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792,579	789,648	2,931	0.4
Ⅰ. 금융자산	511	406	105	25.9
Ⅱ. 유·무형자산	792,026	789,230	2,796	0.4
Ⅲ. 기타자산	42	11	31	281.8
부 채	1,111	992	119	12.0
Ⅰ. 차입부채	-	-	-	-
Ⅱ. 총당부채	1,081	987	94	9.5
Ⅲ. 기타부채	30	4	26	650.0
순 자 산	791,468	788,656	2,812	0.4
Ⅰ. 기본순자산	323,523	323,523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73,999	75,605	△1,606	△2.1
Ⅲ. 순자산 조정	393,946	389,528	4,418	1.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 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047억 5,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050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7,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32억 8,600만원(3.2%) 증가한 1,047억 5,200만원이며, 이는 국정지원 프로그램 수익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수익이 전년 대비 33억 5,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은 기관운영 프로그램(600억 2,700만원), 국정지원 프로그램 (450억 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05,030	101,675	3,355	3.3
가. 프로그램 총원가	105,030	101,675	3,355	3.3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279	209	70	33.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04,752	101,466	3,286	3.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04,752	101,466	3,286	3.2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7,886억 5,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914억 6,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8억 1,200만원(0.4%)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32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44억 2,600만원 증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기초 대비 34억 5,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036억 3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억 5,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토지재평가 이익 등 44억 2,6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788,656	790,435	Δ1,779	Δ0.2
II. 재정운영결과	104,752	101,466	3,286	3.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03,146	99,695	3,451	3.5
IV. 조정항목	4,418	Δ8	4,426	순증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91,468	788,656	2,812	0.4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2025년도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기본경비 사업**, ② **업무지원비 사업**, ③ **국정운영관리 사업** 등이 있다.

기본경비 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1억원이 감액(218억 4,000만원 → 217억 4,000만원)되었고, 국정운영관리 사업도 유사한 사유로 5,000만원이 감액(66억 3,000만원 → 65억 8,000만원)되었다. 업무지원비 사업은 집행내역 비공개 등의 사유로 82억 5,010만원이 감액(174억 2,800만원 → 91억 7,700만원)되었다.<sup>1)</sup>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업무지원비 사업**이 있다.

업무지원비 사업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업무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41억 2,500만원이 증액(91억 7,700만원 → 133억 200만원)되었다.

1)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함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인건비, 기본경비, 업무지원비, 국정운영관리, 시설관리 및 개선,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관리용역비 등의 충당을 위해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변경을 실시하였는데, 최근 3년간 국내외 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1

## 기본경비의 연례적 전용 및 세목조정 문제

## 가. 현황

기본경비<sup>1)</sup>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전용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17억 4,000만원 중 19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기본경비	21,740	21,740	-	±617	21,740	19,261	-	2,479	22,423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나. 분석의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 관리용역비 등의 충당을 위해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변경을 실시하였는데, 최근 3년간 국내외 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2025년 기본경비를 집행하면서 부족한 특근매식비(210-05), 관리용역비(210-15), 국내여비(220-01) 등의 충당을 위해 총 11개 비목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총 6억 1,700만원을 증감하였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11-200

기본경비의 비목별 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5회계연도 기본경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기본경비 (1011-200)	일반수용비 (210-01)	5	기본경비 (1011-200)	손실보상금 (310-01)	사업량 증가
		일반수용비 (210-01)	8		배상금 (310-02)	
		일반수용비 (210-01)	17		포상금 (310-03)	
		유류비 (210-08)	23		국내여비 (220-01)	
세목 조정	기본경비 (1011-200)	일반수용비 (210-01)	295	기본경비 (1011-200)	특근매식비 (210-05)	사업량 증가
		임차료 (210-07)	130		관리용역비 (210-15)	
		재료비 (210-11)	77		관리용역비 (210-15)	
		국외업무여비 (220-02)	62		국내여비 (220-0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용 및 세목조정은 예산의 과부족 발생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기관 자율로 허용되어 있으나, 최근 5년간 기본경비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5년간 기본경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20,260	20,260	-	±204	20,260	18,532	91.5	91.5	-	1,728
2022	20,606	20,364	-	±972	20,364	19,012	93.4	93.4	-	1,352
2023	20,697	20,697	-	+1,035 △895	20,837	19,538	94.4	93.8	-	1,299
2024	21,557	21,557	-	±730	21,557	19,707	91.4	91.4	-	1,850
2025	21,740	21,740	-	±617	21,740	19,261	88.6	88.6	-	2,479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특히, 국내의 여비의 경우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국내의 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및 세목조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리용역비, 임차료 등 타비목에서 충당하기도 하지만, 국내의 여비 상호 간에도 세목조정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 3년간 국내의 여비 전용 및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3	기본경비 (1011-200)	관리용역비 (210-05)	30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임차료 (210-07)	200		국외업무여비 (220-02)
	2024	기본경비 (1011-200)	임차료 (210-07)	90	기본경비 (1011-200)	국외업무여비 (220-02)
			관리용역비 (210-15)	100		
	2025	기본경비 (1011-200)	유류비 (210-08)	23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세목 조정	2023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226	기본경비 (1011-200)
2024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121	기본경비 (1011-200)	국외업무여비 (220-02)
2025		기본경비 (1011-200)	국외업무여비 (220-02)	62	기본경비 (1011-200)	국내여비 (220-01)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의 여비를 비롯하여 기본경비 내에서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향후 기본경비 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경호처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억 4,700만원이며, 7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00%인 7억 1,800만원을 수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47	547	547	718	718	-	-	100.0

자료: 대통령경호처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90억 3,800만원이며, 이 중 90.6%인 1,350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4,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121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5회계 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9,048	139,048	149,038	135,077	1,840	12,120	90.6

자료: 대통령경호처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대통령경호처의 자산은 7,996억 300만원, 부채는 0원으로 순자산도 7,996억 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4억 400만원, 유·무형자산 7,987억 5,600만원, 기타자산은 4억 4,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76억 7,300만원(2.3%) 증가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 173억 3,8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799,603	781,930	17,673	2.3
Ⅰ. 금융자산	404	404	-	-
Ⅱ. 유·무형자산	798,756	781,418	17,338	2.2
Ⅲ. 기타자산	443	107	336	314.0
부 채	-	11	△11	순감
Ⅰ. 차입부채	-	11	△11	순감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799,603	781,919	17,684	2.3
Ⅰ. 기본순자산	311,683	311,683	-	-
Ⅱ. 적립금및잉여금	76,626	58,991	17,635	29.9
Ⅲ. 순자산조정	411,295	411,245	50	-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423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430억 6,100만원이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억 9,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17억 3,400만원(9.0%) 증가한 1,423억 6,300만원이며, 프로그램순원가가 118억 7,400만원이 증가하고 비배분수익이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1,430억 6,100만원으로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은 대통령경호처 운영 프로그램(921억 6,300만원)과 대통령 및 국가요인 경호 프로그램(508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비배분수익은 재화 및 용역제공수익 5억 300만원, 기타수익 1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43,061	131,187	11,874	9.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43,061	131,187	11,874	9.1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698	558	140	25.1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42,363	130,629	11,734	9.0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42,363	130,629	11,734	9.0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7,819억 1,900만원이고, 기말순 자산은 7,996억 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76억 8,400만원(2.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1,599억 9,800만원, 조정항목이 5,000만원 발생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1,423억 6,300만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1,608억 5,6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8억 5,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5,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781,919	769,427	12,492	1.6
II. 재정운영결과	142,363	130,629	11,734	9.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59,998	144,212	15,786	10.9
IV. 조정항목	50	△1,091	1,141	104.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99,603	781,919	17,684	2.3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이 있다.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는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5,000만원이 감액(66억 3,200만원 → 65억 8,200만원)되었다.<sup>1)</sup>

---

1)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그 가족,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방한 외국 국가원수, 기타 국내외 요인에 대한 완벽한 경호업무 수행, 경호·경비·안전업무 총괄을 목적으로 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완벽한 다자 정상회의 경호환경을 구현하고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 미충원에 따라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며, 향후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II

## 주요 사업 분석

### 1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불용 과다 문제

#### 가. 현황

인건비<sup>1)</sup>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인 상용임금(110-03)과 임시직에 대한 보수인 일용임금(110-04)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8억 7,900만원 중 28억 9,900만원을 집행(집행률 74.7%)하고, 9억 8,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민간이전<sup>2)</sup>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부담금 등 고용부담금(320-09)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억 9,9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을 집행(집행률 73.8%)하고, 1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건비 및 민간이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582	6,582	-	-	6,582	5,129	-	1,453	6,754
인건비	3,879	3,879	-	-	3,879	2,899	-	980	3,978
상용임금 (110-03)	3,829	3,829	-	-	3,829	2,855	-	974	3,951
일용임금 (110-04)	50	50	-	-	50	44	-	6	27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320-09)	699	699	-	-	699	516	-	183	774

자료: 대통령경호처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11-201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1011-201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근로자 미충원에 따라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나, 향후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대통령경호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중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상용임금의 경우 예산현액 32억 3,400만원 대비 31억 4,000만원(집행률 97.1%) 집행, 고용부담금의 경우 예산현액 6억 2,300만원 대비 5억 5,100만원(집행률 88.4%) 집행하여 준수한 집행률을 보였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집행률이 점차 하락하여 2025년에는 상용임금의 경우 예산현액 38억 2,900만원 대비 28억 5,500만원(집행률 74.6%) 집행, 고용부담금의 경우 예산현액 6억 9,900만원 대비 5억 1,600만원(집행률 73.8%) 집행하는 데 그쳤다.

[최근 4년간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022	3,234	3,140 (97.1)	94 (2.9)	623	551 (88.4)	72 (11.6)
2023	3,612	3,226 (89.3)	386 (10.7)	705	580 (82.3)	125 (17.7)
2024	3,670	2,989 (81.4)	681 (18.6)	727	546 (75.1)	181 (24.9)
2025	3,829	2,855 (74.6)	974 (25.4)	699	516 (73.8)	183 (26.1)

자료: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은 주로 환경미화, 조리, 시설물관리, 운전, 조경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 인원이 정원만큼 충원되지 않으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무원 근로자의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공무원 정원이 10명 증가하여 108명이 된 이후 예산 집행률이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신규채용 인원보다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정원 및 입퇴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정원	신규채용	퇴직
2021	98	19	13
2022	98	19	13
2023	108	11	16
2024	108	12	18
2025	108	12	19
2026 <sup>1)</sup>	108	3 <sup>2)</sup>	3

주: 1) 5월 말 현재

2) 13명 추가 채용 예정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청와대 이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인력 산출 및 운영 소요 예측이 어려워 적극적인 채용을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대통령 등 경호업무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인성 면접과 신원조사 등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2025년의 근무지 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충원은 일정 정도 납득되는 부분이 있으나, 채용과정상의 기관 특성은 2022년에 비해 특별히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대통령경호처는 오히려 이러한 기관의 특성 및 선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근로자의 적정 규모 충원을 위해 채용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의 불용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는 공무원 정원 증원 이후 인력 미충원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예산의 과도한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00만원이며,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8.4%인 3,800만원을 수납하고, 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	27	27	43	38	5	1	88.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24억 1,4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40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 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2,414	42,414	42,414	40,972	274	1,168	96.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산은 345억 3,000만원으로 부채는 없어 순자산은 345억 3,0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1억 500만원, 유무형자산 314억 2,400만원, 기타자산 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4억 7,100만원(37.8%) 증가하였다. 이는 건물 외 일반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및 감가상각으로 36억 3,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기타금융자산 8,600만원 증가, 인권교육원 관련 건물 취득 및 감가상각으로 건물 130억 2,0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4,530	25,059	9,471	37.8
Ⅰ. 금융자산	3,105	3,017	88	2.9
Ⅱ. 유무형자산	31,424	22,042	9,382	42.6
Ⅲ. 기타자산	1	-	1	순증
부 채	-	-	-	0.0
Ⅰ. 차입부채	-	-	-	0.0
Ⅱ. 총당부채	-	-	-	0.0
Ⅲ. 기타부채	-	-	-	0.0
순 자 산	34,530	25,059	9,471	37.8
Ⅰ. 기본순자산	34,530	25,059	9,471	37.8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	-	0.0
Ⅲ. 순자산 조정	-	-	-	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50억 2,300만원이다. 비용은 프로그램순원가 450억 8,700만원이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3억 2,800만원(3.0%) 증가한 450억 2,3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고용부담금, 감가상각비 등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13억 4,300만원 증가하였고, 전기대비 대손상각비 감소에 따른 비배분비용 8백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45,087	43,744	1,343	3.1
II. 관리운영비	-	-	-	0.0
III. 비배분비용	-	8	△8	△100.0
IV. 비배분수익	65	57	8	14.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5,023	43,695	1,328	3.0
VI. 비교환수익 등	-	-	-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45,023	43,695	1,328	3.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50억 5,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45억 3,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4억 7,100만원(37.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3억 2,8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기 대비 86억 3,3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증감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545억 6,5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5,059	22,894	2,165	9.5
II. 재정운영결과	45,023	43,695	1,328	3.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4,527	45,894	8,633	18.8
IV. 조정항목	△34	△34	0	0.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4,530	25,059	9,471	37.8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증액 사업은 없으며, 감액된 사업으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있다. 전문위원회 회의장 임차료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회의실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600만원 감액(1,200만원 → 600만원) 되었으며, 유류비는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00만원 감액(4,560만원 → 3,560만원) 되었다.<sup>1)</sup>

---

1)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1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6,673억 6,300만원이며, 1조 6,333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인 1조 6,165억 100만원을 수납하고 168억 9,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543683	1543683	1,543,683	1,498,539	1,481,834	16,704	1	98.9
교도작업특별회계	123,680	123,680	123,680	134,854	134,667	186	-	99.9
합계	1667363	1667363	1,667,363	1,633,393	1,616,501	16,890	1	99.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조 9,101억 5,600만원이며, 이 중 99.1%인 4조 8,667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32억 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310427	4395122	4,786,455	4,746,407	173	39,874	99.2
교도작업특별회계	123,680	123,680	123,702	120,368	-	3,334	97.3
합계	4464107	4518802	4,910,156	4,866,775	173	43,208	99.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448억 7,700만원이며, 1,429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4.8%인 1,498억 1,300만원을 수납하고 40억 9,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877	144,877	144,877	142,923	149,813	4,092	18	104.8

자료: 법무부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1,448억 7,700만원이며, 이 중 103.4%인 1,498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 7,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44,877	144,877	144,877	149,813	-	4,370	103.4

자료: 법무부

###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22억 1,100만원(△3.2%)이 감소한 1조 5,616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99억 4,900만원(△1.9%)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585,982	1,608,229	1,608,229	1,554,685	△53,544	△31,297
기금	5,598	5,613	5,613	6,946	1,333	1,348
합계	1,591,580	1,613,842	1,613,842	1,561,631	△52,211	△29,94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2025회계연도 법무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462억 3,000만원(7.7%)이 증가한 4조 8,182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939억 1,400만원(11.4%)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238,557	4,322,718	4,377,413	4,728,013	350,600	489,456
기금	85,765	94,593	94,593	90,223	△4,370	4,458
합계	4,324,322	4,417,311	4,472,006	4,818,236	346,230	493,91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법무부의 자산은 13조 1,492억 2,600만원, 부채는 2,645억 1,600만원으로 순자산은 12조 8,847억 1,1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2,267억 9,700만원, 유·무형자산 12조 9,043억 3,200만원, 기타자산 180억 9,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7억 5,200만원(0.1%)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106억 4,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286억 600만원, 총당부채 1,354억 3,900만원, 기타부채 4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60억 2,500만원(26.9%) 증가하였다. 이는 차입부채가 637억 4,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3,149,226	13,141,474	7,752	0.1
Ⅰ. 금융자산	226,797	216,148	10,649	4.9
Ⅱ. 유·무형자산	12,904,332	12,909,073	△4,741	0.0
Ⅲ. 기타자산	18,097	16,252	1,845	11.4
부 채	264,516	208,490	56,025	26.9
Ⅰ. 차입부채	128,606	64,857	63,749	98.3
Ⅱ. 총당부채	135,439	143,166	△7,727	△5.4
Ⅲ. 기타부채	470	467	3	0.6
순 자 산	12,884,711	12,932,984	△48,273	△0.4
Ⅰ. 기본순자산	5,685,180	5,685,180	0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552,766	1,557,945	△5,179	△0.3
Ⅲ. 순자산 조정	5,646,765	5,689,858	△43,093	△0.8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5조 2,663억 1,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조 709억 3,200만원, 관리운영비 3조 3,505억 4,400만원, 비배분비용 64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833억 1,500만원, 비배분수익 729억원, 비교환수익 등 53억 5,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5,406억 5,000만원(11.4%) 증가한 5조 2,716억 7,3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 총원가가 전년 대비 3,681억 9,400만원 증가(21.6%)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9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법무활동 프로그램(5,321억 5,400만원), 검찰활동 프로그램(4,895억 3,4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프로그램은 법무활동으로, 3,32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조 6,415억 7,600만원과 경비 7,089억 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64억 1,200만원 발생하였으며 기타이전비용이 600만원 증가하였고, 이자비용이 2,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국가운영비용이 46억 7,600만원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987,617	1,623,709	363,908	22.4
가. 프로그램 총원가	2,070,932	1,702,738	368,194	21.6
나. 프로그램 수익	83,315	79,029	4,268	5.4
II. 관리운영비	3,350,544	3,179,227	171,317	5.4
III. 비배분비용	6,412	1,753	4,659	265.8
IV. 비배분수익	72,900	73,666	△766	△1.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5,271,673	4,731,023	540,650	11.4
VI. 비교환수익 등	5,354	1	5,353	535,300.0
VII. 재정운영결과(V-VI)	5,266,319	4,731,022	535,297	11.3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2조 9,329억 8,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2조 8,847억 1,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82억 7,300만원(△0.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5,352억 9,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4조 8,667억 7,500만원, 부담금수익 1,700만원, 제재금수익 1조 4,120억 600만원, 기타이전수익 6,422억 6,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 변동이 △430억 9,300만원 발생하여 전년 대비 674억 6,100만원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2,932,984	12,874,597	58,387	0.5
Ⅱ. 재정운영결과	5,266,319	4,731,022	535,297	11.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261,139	4,765,040	496,099	10.4
Ⅳ. 조정항목	△43,093	24,368	△67,461	△276.8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2,884,711	12,932,984	△48,273	△0.4

자료: 법무부

##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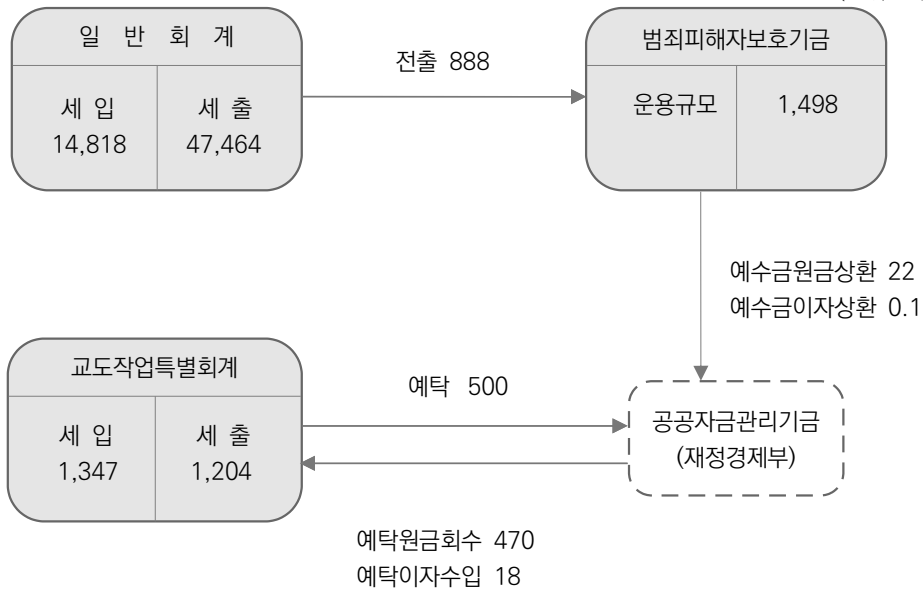
2025회계연도 법무부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888억원 전출되었다. 교도작업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470억원, 예탁이자수입 18억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원금 22억원과 예수금이자 0.1억원을 상환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 ② **법률구조 사업**, ③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등이 있다.

형사부 등 수사지원 사업(879억 6,300만원 → 478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다수 사업에서 특정업무경비 및 특수활동비가 감액되었고, 법률구조 사업은 불요불급한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와 효과성이 낮은 사생활 보호형 상담실 구축예산이 감액(676억 9,700만원 → 673억 3,700만원)되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동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22억 1,900만원 → 19억 1,900만원)되었다.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① 범죄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과 처리를 통한 범질서 확립, ② 범죄자 관리 및 교정의 내실화를 통한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 조성, ③ 합리적 외국인 정책 추진을 통한 사회 안전과 사회통합 실현, ④ 능동적·적극적 인권옹호를 통한 복지 인권 강화, ⑤ 국민이 만족하는 선진 법무 서비스 제공을 2025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법무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비비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형사보상금을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계상하고, 추계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의 무고용대상이 아닌 직군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검사 등 장애인 의무고용의 제외대상에 대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홈닥터의 1인당 1일 법률상담처리건수가 2.48건에 불과하고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법률홈닥터의 업무처리실적 편차가 존재하므로,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제고하고 엄밀한 성과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 1

## 형사보상금으로의 이·전용 최소화 필요

## 가. 현황

형사보상<sup>1)</sup>이란 법원의 무죄 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를 대상으로 형사보상금 지급 및 무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은 420억원, 예산현액은 이·전용 425억 5,400만원과 예비비 429억원을 합쳐 1,274억 5,400만원으로, 이중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6년도 예산은 440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형사보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형사보상	42,000	42,000	-	42,554	127,454	127,454	-	-	44,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비비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형사보상금을 일정 수준의 범위에서 계상하고, 추계의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7-302

형사보상금이란,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또는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을 말한다(「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 2조; 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형사보상 시 법원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최저임금액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형사보상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그런데,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부족을 이유로 2022년 23억 2,300만원을 이·전용한 이래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전용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424억 5,400만원이었고, 여전히 형사보상금이 부족하여 429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집행했으며 예산현액은 본예산 420억원의 300%가 넘는 1,274억 5,400만원이었다.

[연도별 형사보상 사업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A)							
2022	40,000	40,000	-	2,323	-	42,323	42,323	105.8	100.0
2023	40,000	40,000	-	16,852	-	56,852	56,851	142.1	100.0
2024	40,000	40,000	-	37,225	-	77,225	77,219	193.0	100.0
2025	42,000	42,000	-	42,554	42,900	127,454	127,454	303.5	100.0
2026	44,000	44,000	-	-	-	-	-	-	-

자료: 법무부

이처럼 2025년에 형사보상금 부족분이 크게 나타난 사유는, 2023년부터 제주 4·3사건 직권재심청구 인용에 따라 이례적으로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급증한 것에 기인한다.

실제로 형사보상금 지급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재심사건 무죄에 따른 형사보상금은 281억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3년 436억 8,400만원으로 급증하였고, 2024년에는 592억 700만원, 2025년 1,084억 3,300만원으로 매년 큰 규모로 증가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형사보상금 집행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건수	3,414	2,983	2,956	3,505	3,899		
	지급액	44,387	42,323	56,851	77,218	127,454		
피고인	구속사건							
	무죄	건수	229	232	246	252	290	
보상	재심사건	무죄	지급액	9,224	7,604	6,318	8,908	9,606
		건수	1,074	626	590	990	1,065	
피의자보상	무죄	지급액	28,621	28,130	43,684	59,207	108,433	
		건수	53	57	44	56	10	
기타	지급액	건수	2,058	2,068	2,076	2,207	2,534	
		지급액	5,049	5,427	5,880	7,571	9,319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이와 같은 지급액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2025년 예산에는 전년대비 20억원을 증액한 420억원, 2026년에는 440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고, 제주 4·3사건 등 과거사 재심 재판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인원 및 직권재심 재판 완료율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형사보상금 소요액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 관련 재판의 결과와 일정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범위를 설정하여 추계의 체계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정 수준에서의 이·전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2025년과 같이 이·전용과 예비비를 합하여 본예산의 2배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타 사업에서 계획된 재원을 본 사업으로 가져오게 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할 수 있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무부는 2025회계연도 검찰청운영인건비 및 교도소운영인건비 사업에서의 인건비, 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부터 이월을 하였고, 검찰청시설운영(건설비, 인건비 등), 과학수사인프라구축(운영비), 형사부 등 수사지원(인건비, 유형자산),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운영비, 유형자산), 마약수사(운영비, 보전금 등), 형사법정비(연구용역비) 등 여러 사업에서 형사보상금으로 전용을 실시하였고,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포상금)에서 내역변경을 하기도 하였다(총 425억 5,400만원).

[2025회계연도 형사보상금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20-03	2,2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5.28.)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3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5.28.)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5.28.)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5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6.18.)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30,0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9.17.)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3,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9.17.)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110-01	2,9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내역변경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310-03	42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110-03	66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1	469	형사보상 (1337-302)	310-01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210-07	21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7	33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210-09	97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 (1333-306)	210-16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110-03	1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부등수사지원 (1335-301)	310-04	45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1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210-07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 (1335-303)	430-01	13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210-01	26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310-04	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마약수사 (1335-304)	430-01	19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사회적약자대상범죄수사 (1335-305)	110-03	3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5)	210-01	55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사회공정성저해사범수사 (1335-305)	310-04	36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210-01	18	형사보상 (1337-302)	310-01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5.12.23.)	형집행및범죄수익환수 (1337-301)	430-01	12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10-01	91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10-07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전용 (2025.12.23.)	형사법정비 (1338-300)	26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135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5	916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국기본경비(총액) (7011-204)	110-04	1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110-04	65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06	7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12	353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10-16	43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250-02	10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1	20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7	23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08	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210-12	27	형사보상 (1337-302)	310-01
자체이용 (2025.12.23.)	검찰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430-01	11	형사보상 (1337-302)	310-01
합 계			42,554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된 타 사업 예산의 일용임금, 임차료, 자산취득비, 공사비, 일반연구비, 일반수용비, 포상금 등을 줄여 형사보상금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정된 사업비가 다른 사업에 사용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sup>2)</sup>

또한, 이와 같은 형사보상금에의 과도한 이·전용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으로,<sup>3)</sup>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전용 금액이 더 큰 규모로 증가한 부분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과거사 관련 재판의 세부 통계와 지난 3년간의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일정 범위에서의 예산을 계상하고, 그에 따라 향후 이·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2)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급증했던 2023년 집행액(568억 5,200만원)과 2025년 집행액(1,274억 5,400백만원) 간에 약 706억원의 격차가 존재하여 적절한 수준의 예산을 추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 평균값인 921억 5,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액이 2024년 수준(772억 1,900만원)에 그치는 경우 불용액이 149억 3,400만원에 달하게 되는 등 대규모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2025년부터 매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이다.

3) [국회 시정요구 내역]

- 2023회계연도 결산: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 2024회계연도 결산: 법무부는 형사보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및 수사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한 형사보상금 지급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것(제도개선)

## 2-1.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현황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sup>1)</sup>이란,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예산액은 19억 1,900만원으로 이 중 1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6년도 예산은 35억 6,100만원이다.<sup>2)</sup>

[2025회계연도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외국인사회 통합지원	17,639	17,639	-	△606	17,033	16,380	-	653	21,579
이민자 조기 적응프로그램	1,919	1,919	-	-	1,919	1,632	-	287	3,56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3-301의 내역사업

2) 2026년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6년부터 조선·건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화된 교육(7시간)을 신설한 것에 기인한다(산업안전교육 강화).

## 나. 분석의견

2025년 실시 예정이었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등이 늦어져 현재까지 의무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동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신규 제도 시행 시 요구되는 사전 단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sup>3)</sup>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이다.<sup>4)</sup>

참여 대상자는 ‘의무이수자’와 ‘자율이수자’로 구분되는데, 방문취업 외국국적 동포(H-2), 호텔·유흥 외국인 연예인(E-6-2)이 의무이수자이고,<sup>5)</sup>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 외국인, 재정착 난민 등이 자율이수 대상자이다. 교육과정은 총 5시간이다.

사업은 법무부가 조기적응지원단(한국이민재단, 보조사업자)과 조기적응지원센터(대학·비영리법인 등 187개 기관, 간접보조사업자)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한국어, 러시아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싱할라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라오어, 일본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카자흐어, 미얀마어 등 18개 언어 강사가 교육 중이다.

4)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범죄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중도입국청소년 미실시) 등 4시간의 공통과목, 그리고 방문취업 동포(국내 정착), 결혼이민자(가족간 상호이해), 외국인 연예인(인권보호), 유학생(학교생활 정보), 중도입국 자녀(미래진로) 등 1시간의 특수과목 수업이 있다.

5)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이 필요하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내용]

구분	내 용
생활법률 · 질서 (1차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쓰레기 분리수거, 임대차 등 생활법률, 경범죄·도로교통법 등 기초질서 교육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기초정보
범죄예방 교육 (2차시)	- 인신매매, 마약범죄, 살인, 강도 - 강간, 성희롱·성폭력, 절도, 보이스피싱 등
산업안전 교육 (3차시)	-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 - 사고사례 분석 및 대응 훈련 등
한국사회 적응정보 (4차시)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
특수과목 (5차시)	- 체류유형별 맞춤형 교육 ※ 외국인 유학생(유학생 필수정보), 결혼이민자(가족 간 상호이해), 중도입국 청소년(미래 진로), 외국국적동포(국내정착), 외국인연예인(인권보호), 계절근로자(계절 근로자 필수정보), 외국인근로자(안전수칙 및 인권보호), 재정착난민(국내정착)

자료: 법무부

그런데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교육 참여인원(횟수)이 교육 목표인원(횟수)을 2025년 상당 부분 하회하였다. 2025년 법무부는 총 6만 9천명에게 2,300회의 강의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19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실제로는 강의는 1,678회 실시하였고(달성을 73%), 3만 7,514명이 수강한 것에 그쳤다(달성을 54.4%). 그 결과 사업비 19억 1,900만원 중 2억 8,700만원은 불용되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목표 대비 실적 현황]

(단위: 명, 회)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목표 인원	42,251	42,251	39,000	69,000	105,000
실제 참여자	29,552	42,374	41,048	37,514	8,145
목표 교육횟수	1,837	1,837	1,720	2,300	-
실제 교육횟수	1,745	2,025	1,655	1,678	422

주: 2026년 참여자 및 교육횟수는 1분기 기준임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25년도 예산은 계절근로자(E-8)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 시행을 전제로 증액 편성되었는데,<sup>6)</sup> 교육 이수 의무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운영 지침 정비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여 사업추진이 '26년으로 연기되었고 이에 목표했던 것보다 참여 인원이 적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절근로자, 근로자의 고용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는 점,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sup>7)</sup>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사 증원·인프라 확충 사전 작업이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보다 이른 시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추진하여 2025년 계획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시점에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계절근로자 교육 이수 의무화가 올해에도 지연되는 경우에는 2026년 크게 증액된 예산의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사업 순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2026년의 경우 목표인원과 예산이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각 10만 5천명, 35억 6,100만원에 이르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8)</sup>

따라서 법무부는 '26년으로 연기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의 실시를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신규 제도 시행 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지연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6) 종전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10월부터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내 지자체 등 일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참여 의무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7)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2025년 84,836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현재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였고('26.5월), 이에 따르면 5월 안내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6월에 지자체 대상 교육 수요조사 실시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개정한 후 제도를 정식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2-2. 동감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가. 현 황

동감프로그램 운영<sup>1)</sup> 사업이란, 보호생활 중 여가시간 활용 및 보호외국인의 정서 순화 프로그램인 ‘동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호외국인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은 외국인사회통합지원의 내역사업인 사회통합업무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2025년 예산액은 6,700만원으로 전액 불용되었고, 2026년도 예산액은 6,7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외국인사회 통합지원	17,639	17,639	-	△606	17,033	16,380	-	653	21,579
사회통합 업무지원	14,262	14,262	-	△606	13,656	13,305	-	351	16,389
동감프로그램 운영	67	67	-	-	67	-	-	67	67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233-301의 내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신청 저조의 원인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연례적인 불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여, 외국인보호시설에 일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단기간 계류하게 된다. 동감프로그램이란, 보호생활 중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보호외국인이 정서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전통예절, 국악공연, 한글 강습 등), 건강관리(요가, 이발 및 미용 등), 종교활동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2025년 예산 6,7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다. 보호시설에 들어온 외국인에게 시설의 담당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전달하면, 이를 원하는 외국인이 신청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06.4.), 청주외국인보호소('07.5.),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08.3.), 인천출입국·외국인청('09.3.)에서 시행하고 있다.<sup>2)</sup>

그런데,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예산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다. 2025년의 경우에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었다.

[연도별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액	68	68	67	45	67	67	67	67	67	67
집행액	48	64	60	6	0.3	0	0	0.1	0	-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불용에 대하여, 법무부는 '25.6. 보호기간 상한 설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른 보호외국인 1인당 평균 보호기간 단축(10일)으로 보호외국인의 프로그램 참여가 시간상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보호외국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투입이 곤란하였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고 있다.

2) 참고로, 2025년 보호외국인 연인원은 45만 4,115명, 일평균 보호 인원은 1,244명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개정 전인 2020년부터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수년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존치의 필요성을 재점검한 후 사업관리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무부는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존속 여부를 재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연례적인 불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마을변호사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담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연결된 동네 담당 변호사로, 법무부는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sup>1)</sup> 사업을 통하여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감독 및 비위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의뢰인과 변호사의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억 8,900만원으로 이중 4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4억 8,9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79	779	-	-	779	764	-	15	767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 서비스 제고	489	489	-	-	489	474	-	15	48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향후 마을변호사 무변촌 미배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말 기념행사의 존속 필요성을 재점검한 후 유사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을변호사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2025년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사업에서 마을변호사 및 법률 개정 등 회의 개최비 7,200만원, 마을변호사 리플릿·동영상 제작 등 제도 홍보 1억 4,200만원, 마을변호사 활동지원 및 법강연 등 운영비 1억 900만원 등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을변호사의 경우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사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을 중심으로 마을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을변호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법률문제를 손쉽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마다 변호사를 매칭하려는 것으로,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지역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1,399개 읍·면·동에 1,271명의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

(단위: 명, 개)

권역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원	마을변호사 수	97	97	44	44	52	52
	읍·면·동 수	100	100	60	60	78	78
경기	마을변호사 수	318	318	268	268	267	263
	읍·면·동 수	194	194	192	192	188	187
경남	마을변호사 수	190	190	181	181	174	173
	읍·면·동 수	217	217	214	214	213	211
경북	마을변호사 수	107	107	102	102	104	105
	읍·면·동 수	237	237	236	236	224	224
대구	마을변호사 수	17	17	16	16	22	16
	읍·면·동 수	8	8	8	8	16	22
부산	마을변호사 수	32	32	27	27	44	44
	읍·면·동 수	5	5	5	5	5	5
세종	마을변호사 수	18	18	17	17	23	23
	읍·면·동 수	11	11	11	11	10	10
울산	마을변호사 수	23	23	25	25	22	22
	읍·면·동 수	12	12	12	12	11	11
인천	마을변호사 수	42	42	38	38	36	36
	읍·면·동 수	25	25	25	25	25	26
전남	마을변호사 수	151	151	149	149	148	147
	읍·면·동 수	224	224	227	227	221	221
전북	마을변호사 수	171	171	173	173	156	156
	읍·면·동 수	152	152	155	155	142	142
제주	마을변호사 수	33	33	30	30	34	34
	읍·면·동 수	12	12	12	12	12	12
충남	마을변호사 수	133	133	139	139	144	142
	읍·면·동 수	162	162	161	161	160	160
충북	마을변호사 수	68	68	67	67	58	58
	읍·면·동 수	98	98	97	97	90	90
합계	마을변호사 수	1,400	1,400	1,276	1,276	1,284	1,271
	읍·면·동 수	1,457	1,457	1,415	1,415	1,395	1,399

주: 마을변호사 수 및 배치된 읍·면·동 수는 각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법무부

다만, 마을변호사의 숫자는 2020년 이후 100명 이상 감소하였고, 마을변호사가 배치된 읍·면·동의 숫자 역시 1,400개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아니한 읍·면·동은 제주 72%, 경기 69%, 강원 59% 등 전국적으로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변호사 미배정지역 현황]

(단위: 개, %)

구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전체지역	604	20	5	12	193	153	232	339	305	243	297	43
미배정지역	416	-	-	1	114	63	62	99	94	101	76	31
미배정률	69	-	-	8	59	41	27	29	31	42	26	72

주: 부산, 울산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읍·면·동 지역 포함  
자료: 법무부

마을변호사의 상담건수는 2020년 2,000건을 돌파한 이래 2023년 최초로 3,000건을 돌파하였고,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725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무변촌에서의 마을변호사 수요는 꾸준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법무부는 마을변호사가 미배정된 무변촌에 변호사를 꾸준히 배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2025년 예산상 계획되어 있었던 마을변호사 관련 연말 행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임차료가 불용되었으므로, 행사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한 후 존치하는 때에는 유사한 형태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매년 마을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연말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다. 기념식은 제도 홍보를 통한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변호사로 활동하는 법조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며,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2025년 마을변호사 12주년 기념식 실시를 위한 운영비 300만원 및 임차료 8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면서도, 주요 입법 현안 집중으로 기념식을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사유로 행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임차료를 불용하였다.

[마을변호사 기념식 개최 현황]

연도	행사명	일자	회의 장소	계획금액	지출액
2025	마을변호사 12주년 기념식	-	-	운영비 3,000천원 임차료 8,000천원	-
2024	마을변호사 11주년 기념식	12.19.	라움 아트센터 레벤홀	운영비 6,500천원 임차료 8,000천원	운영비 6,196천원 임차료 3,696천원
2023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12.18.	더 라움	운영비 4,500천원 임차료 5,500천원	운영비 4,241천원 임차료 4,950천원
2022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12.26.	법무부 청사	운영비 4,000천원 임차료 5,500천원	운영비 3,817천원 -

자료: 법무부

시간적 여유 또는 현안 집중을 사유로 행사가 미실시해도 되는 경우라면, 동행사의 취지와 효과성에 비추어 추후 존속 여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점검 결과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때에는 해당 부분 공공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추후 예산상 미리 계획된 행사를 미 실시하고 불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1억 4,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므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 마을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일반국민 1천명(거주지별 인구비례할당) 대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동 사업에 대하여 '잘 모른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8%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는 응답

(40.2%)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현재 마을변호사 사업 홍보를 위하여 리플릿·동영상 제작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sup>2)</sup> 이와 같은 홍보 활동의 예산상 성과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경로를 다각화하며,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마을변호사를 찾고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을변호사 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 조사방법 (2025년 10월)					
- 일반국민 1천명(거주지별 인구비례할당) 대상 온라인 패널 조사					
○ 조사결과					
1) 마을변호사 제도 인지 여부					
	① 잘 알고 있다	② 들어본 적 있다	③ 잘 모른다		
인지도(%)	7.4	32.8	59.8		
2) 상담 만족도 및 불만족 원인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	매우불만
만족도(%)	14.5	18.2	49.1	14.5	3.6

자료: 법무부

만족도 개선을 위해서도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을변호사의 경우 ‘보통’ 내지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7.2%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100점 평균 56.4점),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인 ‘서민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터’ 사업에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84.9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온 점을 고려하면 향후 서비스 향상을 꾀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2) [마을변호사 홍보비 세부 집행내역]

연도	예산	결산	집행 세부내역
2025년	142백만원	142백만원	조명광고(53백만원), 버스 음성광고 등(34백만원), 포스터 인쇄 및 발송(19백만원), 리플릿 제작 및 발송(12백만원), 홍보물품 제작 및 발송(24백만원)

자료: 법무부

물론 유급으로 근무하는 법률홈닥터와 달리 마을변호사는 공급자의 관점에서는 무급으로 제공되는 것이기는 하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대국민 무료 법률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특히, 만족도조사에 따르면 대다수(56.4%)의 이용자가 1회의 상담에서 그치고 있으며, 서비스 불만족의 원인으로 대부분(80%)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1회 상담 이후 후속·추가 맞춤상담 진행 프로세스 또는 지역별 수요 맞춤형 모델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이나 관련 사업으로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향후 마을변호사 업무실적의 지역별 편차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예정된 정기 행사 예산을 불용하는 것을 자제하며, 마을변호사 사업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 관리 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

3) 법무부, “마을변호사에 대한 인지도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5.12, 14면.

### 가. 현 황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sup>1)</sup>이란, 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민원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민원 실무 교육 등을 진행하고, 법무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민원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중 1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2025회계연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20	120	-	-	120	104	-	16	12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지난 5년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에서 해외 선진 민원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편성되었던 국외여비가 전액 불용되어 왔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동 사업에서의 여비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행복민원센터는 2013년 12월 출범한 민원담당 조직으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사업은 민원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또는 교육 실시, 제도개선사항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연구개발비 등을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왔으나, 연례적으로 전액이 불용되어 왔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 [국외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예산	결산	불용	
국외업무여비 (220-02)	14	-	14	14	-	14	14	-	14	14	-	14	14	-	14	14	-	14	14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해외 민원 관련 공공기관 섭외 실패로 해외 출장을 실시하지 못해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예산상 계획된 국외업무여비의 집행을 섭외 실패 사유로 6년간 전액 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10년간 국외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일시	국가	예산액	집행액
2016	2016.10.17.~2016.10.25.	호주	17	17
2017	2017.10.14.~2017.11.1.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17	16
2018	2018.10.30.~2018.11.7.	스웨덴, 핀란드	19	17
2019	2019.11.5.~2019.11.13.	캐나다, 미국	18	15
2020	-	-	14	미집행
2021	-	-	14	미집행
2022	-	-	14	미집행
2023	-	-	14	미집행
2024	-	-	14	미집행
2025	-	-	14	미집행

자료: 법무부

동 사업에서의 국외출장 필요성에 대하여 과거 2010년대 실시되었던 국외출장 보고서와 그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국외여비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향후 국외여비를 편성하지 않고 불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외여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면 예정된 해외 사례 조사 및 제도 개선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율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미이행할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이다.

법무부(검찰 제외)는 2023년 4억 700만원, 2024년 3억 5,800만원, 2025년 4억 4,6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매년 3~4억원 내외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무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기준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납부액	279	349	407	358	446

주: 1. 십만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므로, 실제 값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연도는 기준연도(n)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연도(n+1)는 이듬해가 됨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이 아닌 직군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검사 등 장애인 의무고용의 제외대상에 대하여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의무고용률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 고용사업주는 의무 고용 미이행 시 부담금을 신고·납부한다(장애인고용법 제33조).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경우 2025년 의무고용률은 3.8%이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법무부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므로,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제외)는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4억 4,600만원을 납부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법무부는 의무고용인원 1,080명(월별 의무고용인원의 합) 중 288명(월별 미달 인원의 합)이 미달하여 3억 6천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25년에는 의무고용인원 1,067명 중 345명이 미달하여 4억 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sup>1)</sup>

해당 비용은 기관운영기본경비, 법무부기록관운영, 치료감호소운영 기본경비, 인권국 기본경비, 교도소 운영기본경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등 각 실·국의 기본경비로부터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법무부 월별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단위: 명, 원)

구분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인원	미달인원	고용부담금
1월	2,329	88	23	-
2월	2,343	89	24	-
3월	2,349	89	26	-
4월	2,357	89	27	-
5월	2,361	89	27	-
6월	2,354	89	27	-
7월	2,359	89	30	-
8월	2,367	89	31	-
9월	2,357	89	31	-
10월	2,362	89	32	-
11월	2,362	89	32	-
12월	2,349	89	35	-
합계	28,249	1,067	345	446,249,080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1)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 [(월 미달고용인원 × 고용 의무 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 - [장려금의 연간 합계액]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상시근로자 수 × 38/1000

\*\*월별 미달고용인원 = 월별 의무고용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그 외에 소속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5년 의무고용인원 332명 중 24명이 미달하여 3,000만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73명 중 60명이 미달하여 7,900만원을 부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정부법무공단의 경우 2025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을 포함한 47개 기관의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장애인 고용현황(비공무원)에서 2,349명의 상시근로자 중 54명을 고용하여 고용률은 2.3%로 47개 기관 중 36위였다. 47개 기관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수의 비율이 3.7%임을 고려하면, 평균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부담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47개 기관 중 5번째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의무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운영된다.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부담금 증가 원인의 구조적 원인으로 ①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sup>3)</sup> ② 부담기초액(최저임금 연동) 인상 ③ 상시근로자 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타 중앙행정기관에 비하여도 부담금 납부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무부는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이 아닌 직군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보다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1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4항 본문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sup> 이에 따라 법무부의

2) 부담금이 높은 순서는 국방부, 교육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무부 순이었다. 부담금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공제 후(일시납공제 등)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공무원 부문(상시근로자 수 기준)에서의 현황이다.

3) 2021년 3.4% → 2022·2023년 3.6% → 2024년 이후 3.8%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교정직·보호직·출입국관리 등 직군과 검찰청의 검사·검찰직·마약수사직의 경우 의  
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고용의 촉진이라는 취지에 맞  
추어 국가가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단서). 하지만 현재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의무고용대상 제외 직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0%에 가까  
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직에 1명이 고용되었다.

[2025년 검찰청 및 법무부 의무고용제외 직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연도	직군(직위)	고용인원(A)	고용인원 중 장애인 수 (B)	비율 (B/A)*100
법무부 (검찰청 제외)	교정직	15,540	0	0
	보호직	2,810	0	0
	검찰직	153	0	0
	출입국관리	2,668	1	0.037
	소 계	21,171	1	0.0047
검찰청	검사	2,073	0	0
	검찰직	6,011	0	0
	마약수사직	296	0	0
	소 계	8,380	0	0

자료: 법무부 제출 자료에서 재작성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  
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  
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분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  
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들 직군은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이므로 법무부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단서의 취지는 설령 의무고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법무부에서는 의무고용제외 직군에서는 거의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의무고용대상의 적용제외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청의 경우 검찰수사관과 검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고용의무로부터 면제되는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있다(장애인고용법 제27조제4항 본문). 연혁을 살펴보면, 구 장애인고용법(법률 제6166호, 2000.1.12., 전부개정) 제23조제4항은 “직무의 성격상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한 직무분야·직종·직급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공안·광공업·농림수산·교통·정무·기능 등 상당히 광범위한 제외대상을 두고 있었다. 이같은 법령에 대하여 적용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동 조문은 법률 제7568호, 2005.5.31, 일부개정으로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기존에 비해 적용범위를 축소하였다. 다만 검사의 경우 적용범위에 여전히 포함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상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과 마약수사직의 적용제외에 대하여, 법무부는 증거조사, 증인 신문, 사건관계인 진술 청취, 재판 기록 검토 등 재판 진행을 위한 대부분의 판사 업무가 집무실 또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피의자 진술 확보를 위한 체포·구속,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변사체 검시 등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업무는 검사실이라는 공간에 한정되어있지 않고 비교적 긴급성·활동성을 요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공안직군 공무원 및 검사는 장애인고용법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선 검사의 기본적인 직무는 수사·공소유지·법률사무 등이므로 장애인 근무 부적합 직종으로 볼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특히, 유사한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법관·검사·경찰공무원, 교육직공무원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해당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던 바 있다.5)6)

다음으로,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가 사안에 따라 긴급성이나 활동성을 요한다고 주장하나, 수사 및 기소의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과거에 비하여 축소되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 장애인고용법의 고용의무 적용제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가 삭제된 타 직군(토건·기계·화공·선박·농림 및 방호직군, 사무보조분야를 제외한 철도현업 직렬, 기능직공무원 중 통신·전화수리 및 전기 직렬, 법정경위 직렬 등)과 비교하여 긴급성·활동성이 현저히 높은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현재 고용의무 적용대상인 다른 직군, 예컨대 같은 법조인인 판사나 활동성이 높다고 보이는 청원경찰 등에 비하여도 긴급성과 활동성이 높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7)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추후 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무고용의 적용 제외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5.17.

6) 이에 대해 법무부는, 민·형사 재판 업무를 주로 하는 법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직공무원, 다양한 치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과 달리, 범죄를 수사·기소하고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검사와 검찰직 공무원을 동일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7)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검사·검찰직 공무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사건의 유·무죄 판단 및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충실한 공소유지를 위한 모든 증거 수집 활동이고, 유죄가 확정된 자의 형(재산형·자유형 등)을 집행하는 추적·검거 활동인데, 이러한 증거 수집 활동에는 체포·구속 등의 인신을 구속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등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어 체포·구속·압수 등의 과정에서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이 토건·기계·화공·선박·농림·통신·전화수리·전기·법정경위 등 직렬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sup>1)</sup>이란, 국가소송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여 소송수행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소송의 경우 정부 각 부처를 지휘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운영 및 제반 경비를 편성한 사업이다.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29억 6,100만원 중 2억 1,500만원을 이·전용하고, 예산현액 27억 4,600만원 중 26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25억 4,3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2,961	2,961	-	△215	2,746	2,689	-	57	2,54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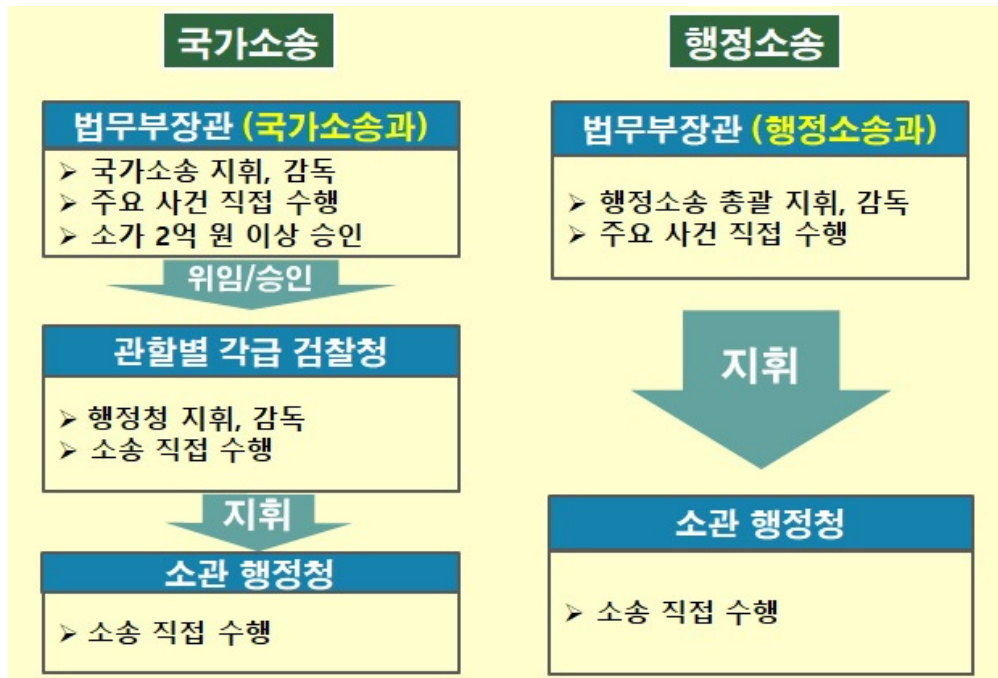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의 통계관리는 국가송무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NDSL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능이 존재하고, 일부 필요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며, 통계의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통계정보의 대외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수행한다.

국가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수행자로 지정하고,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직원을 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을 지휘하는 방식을 취한다.

[국가송무 지휘·승인체계]



자료: 법무부

행정소송(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서,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한다. 대신, 모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 및 수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국가소송법 제6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할 수 있다.

국가송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을 2008년부터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NDSL은 국가·행정 소송에 관한 사건 및 진행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국가송무 관련 다양한 통계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행청 담당자는 사건관리, 불변관리, 소송비용 관리, 수행청관리, 통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NDSL<sup>2)</sup>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시스템상 구현된 일부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

NDSL은 본래 단순히 지휘·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2023년 3월 법무부가 작성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Non-ActiveX 전환 및 개선」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지휘청은 국가배상금 지급관리, 불변관리, 장부·통계관리가 가능하고, 수행청에서는 수행청 국가송무 통계 추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2023년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34개 기능 중 ‘구상권 행사 현황’과 ‘구상권 행사 금액’의 경우, 시스템상 기능 구현은 되었으나,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통계의 경우 시스템상 입력하는 값과 실제 값 간의 오차가 있고, 이에 구상권과 관련된 통계는 각급 청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필요 시 외부에 제공하고 있다.

---

2) 국가송무정보시스템의 7개 단위 시스템은 국가소송사건정보시스템, 행정소송사건정보시스템, 국가송무 통계정보시스템, 배상심의회사건정보시스템, 국가송무공통시스템, 소송사무 전자보고시스템, 국가배상 금지급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안요청서에 따른 구상권 관련 통계 기능]

통계표명	통계 정의	집계 기준
구상권 행사 현황	연도별 구상권 발생 건수, 행사 및 불행사 건수, 행사율	1) 구상권 발생 건수: 사후관리 기준사건 중 구상권행사지휘 완료일자가 해당년도에 존재하는 건수 2) 구상권 행사 건수, 행사율: 1) 중 구상권행사 지휘 대상자 중 구상권 행사 지휘가 존재하는 사후관리 기준사건 수, 1) 중 구상권행사 지휘가 존재하는 사후관리 기준사건 비율 3) 구상권 불행사 건수: 1) 중 구상권행사 지휘 대상자 모두 구상권행사 불행사 지휘가 등록된 경우 사후관리 기준사건 수
구상권 행사 금액	연도별 구상권 발생 금액, 행사 및 불행사 금액, 행사율	1) 구상권 발생 금액: 사후관리 기준사건 중 구상권행사지휘 완료일자가 해당년도에 존재하는 건의 국가지급대상 인용액 2) 구상권 행사 금액, 행사율: 1) 중 구상권행사 지휘 대상자 중 구상권 행사 지휘가 존재하는 사후관리 기준사건의 구상권 행사금액, 1) 중 국가지급대상 인용액 중 구상권 행사 금액 비율 3) 구상권 불행사 금액: 1) 중 2)의 구상권 행사 금액과의 차이금과 구상권행사 지휘 대상자 모두 구상권행사 불행사 지휘가 등록된 사후관리 기준사건 국가지급대상 인용액과의 합계

자료: 법무부

구상권의 경우 국가송무에서의 사후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제안요청서에서도 통계시스템의 기능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현재의 기능이 시스템상 추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NDSL이 가진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이에 정밀한 구상권 관리 통계 확보를 위한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하게, 2023년 제안요청서에서는 ‘국가배상금 지급·미지급 현황 등 통계 및 장부’를 구현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지만, 해당 기능 자체는 시스템상 도입되었음에도 담당자의 입력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사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가배상금 임의변제 지급관리 등 업무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지 않고, 각 검찰청 담당자들이 임의변제 등 업무처리 후 그 현황을 사후적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3) 개발된 기능의 활용이 개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역시

3)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임의변제는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각 심급 선고만 있어도 신청인의 재량에 따라 재판 진행(항소, 상고 등)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개선을 요한다.

[국가배상금 임의변제 관련 통계 제안요청서]

<p>요구사항 명칭</p>	<p>국가배상금 임의변제와 관련한 통계 및 장부</p>
<p>요구사항 세부내용</p>	<p>정의: 국가배상 임의변제 지급/미지급 현황 등 각종 통계 및 장부 구현</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배상금 지급/미지급 현황 등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청/조회 기간 설정/지급 건수/지급 금액/합계 등을 볼 수 있는 지급/미지급 통계 구현(한국은행 지급건 포함)</li> <li>- 조회 기간은 년단위, 반기단위, 분기단위, 월단위, 일단위를 선택</li> <li>- 지급 건수/지급 금액/합계는 인용액 등록 구분/최고서발송 여부/ 지급(지급일자 기재) 여부를 구분하여 집계</li> <li>- 조회방식은 조회결과 통계표 형태로 조회하고, 프린트/엑셀저장 기능 구현</li> <li>- 집계기준은 지정 기간을 기준으로 이전에 등록된 당사자 별 배상액/사건과, 지정 기간 내에 등록된 당사자 별 배상액/사건을 구분하고, 최후심을 기준으로 함</li> <li>- 조회방식은 조회결과 통계표 형태로 조회하고, 프린트/엑셀저장 기능 구현</li> <li>- 통계표는 사업분석을 통해 추가/변경 될 수 있음</li> </ul> </li> <li>2. 임의변제 장부 기능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청/사건번호/청구일/청구인/대리인/최고일/의뢰일/지급일 등이 포함된 장부 구현</li> <li>- 조회방식은 조회결과 장부 형태로 조회하고, 프린트/엑셀저장 기능 구현</li> <li>- 장부에 포함되는 항목은 사업분석을 통해 추가/변경 될 수 있음</li> </ul> </li> </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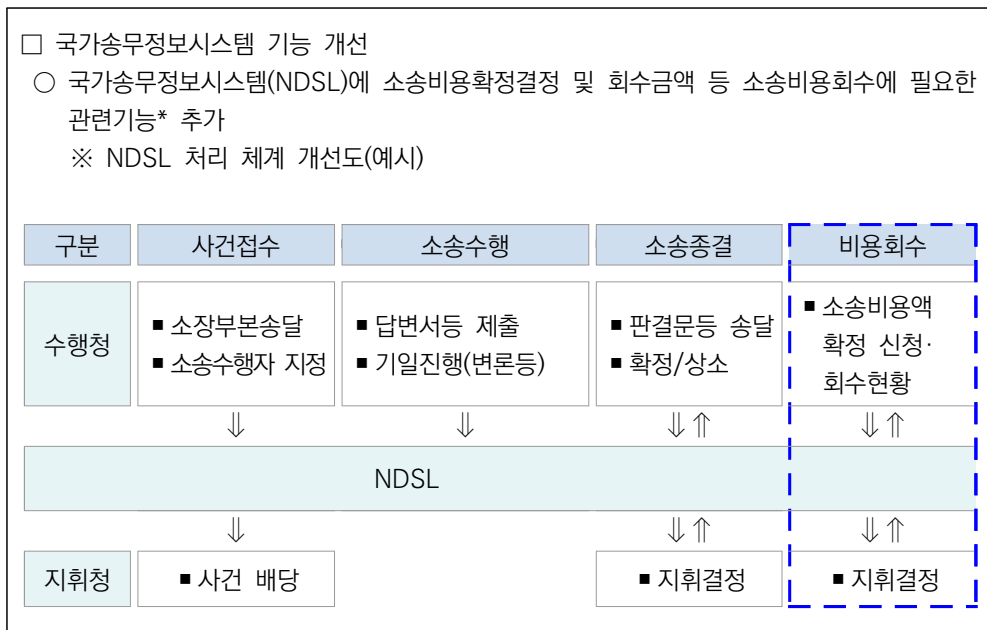
자료: 법무부

지급 신청(가집행 가능)하고, 사건이 가집행 선고 또는 확정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신청이 있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지급이 후순위로 밀리는 등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각 경우에 따른 입력 방법이 상이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해당 기능은 사용자 교육 등이 필요한데, 인사이동 등에 따른 교육을 받기 전 사용자의 시스템 입력 등으로 내용에 오기, 누락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정확한 통계 산출 및 검증을 위해 각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산출 및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통계시스템에서 추가로 갖추어야 할 기능이 존재한다.**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공공기관이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산 누수 및 공직자의 직무유기 의혹의 부패신고 등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승소하고도 소송금액을 미회수하는 사례를 억제하기 위하여 NDSL을 통한 사건처리 시,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기능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른 정책제안]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1-671호, 2021.10.25.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NDSL에 2023년경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으나, 국가소송의 경우 각 심급별로 지휘청을 달리하는 등 행정소송과 달리 관리의 통일성이 없어 시스템상 개발이 어렵고 별도 프로세스 재설계를 통한 기능개발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민권익위와 협의 후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동 기능을 개발하였다. 즉, 소송회수 현황 확인 기능은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구현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회수는 행정소송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소송에서도 발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은 국가소송에서도 중요하다는 점, 현재의 현황 관리 및 통계에서는 '건수'만 파악되어 실질적으로 소송회수 금액과 미회수 금액에 대한 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는 ① 건수 외에 금액 현황까지 관리·파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②국가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② 또한, 현재로서는 수행청별·심급별 자료 및 소송단계별 소요 기간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능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가송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현재는 NDSL의 메뉴로 구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동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각 행정청들의 정보를 개별 추출하고, 이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해야만 되는 실정이다. 이 부분 역시 정책자료의 효율적인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기능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③ 그 외에 국가소송법과 하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무가 NDSL에 구현되지 않고 수기로 관리되거나, 혹은 일부만 구현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사무로서 NDSL을 통하여 관리되지 아닐 이유가 없고, 시스템상 구현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나 통계 관리의 측면에서도 실익이 존재하므로 추후 NDSL의 고도화 과정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요구되는 사무 중 NDSL 구현 여부]

구분	명칭	구현 여부	이용방법 또는 세부내용	비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	확정후 조치사항	△	[국가소송]-[기록보존]-[사후관리] 최종심 종결 사건의 사후관리에서 전자 관리	건별 입력 가능은 구현이 되어 있으나, 관련 양식에 따른 장부는 수기로 관리중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소송비용 회수부	△	[국가소송]-[기록보존]-[사후관리] 최종심 종결 사건의 사후관리 소송비용회수란에서 전자 관리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민사본안사건 지휘감독부	△	[수행정사건부]-[업무현황]-[전자문서 외부수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민사신청사건 지휘감독부	△	[수행정사건부]-[업무현황]-[전자문서 외부수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채무명의이첩 사건지휘감독부	×	검찰청의 채무명의 이첩내역 관리 기능만 구현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행정소송사건 지휘감독부	△	[수행정사건부]-[업무현황]-[전자문서 외부수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임의변제 청구서	×	각급 검찰청별로 비치 및 최고 시 안내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임의변제 청구위임장	×	각급 검찰청별로 비치 및 최고 시 안내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임의변제 상황보고	△	[국가배상관리시스템]-[국가배상통계 및장부]-[지급통계및장부] NDSL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공문으로 보고(실무는 공문보고를 원칙으로 함)	구현되어 있으나 사용방법 복잡하여 수기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행협손해 배상사건 임의변제보고	×	각급 검찰청이 공문으로 보고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영수증	×	각급 검찰청별이 종이 영수증 회수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소송수행 해태통보	△	행정소송의 경우 공문통보 후 조치 결과를 등록하는 기능 개발하여 활용 국가소송은 공문으로 통보	건별 입력 가능은 구현이 되어 있으나, 관련 양식에 따른 장부는 수기로 관리 중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망실국유재산 처리현황	×	필요 시 공문으로 송부	

주: △는 법령상 요구되는 서식(사무) 중 일부 항목만 시스템상 구현된 것을 의미함  
자료: 법무부

**셋째, 통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소송의 경우, 유형별 통계에서의 ‘유형’은 국가가 원고인 경우 부동산-기타 2가지 유형, 국가가 피고인 경우 부동산-국가배상-기타의 3가지 유형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순화된 유형으로는 다양한 국가소송무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2025년 국가가 원고인 사건에서의 국가소송 처리 소가는 부동산이 177억 700만원이지만, ‘기타’ 유형이 3,364억 9,600만원으로 19배에 달한다. 국가원고 사건의 소가 중 ‘기타’ 유형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만으로는 국가소송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국가가 피고인 국가소송 사건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소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국가원고	부동산	38,069	17,766	17,707
	기타	412,635	336,892	336,496
	소 계	450,704	354,658	354,204
국가피고	부동산	118,990	103,568	169,773
	국가배상	400,680	275,968	501,289
	기타	1,829,332	451,030	325,827
	소 계	2,349,002	830,565	996,889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행정소송은 조세·인허가·신분자격·지식재산권·행정벌·기타의 6가지 유형으로 비교적 여러 종류로 집계되고 있지만, 조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등, 신분자격의 경우에도 공무원 징계처분이나 난민불인정결정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기준 행정소송 중 ‘신분자격’ 유형이 4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유형이 29.3%로 많았으며, 그 외에 ‘조세’(13.5%), ‘인허가’(13.3%) 순이어서 여전히 ‘기타’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세부적인 유형에 따른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계의 대외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무부는 NDSL의 통계로부터 ‘국가소송 사건 수’, ‘행정소송 사건 수’(접수 건수, 확정건수, 승소건수, 승소율, 패소건수, 패소율)만을 e-나라지표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실제로 NDSL에 의하여 추출 및 관리되는 통계는 총 41종이나, 이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는 통계 목록]

연번	통계명	연번	통계명
1	국가소송 사건 수 및 승패소율	22	국가소송 사건 수 및 승패소율
2	국가소송 사건 접수 건수	23	행정소송 사건 수 및 승패소율
3	국가소송 사건 소가	24	행정소송 사건 접수 건수
4	국가소송 사건 원피고별 접수 건수	25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건수
5	국가소송 사건 원피고별 소가	26	행정소송 사건 처리 건수
6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건수	27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건수
7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소가	28	행정소송 사건 승소 현황
8	국가소송 사건 처리 건수	29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승소 현황
9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건수	30	행정소송 사건 패소 현황
10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처리 소가	31	행정소송 사건 유형별 패소 현황
11	국가소송 사건 승소 현황	32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 파기환송률
12	국가소송 사건 유형별 승소 현황	33	국가소송 항소율
13	국가소송 국가피고 부동산 사건 승소 현황	34	국가소송 상고율
14	국가소송 국가피고 국가배상 사건 승소 현황	35	행정소송 항소율
15	국가소송 사건 패소 현황	36	행정소송 상고율
16	국가소송사건 유형별 패소 현황	37	행정소송 수행청 소송비용 회수대상 사건
17	국가소송 국가피고 부동산 사건 패소 현황	38	행정소송 수행청 소송비용 회수포기 사건
18	국가소송 국가피고 국가배상 사건 패소 현황	39	행정소송 수행청 소송비용 조기회수율
19	국가소송 상고심 사건 파기환송률	40	국가소송 항소심 국가 및 상대방 상고율
20	구상권 행사 금액	41	행정소송 항소심 행정청 및 상대방 상고율
21	구상권 행사 현황	-	-

자료: 법무부

현재 NDSL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현황과 추이를 유형별 또는 연도별로 살펴볼 수 있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학계와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통계자료’ 자체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한 재판이나 사건과 관련된 세부정보와는 무관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공개가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할 여지도 크지 않다.<sup>4)</sup>

NDSL은 단순히 소송 수행자의 송무 편의를 제고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국가송무 전반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송무 정책의 방향성 설정, 제도개선과 국가송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나아가 국가송무지휘체계의 최종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 NDSL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며, 정확한 통계를 생산해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본연의 목적과 국가송무에서의 법무부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

4)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현재 공개하고 있는 자료 외 다른 자료는 소송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또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가. 현황

마약수사<sup>1)</sup> 사업이란, 마약류 공급조직 등 정보수집 등 수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 수사요원 교육비, 수사여비, 활동비, 위장복 및 마약수사장비 구입 등 지원, 마약수사 임차차량 지원, 가상화폐 수사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마약수사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추경예산 95억 8,400만원, 예산현액은 95억 2,300만원 중 88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106억 2,1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마약수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마약수사	7,823	9,584	-	△61	9,523	8,879	-	664	10,62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에서의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후 조정하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5년 마약수사 사업에서 마약사범수사 지원, 수사요원 집합교육 등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예산현액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5년 11억 7,400만원만을 집행하여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은 62.6%에 불과하였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5-3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 ‘마약류사범 판결 검사 등 제반비용’,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행이 부진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대신, 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에서 계획보다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마약수사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세부항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 마약사범수사 관련	117,264	533,365	454.8
가. 인쇄비	25,600	21,500	84.0
-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2,600	-	-
- 마약류사범 범죄백서 발간	23,000	21,500	93.5
나. 자료구입비	8,410	7,267	86.4
- 국내자료	5,800	5,087	87.7
- 국외자료	2,610	2,180	83.5
다. 기타(마약사범 수사용품 구입 등)	83,254	504,598	606.1
2.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	30,000	2,462	8.2
3.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APICC)	165,512	158,504	95.8
4. 마약류사범 판별 검사 등 제반비용	166,000	3,742	2.3
5. 마약수사관 현장대응력 강화 체력단련지원	15,000	12,312	82.1
6.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990,000	97,500	9.8
7.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10,000	5,192	51.9
8.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	13,160	7,779	59.1
9. 마약범죄 국제공조활동 통역비 등	8,800	1,600	18.2
10. 가상화폐 추적수사 전문교육	359,040	351,859	98.0
<b>합 계</b>	<b>1,874,776</b>	<b>1,174,315</b>	<b>62.6</b>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용 책자 발간’,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의 경우, 마약류 예방 홍보물의 경우 인쇄물 등 책자로 발간하지 않고 디지털 자료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배포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마약수사사례 제작 등’ 내지 ‘마약범죄정보 제작 등’ 항목은 마약수사 기법이 일반인 등에게 비공개 사항이어서 보안상의 우려 때문에 예산 편성 시 계획되었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의 책자를 발간하였고, 그 일부를 보안이 강화된 파일 형식(PDF 등)으로 마약수사 검사, 수사관 등에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sup>2)</sup>

그렇다면 동 자료들(홍보용 책자, 수사사례, 범죄정보)에 대해서는 인쇄가 아닌 디지털 발간의 형태로 생산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합계 2,576만원으로 계획된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미진한 것은 결산상 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후에도 디지털 형태로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 일반수용비를 예산 편성 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 항목 역시 화상교육, 법무연수원 사이버 강의 등 비대면 교육 확대에 따라 전액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비대면교육의 실시 여부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고려하였어야 하는 부분으로 집행부진은 적절하지 않고, 이와 같이 비대면 교육 확대의 추세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향후에도 오프라인 집합교육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바,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약류사범 판별검사 등 제반비용’ 항목의 경우, 집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검찰에서 마약류 중독판별검사 지정 병원으로 중독판별 검사를 의뢰하면, 해당 병원 에서 심리검사와 전문의 면담을 실시하여 중독(의존성) 정도를 진단하고,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가 최종 결과를 검찰청으로 회신하면 검사는 이를 참고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교육조건부, 선도조건부, 치료조건부)을 결정하게 된다.

---

2) 그러나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와 같은 PDF는 별도의 보안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파일로 책자 발간 시 업체에서 무료로 제공해준 PDF 파일로 보인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나 문서 열람 추적 기능, 디지털 서명 또는 인증 기능 등이 없는 pdf 파일로, 법무부는 동 파일을 일선에 전파하지 않고 대검 담당자들만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어도 법무부의 입장대로 수사기법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되는 자료라면 보다 강한 보안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사범 판별검사 및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이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시간)

구분		2022	2023	2024	2025
마약류사범 판별검사	검사 건수	66	28	22	6
	예산	207	207	166	166
	집행액	57	20	13	3.7
가상화폐 추적수사 지원	신청 및 이용시간	-	-	690	195
	예산	-	-	440	990
	집행액	-	-	345	97.5

자료: 법무부

그러나 판별검사는 2022년 66건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매년 검사 건수가 급감하여 2025년에는 6건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임상심리사 등의 중독 판별 검사는 다소 판독이나 회신 등 시간이 장기화되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그 처리비용을 식약처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모델은 2024년 4월부터 실시된 것이므로, 2025년 예산 편성 시점에는 식약처의 부담부분을 제외하고 법무부의 예산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식약처와 법무부 간 예산 분담을 고려한 조정을 필요로 한다.

그 외에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 항목은 가상화폐 관련 수사를 위하여 분석업체에 의뢰를 한 후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법무부는 결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 2024년 최초로 편성된 이후 2025년에는 이용이 급감하게 되어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총 이용시간이 2024년 690시간에서 2025년 195시간으로 급감하였다. 이에 9억 9,000만원의 예산 중 9,750만원만을 집행하였으며(9.8%), 현재 이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교육만으로는 단기간에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후 예산의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에서의 일반수용비의 집행이 부진한 사유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후 조정하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교육운영 지원<sup>1)</sup> 사업은 법무·검찰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해 간담회, 교육 관련 출장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운영 지원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6억 8,900만원 중 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3억 5,3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577	1,577	-	-	1,577	1,432	-	145	1,579
교육운영지원	689	689	-	-	689	546	-	143	35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예산은 2025회계연도 전액 불용되었고, 현재는 직제상으로만 제도가 존속할 뿐 2026년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인데, 법무부는 비상임연구위원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존속시킬 경우 전액 불용되는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상의 보완책을 마련하며, 채용 후에는 연구결과물의 체계적인 평가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5131-301의 내역사업

법무연수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중요한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2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고 있다(「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 연구위원 중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 보수 6천만 원(보수 월 5백만 원), 주거 임차료 7백만 원(아파트 25평형 관사 제공, 관리비는 자부담), 항공료 7백만 원(입출국 항공료), 고용부담금 5백만 원(기관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합계 7,900만원이 제공되고, 기타 유관기관 등 세미나 발표 시 공무원 강사로 규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강사로 지급이 가능하다. 퇴직금은 없다.

근무는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이다.<sup>2)</sup> 연구위원이 위촉기간 동안 생산한 연구성과물은 법무연수원으로 귀속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상임연구위원의 주요 업무는 연구활동으로, 법무부·법무연수원·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을 위한 연구 및 자문활동, 강의 및 세미나 참석, 기타 법무연수원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부가적으로 신입검사(경력검사 포함) 대상 강의, 세미나 발표 등을 실시하였다고 한다.

비상임연구위원 제도 운영에 대하여, 법무부는 매년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전액 불용되는 등 집행이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2024년 이후 비상임연구위원이 위촉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데, 역대 비상임연구위원 목록을 살펴보면, 3개월 이내로 짧은 기간 동안만 위촉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없는 공백기가 상당 기간 존재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2) 법무부에 따르면, 위촉계약서상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출퇴근 준수 의무가 있어 겸직 불가이므로, 본국에서 휴직 처리 후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초빙하였다고 한다.

[역대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내역]

연번	소속	위촉기간	연구실적
1	미국 산타클라라검찰청 검사	2010.5.11. ~2010.11.10.	미국 로클릭제도 연구
2	미국 샌디에고카운티검찰청 검사	2010.7.1. ~2010.12.31.	영문판 범죄백서 발간 배심재판의 공판기법 연구
3	미국 메릴랜드 메트로폴리탄 로그룹 변호사	2010.12.1. ~2011.7.15.	미국 검찰구조 및 기능 연구 '11 세계검찰총장회의의 자문·지원
4	미국 캘리포니아주LA검찰청 검사	2011.8.1. ~2012.1.31.	미국 압수수색절차 연구
5	미국 킹카운티검찰청 검사	2012.2.1. ~2013.1.31.	미국배심재판 및 국민참여재판 연구
6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검찰청 검사	2013.2.1. ~2014.1.31.	미국 검·경간 지휘협력관계, 미국 검사의 직업윤리 연구
7	브라질 상파울로주검찰청 검사	2014.3.17. ~2014.9.16.	브라질 검찰의 기원과 발전
8	미국 뉴욕지방검찰청 검사	2014.11.24. ~2015.11.27.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법적 협력 방안, 단속수사 및 디지털 증거의 입증
9	미국 패서니다 시 검사	2016.2.15. ~2016.8.14.	미국 양형 거래에 관한 연구
10	미국 뉴욕특별마약검찰청 검사	2017.6.12. ~2018.6.11.	미합중국 마약수사에 대한 소개
11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청 검사	2018.9.10. ~2019.3.9	법률신문 기고원문과 영미법 연구회 자료
12	캄보디아 대검찰청 검사	2019.6.24. ~2020.6.23.	캄보디아의 검찰청 및 법률시스템
13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검사	2019.8.26. ~2020.8.25.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양국 검찰비교론
14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검사	2020.11.9. ~2021.2.8.	범죄인 인도 문제에 대한 연구
15	베트남 하노이 검찰대학 부총장	2020.11.23. ~2021.2.22.	기소를 위한 디지털증거사용
16	메트로마닐라시티 따귀검찰청 검사	2021.8.2. ~2021.11.1.	온라인 아동 성착취사건 기소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활용

연번	소속	위촉기간	연구실적
17	몽골 대검찰청 국제협력부 부장검사	2021.8.2. ~2021.11.1.	범죄수익환수: 대한민국과 몽골의 법적 배경과 관리시스템 비교
18	하노이 인민검찰원 검사	2021.11.8. ~2022.2.7.	형사절차의 기술활용
19	미국 벤투라 카운티 검찰청 검사	2022.8.8. ~2023.2.7.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한 검사의 책임
20	호주 NSW주 검찰청 검사 영국 법무부 소송전담 변호사	2023.4.17. ~2023.7.31.	호주NSW주 검찰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연구 - 유죄답변 협상제도를 중심으로
21	前 미국 벤투라 카운티 검찰청 검사	2023.8.16. ~2024.2.15.	미국 형사절차에서 Criminal Defendant의 진술과 자백의 합법적인 수집 방법과 증거로서의 사용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안에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비상임연구위원은 0명이다. 다만, 아직 직제를 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직제상 비상임연구위원에 대한 규정(제18조제2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비상임연구위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통상 연구위원은 법무부 소속의 직원(검사 또는 공무원 등)으로 보하지만, 기관 외부에서의 제3자 관점을 활용해야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위치에서의 연구 역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근 수년간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이유로 비상임연구위원 제도를 종국적으로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요한다.

다만, 설령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집행 개선을 위한 방안은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선 해외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인재 풀을 확보하고, 우수 연구위원을 초빙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sup>3)</sup> 2024년 이후 비상임연구위원이 위촉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법무부에 따르면, 초빙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해외주재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파견된 법무협력관의 협조로 한인검사협회(KPA), 주한 일본대사관 법무협력관 또는 국제검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공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둘째, 현 제도상 비상임연구위원은 위촉계약서상 상근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논문 등재나 별도의 평가, 실적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연구결과물을 법무연수원 도서관, 검찰 이프로스망 전문검사(형사법제 등) 세미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활용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까지 역대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이 3개월부터 1년까지 들쭉날쭉하거나,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이 제각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상임연구위원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활용계획에 따라 법무연수원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를 정하여 그에 적합한 인재를 초빙하도록 하고, 초빙절차와 구체적인 업무범위, 기간 등을 사전에 규정한 뒤 추후 활용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 직제상으로만 존속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법무연수원 비상임연구위원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2025회계연도와 같이 전액 불용되는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상의 보완책을 마련하며, 채용 후에는 연구결과물의 체계적인 평가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sup>1)</sup> 사업이란, 북한에 대한 향후 형사처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와 통일 후 체제 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2억 8,600만원 중 2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2억 9,1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운영	286	286	-	-	286	252	-	34	29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북한인권보존기록소의 일부 시설·장비기준이 법무부령에 미달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시설·장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도록 하되(제13조제1항),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한다(제13조제5항). 이와 같은 담당기구로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동법 시행령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정한다(영 제14조제3항).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25년 기준 2,605건의 북한인권자료를 통일부로부터 이관받아 보관하고 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료 현황]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자료	2,026	2,066	2,177	2,388	2,605

자료: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보존소의 시설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법무부령 제954호)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존소의 시설 및 장비 기준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6]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해당 기준에 맞추어 보존소의 시설·장비 기준을 살펴보면, 일부 시청각기록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정)가 없고, 탈산·소독장비, 복원·시청각 장비도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시설·장비 현황]

구분		종이기록물	시청각기록물	전자 기록물	행정 박물
1. 서고면적	고정식	40.6m <sup>2</sup> (고정식 서가) 약 2,600권		해당사항 없음	
2. 사무공간 면적	작업실	서고 내 작업실 없음(사무실 내 작업)			
3. 시설·장비	공기조화 설비	향온흡습기 1대			
	온·습도계	온·습도계 1대			
	소화 설비	자동소화기기 1대 (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 장비	이중잠금장치 (보안업체 자동문/도어락), 폐쇄회로 감시장치 2대			
	탈산·소독 장비	미설치			
	복원·시청각 장비	미설치			
	매체수록 장비	전자매체 수록 장비 1대			
4. 보존환경	온도(℃)	20±2℃	필름매체류: 0±2℃ 자기매체류: 15±2℃	20±2℃	
	습도(%)	50±5%	필름매체류: 30±5% 자기매체류: 40±5%	40±5%	50±5%
	공기질	미세먼지(PM-10): 50µg/m <sup>3</sup> 이산화황(SO <sub>2</sub> ): 0.05ppm 이하 산화질소(NO <sub>x</sub> ):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120µg/m <sup>3</sup> 휘발성유기화합물(VOC): 400 µg/m <sup>3</sup>			
	조명	보존서고 100~300럭스(자외선 차단등 설치)			

주: 2026.3월말 기준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해당 기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준으로서 규모가 작은 보존소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은 영구기록물의 적정한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법무부가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이고, 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추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DB는 운영 업체를 선정해 3년간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관리용역비(210-1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법무부는 2025년 새로운 운영업체와 계약하여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리용역비 예산액은 1억 5,800만원이었지만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1,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해당 일반용역계약(2025~2027년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은 2024.12.23.에 체결되었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나, 같은 금액 조건으로 3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6년도 예산부터는 이를 반영하였어야 했을 것인데, 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에도 2025년과 동일한 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2026년 예산에서도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와 동일하게 1,900만원 가량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에 맞추어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유사한 형태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이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허청, 조달청 등 다수 국가기관에서 실무수습변호사를 매년 신규 채용하고 있다.

법무부의 경우, 매년 40~50여 명의 실무수습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3명, 2025년에는 35명을 각각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변호사는 6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계약을 종료한다.

[실무수습변호사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계획인원	43	44	51	45
채용인원	39	42	43	35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현재 실무수습변호사가 6개월 기간 이전에 계약을 마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결원과 불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적인 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원인 파악 및 적정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수습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실무수습변호사의 채용을 위하여 매년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통상 실·국의 기본경비(총액)에 일용임금(110-04) 비목으로 편성한다. 그런데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법무부의 실무수습변호사 채용 및 운영을 살펴보면, 매년 2024년의 경우 예산 7억 2,300만원 중 2억 4,300만원, 2025년 예산 6억 5,400만원 중 2억 6,600만원을 각각 불용하는 등 임금집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2026년 일용임금 예산액은 6억 4,900만원이다.

이와 같은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다수의 실무수습변호사들이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을 하거나 수습기간(6개월) 완료 전에 그만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무수습변호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45명의 계획인원 중 35명을 채용했지만, 35명 중에서 계약기간을 채우고 종료한 인원은 8명에 불과하였다.

[법무부 실무수습변호사 운영 세부 현황]

(단위: 명)

구분	법무실	검찰국	범정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	합계
2022	계획인원	31	3	2	5	-	2	43
	채용인원	29	3	-	4	-	3	39
	계약완료인원	22	1	-	2	-	2	27
	예산액	431	45	30	67	-	27	600
	집행액	383	42	-	20	-	25	470
	불용액	48	3	30	47	-	2	130
2023	계획인원	31	3	1	5	-	2	44
	채용인원	30	3	-	4	-	5	42
	계약완료인원	18	3	-	0	-	0	21
	예산액	433	45	15	67	-	30	617
	집행액	371	41	-	49	-	32	493
	불용액	62	4	15	18	-	30	129
2024	계획인원	32	3	1	4	3	3	51
	채용인원	32	3	-	2	3	1	43
	계약완료인원	7	2	-	1	3	-	14
	예산액	443	46	16	55	46	48	723
	집행액	281	38	-	28	42	16	431
	불용액	162	8	16	27	4	22	243
2025	계획인원	32	3	1	4	3	-	45
	채용인원	26	3	-	1	3	-	35
	계약완료인원	3	1	-	0	3	-	8
	예산액	456	48	16	57	48	-	654
	집행액	275	37	-	2	44	-	387
	불용액	181	11	16	55	3	-	266

1) 실무수습변호사의 1인당 월 급여지급액은 2025년 기준 약 264만원 수준으로 확인된다.

(단위: 명)

구분	법무실	검찰국	법정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출입국	합계	
2026	계획인원	32	3	1	4	3	-	2	45
	채용인원	-	-	-	0	-	-	-	-
	계약완료인원	-	-	-	0	-	-	-	-
	예산액	456	48	16	57	43	-	29	649
	집행액	-	-	-	-	-	-	-	-
	불용액	-	-	-	-	-	-	-	-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이와 같은 실무수습변호사의 계약 종료는 더 좋은 조건을 찾아 이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다수의 실무수습변호사가 중도에 그만두는 상황에서는, 첫째, 지속적으로 일용임금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둘째, 단순한 이직 외에 법무부의 실무수습변호사 운용에 관한 피고용자들의 만족도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실무수습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여부를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법무부에 따르면 실무수습변호사를 대상으로 업무범위, 제도 운영, 처우 등에 대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는 없다고 하며, 실무수습변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업무 매뉴얼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sup>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에 따르면, 변호사 수습제도는 변호사가 진행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기본적인 실례를 익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률사무종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특정 사건과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는 것은 수습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통일된 법무부 내의 기준 내지 규정 없이 각 실·국과 부서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보다는, 수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법무부에서 통일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각 실·국과 부서의 특성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이와 관련하여 실무수습제도에 대해서는 실무능력 배양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점검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었던 바 있다. [박선아,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로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12. 273-274면.]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법률사무종사 제도 개요와 표준 근로계약서,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한 안내문 등을 포함한 「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2023) 정도가 있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간략한 사무종사안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내부의 수습변호사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무부 실·국별 실무수습변호사 업무분장]

구분	업무						
법무실	- 소관 법령 정보·자료 연구·조사·수집, 자문·해석 등 -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및 지휘·감독 등 - 각종 징계(변호사·공증) 관련 자료 검토 및 행정소송 수행 등						
검찰국	-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형사특별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제·개정 업무, 헌법소송 검토, 해외 입법례·사례 연구 등						
법정국	- 국가소송, 헌법소송 대응, 법률자문 등						
인권국	-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인권 관련 법령검토						
국제법무국	- 국제법무 관련 정보·자료의 조사·수집 행사 지원, 국제협정 체결,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관련 리서치 및 회의 지원(영어 사용 업무 포함), 국제투자분쟁(ISDS)예방, 해외 진출기업 지원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p>○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실무수습변호사 주요업무</p> <p>가. 국적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무) 국적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수행</li> <li>- (법률자문) 국적법 및 관계 법령 검토, 입법 지원, 국내외 입법례 조사, 국적업무 관련 사례 조사 및 법률자문, 처분 관련 보고서 작성</li> </ul> <p>나. 난민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난민법 관련 입법 지원·검토, 해외 입법례 조사, 난민법, 관계 법령·업무 등 검토 및 지원</li> <li>- (송무) 난민소송, 헌법재판 및 헌법소원 등 관련 답변서 작성·검토, 수행, 자문·해석, 국내외 난민 관련 판례 조사·분석</li> </ul> <p>다. 난민심의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이의신청 보고서 작성 시 법률 자문</li> <li>- 난민 판례 분석 및 심사 유의점 공유</li> <li>- 소관 법령 제·개정 검토 및 관련 소송 수행</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1년</td> <td>이집트 난민판례 분석 책자 집필(총 112p)</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3년</td> <td>난민조사관 워크숍 발제(난민법 제2조제3호 인도적체류자의 요건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4년</td> <td>난민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수행 ⇒ 법무부 승소 확정</td> </tr> </table> <p>※ '25년: 채용 절차 종료 후 합격자가 임용 포기</p>	'21년	이집트 난민판례 분석 책자 집필(총 112p)	'23년	난민조사관 워크숍 발제(난민법 제2조제3호 인도적체류자의 요건 등)	'24년	난민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수행 ⇒ 법무부 승소 확정
'21년	이집트 난민판례 분석 책자 집필(총 112p)						
'23년	난민조사관 워크숍 발제(난민법 제2조제3호 인도적체류자의 요건 등)						
'24년	난민 이의신청 조사보고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수행 ⇒ 법무부 승소 확정						

자료: 법무부

또한, 체계적인 지침의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의 실무수습제도 운영상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실제 실무수습 중인 사람 내지 실무수습을 종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견수렴 외에도 실무수습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실무수습변호사가 6개월의 기간 이전에 계약을 마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결원과 불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적인 운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원인 파악 및 적정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실무자들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를 통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수습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일적인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sup>1)</sup>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51억 4,300만원 중 5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57억 1,8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5,143	5,143	-	-	5,143	5,109	-	34	5,71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률홈닥터의 1인당 1일 법률상담처리건수가 2.48건에 불과하고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로 법률홈닥터의 업무처리실적 편차가 존재하므로,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제고하고 엄밀한 성과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법률홈닥터란, 지자체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에 배치되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특히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한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1

다는 취지에 핵심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결혼이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독립유공자 후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이다. 2026년 4월 현재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는 상용임금(110-03)으로 편성된다. 2025년 인건비 지출액은 39억 4,600만원이다(1인당 약 6,070만원 수준). 배치기관은 각 권역별 지자체 등이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에서는 예산상 한정된 인력(변호사 6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일수 기준으로 1인당 법률상담처리건수가 1일 2.48건이므로, 업무량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 나아가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환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법률홈닥터는 각 시·군·구청이나 사회복지협의회,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등에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 16명, 경기도 12명, 경상도 6명 순이다.

[법률홈닥터 지역별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원특별자치도	3	2	2	2	2
경기도	11	13	12	13	12
경상도	7	6	6	6	6
광주광역시	3	3	3	3	3
대구광역시	4	4	5	5	5
대전광역시	2	3	3	3	3
부산광역시	5	5	5	5	5
서울특별시	13	13	14	16	16
울산광역시	1	1	1	1	1
인천광역시	4	4	3	3	3
전라도	5	5	5	3	3
충청도	6	6	6	5	6
제주특별자치도	1	-	-	-	-
합 계	65	65	65	65	65

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22년부터 해당 기관에서 자체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음

자료: 법무부

법률홈닥터의 주요 업무인 법률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전화상담은 홈닥터에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15분 이내로 상담해 주는 것이고,<sup>2)</sup> 통화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이메일상담도 가능하다. 내방상담은 홈닥터가 기관 내부에서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하는 대상자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출장상담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센터·장애인종합복지기관 등 기관방문 및 가정방문 등을 의미한다.

2025년 법률상담은 39,579건이고 그 중 전화상담<sup>3)</sup>이 24,038건으로 60.7%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 영업일수(245일)를 고려하면, 홈닥터 1인의 법률상담 처리 건수는 1일 2.48건이다. 그 중 전화상담이 평균 1.51건, 내방상담이 0.45건, 출장상담이 0.52건이다. 법률상담 외에도 유관기관 연계나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 기타 실적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홈닥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가 법률상담이라는 점<sup>4)</sup>을 고려하면, 법률홈닥터의 대국민 이용률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출장상담 확대 등으로 법률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법률홈닥터 지역별 법률상담 처리건수]

(단위: 건수)

지역구분	상담유형 구분	2023	2024	2025
강원특별자치도	전화상담 등	595	514	500
	내방상담	171	147	222
	출장상담	263	326	196
	<b>소 계</b>	<b>1,029</b>	<b>987</b>	<b>918</b>
경기도	전화상담 등	4,169	4,810	4,413
	내방상담	1,254	1,663	1,749
	출장상담	921	1,174	1,433
	<b>소 계</b>	<b>6,344</b>	<b>7,647</b>	<b>7,595</b>

2) 다만, 법무부는 사안에 따라 15분 이상 통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장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상담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3) 전화상담에는 이메일 상담(피치 못할 사유로 대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기타 업무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후술하는 자료에서와 같이 1인당 연간 업무처리건수는 2025년 790.3건으로, 영업일 1일당 3.2건이 된다.

(단위: 건수)

지역구분	상담유형 구분	2023	2024	2025
경상도	전화상담 등	1,254	1,933	1,811
	내방상담	569	872	577
	출장상담	471	618	420
	<b>소 계</b>	<b>2,294</b>	<b>3,423</b>	<b>2,808</b>
광주광역시	전화상담 등	682	800	693
	내방상담	185	230	211
	출장상담	120	181	145
	<b>소 계</b>	<b>987</b>	<b>1,211</b>	<b>1,049</b>
대구광역시	전화상담 등	1,533	1,578	1,533
	내방상담	368	291	471
	출장상담	352	572	638
	<b>소 계</b>	<b>2,253</b>	<b>2,441</b>	<b>2,642</b>
대전광역시	전화상담 등	1,268	1,360	1,204
	내방상담	305	283	319
	출장상담	393	403	387
	<b>소 계</b>	<b>1,966</b>	<b>2,046</b>	<b>1,910</b>
부산광역시	전화상담 등	2,370	2,257	1,877
	내방상담	470	408	323
	출장상담	812	732	623
	<b>소 계</b>	<b>3,652</b>	<b>3,397</b>	<b>2,823</b>
서울특별시	전화상담 등	6,321	7,801	8,334
	내방상담	1,568	2,416	2,623
	출장상담	2,523	3,837	3,399
	<b>소 계</b>	<b>10,412</b>	<b>14,054</b>	<b>14,356</b>
울산광역시	전화상담 등	170	181	200
	내방상담	41	36	69
	출장상담	218	239	103
	<b>소 계</b>	<b>429</b>	<b>456</b>	<b>372</b>
인천광역시	전화상담 등	1,139	803	973
	내방상담	73	108	70
	출장상담	169	283	292
	<b>소 계</b>	<b>1,381</b>	<b>1,194</b>	<b>1,335</b>

(단위: 건수)

지역구분	상담유형 구분	2023	2024	2025
전라도	전화상담 등	1,305	1,114	946
	내방상담	289	183	72
	출장상담	823	252	96
	<b>소 계</b>	<b>2,417</b>	<b>1,549</b>	<b>1,114</b>
충청도	전화상담 등	1,872	1,725	1,554
	내방상담	814	593	500
	출장상담	413	370	603
	<b>소 계</b>	<b>3,099</b>	<b>2,688</b>	<b>2,657</b>
합 계	전화상담 등	22,678	24,876	24,038
	내방상담	6,107	7,230	7,206
	출장상담	7,478	8,987	8,335
	<b>소 계</b>	<b>36,263</b>	<b>41,093</b>	<b>39,579</b>

주: 1. 전국 거점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법률홈닥터별 법률상담 실적 기준임  
 2. 전화상담 등에는 이메일 상담(장애로 인하여 대화가 어려운 경우 등)도 포함  
 3. 출장상담은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센터·장애인종합복지기관 등 기관방문 및 가정방문 등 해당  
 자료: 법무부

또한, 이와 같은 홈닥터의 업무를 ① 정량적인 실적, ② 이용자 만족도, ③ 그 외 정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하고 그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호도 조사 및 재배치 시 업무실적 등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체계화된 성과평가 기준이나 배점, 평가 방법 등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홈닥터 실적 우수기관 선정 시에도 정량실적만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이 다수 선정되는 등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센티브 역시 현재는 장관 표창을 한다든지 워크숍·간담회 등에서 우수 홈닥터를 격려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우수 성과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예컨대 2025년 8월 우수 실적기관은 원스톱솔루션센터(서울 소재), 서울 광진구청, 울산 광역시청이었고, 누적 우수 실적기관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소재), 경기도 성남시청, 서울 은평구청이었다.

둘째, 지역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와 업무의 성질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나 지역에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홈닥터의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법률홈닥터 1인당 업무처리실적(법률상담 + 유관기관연계 +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홈닥터 변호사 1인당 각 1,077.1건, 918.4건으로 처리량이 높은 반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강원특별자치도는 1인당 연간 업무처리건수가 각 396.3건, 414.7건, 468.5건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법률홈닥터 1인당 연간 업무처리실적]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강원특별자치도	343.0	359.0	526.0	496.0	468.5
경기도	696.2	650.2	702.9	849.8	918.4
경상도	540.9	414.5	433.5	683.5	544
광주광역시	442.7	347.0	362.0	447.0	396.3
대구광역시	477.3	575.0	521.8	579.2	648.2
대전광역시	757.0	1,237.3	919.0	972.0	942
부산광역시	786.2	966.8	982.2	930.8	747.8
서울특별시	761.2	940.2	885.7	1,060.0	1,077.1
울산광역시	359.0	482.0	582.0	646.0	564
인천광역시	617.8	839.5	511.3	615.0	641
전라도	547.8	525.0	670.5	567.0	414.7
충청도	643.7	715.5	672.7	745.0	673.2
제주특별자치도	342.0	-	-	-	-
전체 평균	628.0	715.8	695.3	812.7	790.3

- 주: 1. 연도·지역별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업무처리실적은 법률상담, 유관기관 연계, 법률문서 작성 조력 등을 포함한 값임  
 2.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2022년부터 해당 기관에서 자체 법률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신청을 하지 않아 배치기관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법무부

예컨대, 2025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 16명의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있지만 (전체 인원의 24.6%), 직접 내방자와 상담하는 내방상담은 전체의 36.4%(2,623건), 출장으로 인하여 업무부담이 큰 편인 출장상담의 경우 전체의 40.8%(3,399건)를 차지하고 있다.

법률홈닥터가 단순히 법률수요가 많은 곳에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나 지역에 균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화상담의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내방상담이나 기관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각 기관과 연계하여 수요를 발굴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 **셋째, 법률홈닥터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및 고도화가 필요하다.**

먼저 법률홈닥터에 대한 전화상담·방문상담 등 신청은 주로 온라인 사이트 (<https://lawhomedoctor.moj.go.kr/>)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자료 내지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 주요 사업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도 있다.

현재의 홈페이지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 중 기관과 연계된 출장상담에 대해서 설명이나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관과 연계하여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지게시판 등을 두어, 이용자들이 특정 일시와 장소에서 다수를 상대로 홈닥터가 법률상담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친화적으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사업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출입국관리법」, 「상법」 등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sup>1)</sup>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과태료의 경우,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법원의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면 검사가 이를 집행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및 제42조). 각 개별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된다. 예컨대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관리 신고의무 위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고의무의 위반 등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의 이사·감사 등이 회사편(제3편)에서 정한 등기·공고·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결산보고서·회계장부·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법무부의 과태료 본예산은 115억 1,400만원, 징수결정액은 232억 600만원으로, 법무부는 이 중 120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1억 4,700만원이다. 수납률은 52.0%이다.

[2025회계연도 과태료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11,514	11,514	11,514	23,206	12,059	11,147	-	52.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56-563

## 나. 분석의견

미수납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장기·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과태료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미수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5년 232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51.4%에 해당하는 120억 5,900만원만을 수납하여 111억 4,700만원을 미수납하였는데, 이와 같은 낮은 수납률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 및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결정하고 있지만, 수납액은 결정액의 절반 수준에 그쳐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이후 2024년 수납률은 51.4%, 2025년 52.0%에 불과하였다.

[연도별 과태료 징수 및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A/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2022	12,167	12,167	12,167	21,493	11,647	54.2	9,845	-
2023	12,167	12,167	12,167	21,904	11,915	54.6	9,989	-
2024	12,167	12,167	12,167	21,638	11,124	51.4	10,512	2
2025	11,514	11,514	11,514	23,206	12,059	52.0	11,147	-
2026	12,167	12,167	-	-	-	-	-	-

자료: 법무부

2025년 기준으로 미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이 110억 7,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범죄예방정책국(6,550만원), 출입국(600만원) 등으로 소액이었다.

[과태료 수납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검찰	출입국	범죄예방정책	운영	합계	
2022	징수결정액(A)	18,830	2,649	13	0	21,493
	수납액(B)	9,003	2,643	1	0	11,647
	B/A	47.8	99.8	9.1	-	54.2
	미수납액	9,827	6	12	0	9,845
2023	징수결정액(A)	19,782	2,028	92	3	21,904
	수납액(B)	9,875	2,022	17	0	11,915
	B/A	49.9	99.7	19.0	0.0	54.6
	미수납액	9,906	6	74	3	9,989
2024	징수결정액(A)	19,819	1,740	72	7	21,638
	수납액(B)	9,385	1,735	3	0	11,124
	B/A	47.4	99.7	4.2	0.0	51.4
	미수납액	10,434	5	67	7	10,512
2025	징수결정액(A)	21,173	1,961	67	5	23,206
	수납액(B)	10,101	1,955	1.5	2	12,059
	B/A	47.7	99.7	2.2	36	52.0
	미수납액	11,072	6	65.5	3	11,147

자료: 법무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까지 대검찰청의 과태료 미수납건 8,704건 중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미수납 건이 153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미수납한 금액은 47억 1,900만원에 달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미수납도 11건으로 나타났다. 고액 미수납은 건수로는 전체 미수납 중 17.6%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42.6%를 차지 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액별 과태료 미수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	1억원 초과	합계
미수납 건	8,551	135	7	11	8,704
미수납 액	6,353	2,497	496	1,726	11,07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고액 미수납액 상위 10건을 살펴보면, 주로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납 과태료 상위 10건]

(단위: 원)

연번	죄명	판결선고일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1	농지법위반	2006.11.3.	197,824,200	197,543,360
2	농지법위반	2007.7.26.	194,769,000	194,480,000
3	건축법위반	2006.10.9.	189,579,950	188,292,590
4	건축법위반	2003.9.3.	168,021,030	167,901,030
5	건축법위반	2006.4.19.	143,892,700	143,892,700
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2021.2.18.	146,900,000	139,900,000
7	농지법위반	2007.10.22.	109,630,000	109,630,000
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2021.2.18.	137,300,000	108,750,000
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2022.2.7.	83,380,000	82,380,000
10	농지법위반	2009.2.13.	80,000,000	79,950,000

자료: 법무부

대검찰청의 장기 미수납 과태료 현황을 살펴보면, 1년을 초과한 미수납건이 4,890건으로 전체의 56.2%를 차지하고 있고, 10년을 초과한 건도 9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납자들의 미납 금액은 33억 5,100만원이다.

[기간별 과태료 미수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년 미만	1~5년	5~10년	10년 초과	합계
미수납 건	3,814	2,757	1,188	945	8,704
미수납 액	2,154	3,982	1,586	3,351	11,07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판결선고일이 오래된 장기 미수납 상위 10개 사건을 살펴보면, 주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법위반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선고일이 1990년대인 사건들로, 2026년 현재까지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

[장기 미수납 과태료 상위 10건]

(단위: 원)

연번	죄명	판결선고일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1	건축법위반	1993.4.6.	37,161,680	36,661,680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993.10.25.	3,307,000	2,307,000
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994.4.9.	2,669,060	2,639,060
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994.12.30.	2,726,000	2,045,850
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995.3.30.	2,583,000	13,000
6	상법위반	1995.7.24.	1,000,000	911,710
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995.8.28.	2,000,000	1,338,600
8	건축법위반	1995.10.9.	4,000,000	3,375,800
9	건축법위반	1996.8.6.	4,500,000	4,100,000
10	상법위반	1997.1.10.	3,000,000	1,026,980

자료: 법무부

과태료 미수납 및 징수를 제고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고질적인 이슈이므로, 법무부는 징수를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sup>2)</sup> 특히 장기·과다 미수납액이 과도할 경우 과태료의 질서유지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법무부는 장기·과다 미수납액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파악하고, 나아가 미수납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하여 조기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미납자의 실거주지, 직장 및 재산을 파악한 후 집행관에 집행명령 또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 현황

관서운영경비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일반적인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 관서운영경비는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여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를 포함한다(동법 시행령 제31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법무부는 관서운영경비 301억 4,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서운영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관서운영경비	26,144	26,440	29,106	30,142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경우 1인의 채권자에게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추후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취지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하되, 운영비 중 공과금 및 위원회참석비, 특수활동비중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52조). 그리고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이하 “예규”라 한다)에서는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예규 제20조제1항), 나아가 5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① 운영비(210)중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② 특수활동비(230)중 정보·경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정한다(예규 제20조제2항).

그러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법무부는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한 건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서운영경비 초과 집행 현황]

(단위: 원)

이체일	이체액	수령인	목(코드)	용도
1.24.	15,750,000	성화기획인쇄사	운영비 (210-01)	국적수여식 필요 물품 구매
8.25.	5,945,000	풀무원푸드앤컬처	운영비 (210-05)	2025년 을지연습 근무자 식권 비용으로 특근매식비 사용
8.25.	5,165,000	풀무원푸드앤컬처	운영비 (210-05)	을지연습 비상소집 관련 식권 구입
10.28.	8,610,000	풀무원푸드앤컬처	업무추진비 (240-02)	제80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오찬 간담회
12.13.	5,978,000	비씨조흥	업무추진비 (240-02)	연말연시 성수기 대책 시행 관련 전 직원 격려

자료: 법무부

예컨대 '25.1.24. 법무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기념품으로 태극기와 수저세트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초과 지급의 예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1,575 만원을 일시 지급하였다.

'25.10.28. 교정본부는 교정의날 기념식 오찬간담회 67명 및 행사 귀빈 등 참석자 550명의 식대 지급을 위하여 861만원을 일시 지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귀빈 등은 국가에 대하여 식비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아니므로, 다수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초과 지급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5.8.25. 법무부는 을지연습 근무자 및 비상소집자 등의 특근매식비로 각 594만 5천원 및 516만 5천원을 동일한 채권자에게 일시급으로 지급하였다.

'25.12.13.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연말 출입국 관련 직원 격려를 목적으로 관서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로 1,200명분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597만원을 1회에 지급하였다. 법무부는 이것이 총 3건(3일 분할납품)에 대한 지급 건으로, 예규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1회 지급되는 금액'에 미해당된다는 입장이나, 그렇다면 이를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어야 하나 일시급으로 500만원을 초과 지급한 측면이 있다.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인데, 이는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대신, 집행 가능한 최고금액을 원칙적으로 건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그 '범위'와 '금액'에 제한을 두어 과도한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에서와 같은 집행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향후 법무부는 예규의 취지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적정 수준에서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sup>1)</sup>는 범죄피해자가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당 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계획현액 44억 1,300만원 중 34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은 48억 4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1,442	21,442	-	-	21,442	20,271	-	1,171	27,988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4,413	4,413	-	-	4,413	3,473	-	940	4,804

자료: 법무부

### 나. 분석의견

법무부는 2025회계연도 치료비·생계비 불용 내역과 관련하여 지급실적의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수요자 대상 조사, 통계의 추가적인 관리, 정책연구 등을 병행하여 치료비·생계비 지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5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35-300의 내역사업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한다. 생계비는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sup>2)</sup> 그 외에도 동 사업에서는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구분	요건	내용
치료비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되되, 해당 범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생계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li> <li>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범죄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li> <li>그 밖에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li> </ol>	범죄피해자에게 7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 다만,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명 가족의 경우 120만원, 2명을 초과하는 추가 1명당 4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

자료: 법무부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각 세부 지급 실적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치료비의 경우 전년 대비 지급건수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2022년 509건에서 2025년 451건으로 하락하였고, 심리치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생계비와 학자금, 장례비 역시 2025년 낮은 지급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타 법령·제도에 의하여 받은 동일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여 나머지만을 지급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금 지급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 손해배상금, 공탁금 등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 대하여서는 피해자 환수 여부를 검토한다.

[치료비·생계비 등 지급 실적]

(단위: 건)

구분	총계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2022	1,497	509	491	263	79	155
2023	1,458	490	425	296	113	134
2024	1,145	434	351	191	39	130
2025	1,064	451	318	161	33	101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은 신청건수의 감소로 인하여, 치료비 및 생계비로 편성된 2025년 기타 보전금(310-04) 42억 9,700만원 중 8억 9,400만원은 불용되었다.

[치료비·생계비 지급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치료비	900	1,000	770	915	970	785	900	769	900
생계비	900	497	770	543	723	360	541	295	467

주: '치료비'는 치료비·심리치료비를 포함한 실적이고, '생계비'는 생계비·학자금·장례비를 포함한 실적임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에서 제작성

현재로서는 지급실적 감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추정되는 사유로는 ① 치료비 및 생계비 지급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또는 ② 신청 절차가 부담이 되거나, ③ 범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 및 지원금액 산정 등을 위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① 내지 ②와 관련하여서는 범죄피해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등이 실시되었던 바가 없어 알기 어렵고,<sup>3)</sup> ③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또는 검찰에 대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일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반면,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수는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21년 1,429,826명→'24년 1,583,108명). 강력범죄 피해자 수는 2023년 대비 2024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범죄 대표 피해자 성별 추이]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남성	615,647	46.6	648,849	43.8	661,271	43.5	699,382	44.2
여성	406,593	28.9	429,065	28.9	440,826	29.0	437,580	29.9
미상	407,586	28.5	404,519	27.3	418,103	27.5	410,146	25.9
계	1,429,826	100.0	1,482,433	100.0	1,520,200	100.0	1,583,108	100.0

주.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주요 피해자 1명에 대한 정보를 대표로 입력한 값임.

자료: 경찰청, 「2024 범죄통계」, 2025, 38면.

[강력범죄 피해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강력범죄 범죄피해자 수	184,548	208,114	219,492	208,807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현재 법무부는 ① 피해자의 신청 건수, ② 신청건수 대비 지급결정 또는 반려 건수, ③ 신청으로부터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소요 기일과 같은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신청한 건에 비하여 어느 정도나 지급되고 있는지, 신청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이는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향후 법무부에서는 정책의 실효성과 실적 저하에 따른 원인 분석을 위한 정책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세부사업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홍보 등을 위하여 2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연구용역비도 1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치료비·생계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전반에 관하여 인식도와 함께 향후 개선방향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추후 홍보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2025회계연도 치료비·생계비 불용 내역과 관련하여 지급실적의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수요자 대상 조사, 통계의 추가적인 관리, 정책연구 등을 병행하여 치료비·생계비 지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처**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었으며, 2,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00%인 2,2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22	22	-	-	1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57억 3,300만원이며, 이 중 98%인 448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9억 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제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5,733	45,733	45,733	44,826	-	907	98.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한편, 법제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법제처의 자산은 215억 6,0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순 자산은 215억 6,0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0억 8,200만원, 유·무형자산 204억 7,700만원, 기타자산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억 9,000만원(△4.8%) 감소하였다. 이는 무형 자산은 감가상각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1억 4,800만원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a)	21,560	22,650	△1,090	△4.8
Ⅰ. 금융자산	1,082	1,071	11	1.0
Ⅱ. 유·무형자산	20,477	21,577	△1,100	△5.1
Ⅲ. 기타자산	2	1	1	100.0
부 채(b)	-	1	△1	△100.0
Ⅰ. 차입부채	-	1	△1	△100.0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a-b)	21,560	22,649	△1,089	△4.8

자료: 법제처

법제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97억 4,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이전비용 3,100만원, 국가운영비용 497억 5,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국가운영수익 3,800만원으로 구성된다.

국가운영비용의 증가는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가에 기인한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5억 6,0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무원 급여 상승에 기인하고, 운영비는 전년대비 2억 3,5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급임차료 및 고용부담금 증가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법제처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수 익(a)	38	19	19	100.0
Ⅰ. 이전수익	-	-	-	-
Ⅱ. 국가운영수익	38	19	19	100.0
비 용(b)	49,782	48,185	1,597	3.3
Ⅲ. 이전비용	31	9	22	244.4
Ⅳ. 국가운영비용	49,751	48,176	1,575	3.3
재 정 운 영 결 과(b-a)	49,744	48,166	1,578	3.3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26억 4,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15억 6,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억 8,900만원(△4.8%)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5억 7,8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7억 2,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대해 살펴보면, 재원의 조달에서는 전년대비 국고수입이 5억 3,600만원, 기타이전수익이 2억 8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이전에서는 전년대비 국고이전지출이 1,900만원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법제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2,649	22,887	△238	△1.0
Ⅱ. 재정운영결과	49,744	48,166	1,578	3.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8,655	47,930	725	1.5
Ⅳ. 조정항목	-	△1	1	100.0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1,560	22,649	△1,089	△4.8

자료: 법제처

법제처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양성**, ②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 등이 있다.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 사업은 강의실 사용료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임차료가 감액(22억 8,100만원 → 18억 200만원)되었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은 ‘최신 입법 트렌드’ 발간물의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법령해석국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일반용역비는 유사 행사의 소요비용 등을 고려해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감액(35억 700만원 → 34억 5,500만원) 되었다.



감사원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억 7,000만원이며, 9억 9,54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9억 9,510만 원을 수납하고 30만 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770	770	770	995.4	995.1	0.3	-	99.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95억 9,300만원이며, 이 중 94.4%인 1,411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4,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41,656	146,934 (+5,278)	149,593	141,196	3,750	4,647	94.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한편, 감사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감사원의 자산은 2,448억 5,200만원, 부채는 18억 2,400만원으로 순자산은 2,430억 2,9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9억 7,400만원, 유·무형자산 2,377억 7,400만원, 기타자산 61억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7억 5,000만원(1.6%) 증가하였다. 이는 무형자산이 차세대 OASYS 시스템구축 등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으로 전년 대비 68억 4,1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부채는 총당부채 18억 1,300만원, 기타부채 1,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억 400만원(12.6%)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44,852	241,102	3,750	1.6
Ⅰ. 금융자산	974	1,142	△168	△14.7
Ⅱ. 유·무형자산	237,774	232,596	5,178	2.2
Ⅲ. 기타자산	6,104	7,365	△1,261	△17.1
부 채	1,824	1,620	204	12.6
Ⅰ. 차입부채	-	-	-	-
Ⅱ. 총당부채	1,813	1,610	203	12.6
Ⅲ. 기타부채	11	11	-	-
순 자 산	243,029	239,482	3,547	1.5
Ⅰ. 기본순자산	101,120	101,120	-	-
Ⅱ. 적립금및잉여금	16,957	13,417	3,540	26.4
Ⅲ. 순자산조정	124,952	124,945	7	-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524억 8,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533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억 3,400만원, 비배분수익 4억 9,0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6억 3,200만원(1.1%) 증가한 1,524억 8,800만원이며, 이는 전년보다 급여 및 고용부담금 증가 등으로 총비용은 17억 4,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감사활동 및 행정지원 프로그램 순원가(총원가-총수익)는 전년 대비 19억 7,900만원 증가한 1,529억 7,800만원으로 총원가는 인건비 5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급임차료는 2억 9,400만원, 여비교통비 13억 5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보다 17억 4,700만원 증가한 1,533억 1,200만원이다. 총수익은 전년 대비 2억 3,200만원 감소한 3억 3,4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52,978	150,999	1,979	1.3
가. 프로그램 총원가	153,312	151,565	1,747	1.2
나. 프로그램 수익	334	566	△232	△41.0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490	142	348	245.1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52,488	150,856	1,632	1.1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52,488	150,856	1,632	1.1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394억 8,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430억 2,900만원으로 기초 대비 35억 4,700만원(1.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6억 3,2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7억 4,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3억 3,5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39,482	231,712	7,770	3.4
II. 재정운영결과	152,488	150,856	1,632	1.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56,028	160,363	△4,335	△2.7
IV. 조정항목	7	△1,737	1,744	100.4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243,029	239,482	3,547	1.5

자료: 감사원

감사원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감사활동경비**, ② **인건비** 등이 있다.

감사활동경비 사업은 특정업무경비 등에서 집행의 적정성이나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감액(169억 1,400만원 → 92억 3,400만원)되었고, 인건비는 결원 과다 문제와 충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989억 9,400만원 → 979억 9,400만원)되었다.

감사원은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등 핵심사항에 집중하면서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당시 감사운영기조인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감사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사원의 심사청구 처리율이 낮아지고 있고, 심사청구 결정까지 소요되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으며, 결정 이후에도 7일의 법정기한 내에 문서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심사청구를 신속히 수행하고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및 ‘공직비리 적발실적’ 2개 성과지표를 모두 목표달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 매년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방식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므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II

## 주요 사업 분석

### 1

### 감사원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및 법정기한 준수 필요 등

감사활동경비<sup>1)</sup>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감사원의 경비이다. 감사활동경비에서는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비롯한 일련의 감사활동, 감사원에의 심사청구 및 재심의 청구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본예산은 92억 3,400만원, 예산현액은 144억 2,300만원으로 감사원은 이 중 124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억 4,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151억 1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감사활동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감사활동경비	9,234	14,512	98	△187	14,423	12,485	89	1,849	15,10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 1-1. 감사원 심사청구의 신속한 처리 필요

### 가. 현황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sup>1)</sup>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감사원법」 제43조제1항). 심사청구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기관(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도록 한다(동조 제2항).

감사원에 따르면, 2025년 심사청구건수는 2,046건으로, 이 중 1,023건이 취하되고 738건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 건수는 969건이다.

[감사원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

연도	청구건수	취하건수	결정건수				이월건수
			계	인용	기각	각하	
2022	2,006	137	4,200	175	405	3,620	1,191
2023	808	56	764	32	476	256	1,180
2024	832	592	728	22	443	263	685
2025	2,046	1,023	738	32	391	315	969

주: 1. 청구건수는 당해 연도 접수 건수

2. 취하 및 결정건수는 해당 연도 처리 건수로서 과거 연도 접수사건의 처리실적 포함  
자료: 감사원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상대방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분석의견

감사원의 심사청구 중 이월되는 건수가 증가하였고, 심사청구 결정까지 소요되는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비중이 높으며, 결정 이후에도 7일의 법정기한 내에 문서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심사청구를 신속히 수행하고 법률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취지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심사청구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수 심사청구가 차년도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은 처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심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2,006건이 접수된 이후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08건, 832건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에는 2,04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한편, 취하건수 및 결정건수는 해당 연도에 처리된 사건 수로서 과거 연도 접수 사건의 처리 실적을 포함하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취하건수는 각각 56건, 592건이었으며 결정건수는 각각 764건, 728건이었다.

이와 같은 현황에 따르면, 2025년에도 969건을 당해연도에 결정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하였는데, 2024년의 이월건수(685건) 대비 41.4% 증가한 것이다. 이에 다수 심사청구가 같은 연도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의 적체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처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2) 감사원에 따르면, 2025년 심사청구 접수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청구인(원고) 패소 판결의 최종 확정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25.7.3. 감사원에 사건을 일괄 송부한 것에 기인한다. 이후 선결 판례가 확정되어 승소 가능성이 없어짐에 따라 청구인들의 연쇄적인 취하로 인하여 2025년 취하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둘째, 「감사원법」이 정하는 심사청구 결정의 법정기한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어 기한 내 처리가 요구된다.**

「감사원법」 제46조제3항은 각하, 인용, 기각결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감사자의 직무를 적시에 감시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동법이 정한 법정기한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법정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준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감사원이 심사청구 결정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인용결정 및 기각결정의 경우 3개월의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용결정의 경우 단 1건 외에는 모두 3개월을 경과하여 결정되었으며, 기각결정의 경우 2025년 22.8%만이 3개월 내에 결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기 용이한 각하결정의 경우에도, 2025년 전년 대비 15.6%p 하락한 61.6%만이 3개월 내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유형별 결정 소요기간 현황]

(단위: 건, %)

연도	인용 건수 (A)	(A)중 3개월 이내 결정 건수 (B)	(B/A) *100	기각 건수 (C)	(C)중 3개월 이내 결정 건수 (D)	(D/C) *100	각하 건수 (E)	(E)중 3개월 이내 결정 건수 (F)	(F/E) *100
2022	175	0	0.0	405	41	10.1	3,620	3,383	93.5
2023	32	0	0.0	476	125	26.3	256	170	66.4
2024	22	1	4.5	443	117	26.4	263	203	77.2
2025	32	0	0.0	391	89	22.8	315	194	61.6

주. 과거로부터 이월된 건수를 포함하여 해당 연도에 결정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자료: 감사원

셋째, 심사청구에 대한 인용·기각 결정이 있는 뒤에도 심사결정서가 제때 통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통지가 문서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법」 제46조제4항은 인용 내지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인용결정의 경우 전년대비 9.6%p 하락한 81.3%에 대해서 7일 내 문서로 통지하였고, 기각결정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4.6%p 하락한 93.1%에 대하여 기한 내 통지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용·기각 결정 시의 기한 내 통지 현황]

(단위: 건, %)

연도	인용건수 (A)	(A)중 7일 이내 통지건수(B)	(B/A) *100	기각건수 (C)	(C)중 7일 이내 통지건수(D)	(D/C) *100
2022	175	131	74.9	405	396	97.8
2023	32	30	93.8	476	462	97.1
2024	22	20	90.9	443	433	97.7
2025	32	26	81.3	391	364	93.1

자료: 감사원

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법 제46조의2), 관계기관 장은 ‘통지를 받으면’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47조). 따라서 등본을 첨부한 통지는 결정이 나온 다음 후속조치로 이행되는 첫 단계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절차를 준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특히 인용결정의 경우 2025년 32건 수준으로 매년 많지 않은 편이고,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sup>3)</sup>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3) 2025년 기준으로 인용결정의 평균 소요일은 602.8일로, 기각결정(295.6일)이나 각하결정(89.2일)에 비하여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 1-2. 감사원 성과지표 실적 제고 등

### 가. 현황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1개의 프로그램목표와 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프로그램목표는 “체계적인 감사활동 및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의 책임성 및 성과 확보”하는 것이며, 성과지표는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그리고 ‘공직비리 적발 실적’의 2가지이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로 1조 2,082억원을 달성하였고, 공직비리 적발로 총 262명을 감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회계연도 감사원 성과 달성 현황]

(단위: 억원, 명)

경제적 성과					직무감찰 성과			
계	변상판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기대효과 금액	계	징계·문책	통보 (인사·비위)	고발·수사요청
12,082	1	1,176	8	10,896	262 (154건)	150 (84건)	89 (54건)	23 (16건)

자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감사원)

### 나. 분석의견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및 ‘공직비리 적발실적’ 2개 성과지표를 모두 목표달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 매년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방식을 검증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므로,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 및 지표 달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첫째, 설정된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매년 실적이 낮아지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및 ‘공직비리 적발실적’의 2가지 성과지표에 대하여 감사원은 2025년 각 달성률 40.3%, 84.3%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다.

[2025회계연도 성과 목표 달성 현황]

(단위: 억원, 점, %)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목표 대비 달성률	2022	2023	2024	2025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변상관정, 추징·회수·보전, 환급·추급 금액 및 기대효과 금액	목표	31,500	32,000	32,500	30,000
		실적	33,904	23,401	19,556	12,082
		달성률	107.6	73.1	60.2	40.3
공직비리 적발 실적	Σ(신분상조치 인원수×가중치)	목표	650	750	850	1,000
		실적	892	1,473	1,105	843
		달성률	137.2	196.4	130.0	84.3

자료: 감사원

이와 같은 목표 미달성에 대하여, 감사원은 경제적 성과 금액은 재정 관련 감사 사항이 재정지출·수입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는 경우 실적치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24년 이전에 대규모 재정지출 관련 감사가 시행되었고, '25년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기관정기감사가 증가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사항별로 실지감사 착수부터 감사결과 시행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해연도에 시행되지 않아 경제적 성과금액에 미산입되는 예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비리 적발 실적의 경우 '24년 대비 '25년에 징계·문책 건수('24년 125명 → '25년 150명) 및 통보(비위·인사자료) 건수('24년 36명 → '25년 89명)는 증가한 반면, 고발·수사요청 실적이 크게 감소('24년 154명 → '25년 23명)한 데 기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요구의 경우 '24년도까지는 가중치에 따라 10점을 부여하였으나, '25년도부터는 중징계요구로만 분류하여 4점을 부여하는 등 종전 대비 실적이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실태」 감사(18년, 3.7조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22년, 2.6조원) 등 대규모 재정지출 감사는 구조상 매년 수시로 실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은 대규모 재정 감사에 의존하여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대규모 재정지출 감사를 제외하더라도 2022년 이후 전반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성과가 미산입되는 시차의 문제 역시 매년 성과 측정 시마다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경제적 성과의 지속적 하락과 낮은 성과 달성률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점검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공직비리 적발 실적의 경우 단순히 실적을 무조건적으로 제고시키는 것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과목표 달성과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독려라는 가치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조율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사익추구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감사운영이 개선되었다는 점,<sup>1)</sup> 2025년부터 직급·경중별 가중치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측정산식을 변경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성과목표가 적정 수준에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직비리 적발 실적 측정산식 변경]

변경 전 (24년)	○ 측정산식: [(중앙3급, 지방4급, 기타 임원급 이상 중 파면 인원×10)+(중앙3급, 지방4급, 기타 임원급 이상 중 고발 인원×10)+(중앙3급, 지방4급, 기타 임원급 이상 중 중징계 인원×8) ... ] + [(기타 파면 인원×5)+(기타 고발 인원×5) ... (기타 경징계 인원×3) ... ]						
	구분	파면	고발	중징계	경징계	수사요청	인사자료통보
	중앙3급, 지방4급, 기타 임원급 이상	10점	10점	8점	6점	6점	6점
	이하	5점	5점	4점	3점	3점	3점

1) 감사원,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2025.8월)

변경 후 ( '25년)	○ 측정산식: (중징계 요구 인원×4) + (경징계 요구 인원×3) + (통보 인원×3) + (고발·수사요청 인원×4)				
		신분상 조치			형사상 조치
	구분	중징계(문책)요구 (정직·강등·해임·파면)	경징계(문책)요구	통보 (인사자료·비위)	고발·수사요청
	배점	4점	3점	3점	4점
	○ 측정방법: 통계 담당부서(감사전략담당관)의 연도말 통계 확정 이후 전자자료를 토대로 산출				
	- (대상 표본 수 및 선정방법) 대상 연도에 시행완료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을 전수 조사				
	- (확정 과정)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 시행 후 통계자료 작성·제출 ⇨ 통계 총괄 부서(감사전략담당관실)에서 검증 및 확정 처리 ⇨ 연초 전년도 감사활동 관련 통계자료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출자료 재검증				

자료: 감사원

추가로, 감사원은 ‘공직비리 적발 실적’을 2027회계연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대신 ‘제도개선 성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27회계연도 성과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것으로 밝혔는데, 추후 대체 신설된 성과지표의 적합성·타당성에 대하여도 국회 등 외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사원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적의 정확한 산출 여부, 나아가 성과지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산출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성과지표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개별 감사부서가 국가기관 등의 회계분야 관련 시정요구 등에 대해 재정적 성과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심의 참고자료로서 감사보고서(안)에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부의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성과가 측정된다.

2025회계연도 성과를 살펴보면,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는 총 1조 2,084억원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금액’(변상판정, 시정요구 등)과 ‘기대효과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치요구에서는 주로 추징·회수·보전으로 1,17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수입 증대’가 가장 큰 7,530억원, 다음으로는 ‘지출합리화’가 1,821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항목별 값]

(단위: 백만원)

경제적 성과 계	조치요구			기대효과 금액					
	변상 판정	시정요구 등		소계	예산 절감	수입 증대	국민 편익	재산 증가	지출 합리화
		추징·회수 ·보전	환급 ·추급						
1,208,421	145	117,595	830	1,089,851	89,756	752,954	1,602	63,395	182,143

주: 2025. 12월 말 기준, 십만원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감사원에 따르면,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원통계규정」(훈령)에서 재정적 성과 금액의 산정기준과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훈령에서 재정적 성과집계표(서식 2호)에 따라 통계를 추출하고 있으며, 성과 집계표의 작성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금액, 기대효과금액에 대한 분류기준을 두고 있다(별지 2의1).

[경제적 성과 판단기준]

구분	기 준
조치금액	변상판정·시정요구 등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금액을 명시하여 직접 추징·회수·보전 또는 환급·추급하도록 조치한 금액
기대효과 금액	조치사항에 금액을 명시한 직접적 처분요구는 아니나 감사결과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로 인해 공공에 미치는 금전적 효과금액(감사결과 시행 후 5년 이내 발생할 효과)
예산절감	정책실패·예산낭비의 사전 예방, 비경제적·비효율적 예산집행의 개선,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금액
수입증대	세원의 발굴·확충, 매각금액의 증가, 공공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킨 금액
국민편익	공공서비스의 양적·질적 개선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하거나 서비스 요금의 감소 등으로 부담이 감소하게 된 금액
지출 합리화	우선순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억제하여 다른 재원으로 사용가능하게 된 금액
재산증가	법률관계의 변경(권리·의무 조정)을 통한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공적 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금액

자료: 감사원

그런데, 추징·회수·보전금액의 경우 징수누락된 세입금을 추징하거나 부당히 설계된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게 하고, 교부 확정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케 하는 등 비교적 그 성과를 금전으로 환산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기대효과 금액'의 경우 판단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컨대 새로운 공법이나 시공기술의 개발로 인해 절감된 예산액, 재정지원협약의 변경으로 인한 국·공유재산의 증가액, 감사활동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재검토됨으로써 줄어든 지출액, 포장용기 등의 규격 개선이나 업무처리절차 개선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게 된 편익의 금전적 가치 등은 상당히 복잡한 추계를 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성과 중 기대효과 금액의 세부 기준]

예산절감	① 새로운 공법, 시공기술의 개발, ② 비경제적인 설계의 변경, ③ 물품구입 등 계약방법의 개선, ④ 매입대상 품목·규격 등의 대체, ⑤ 물품 등의 재고관리 등 보관방법 개선, ⑥ 단가·시간·수량 등 기준제정 또는 개정, ⑦ 기구 및 인력운용의 합리화, ⑧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의 억제, ⑨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
수입증대	① 감면규정 또는 예규 등의 개정으로 수입(세입금 포함) 증대, ② 임대자산 등의 효율 시정, ③ 관유물 매각가격 산정방법 등 개선, ④ 기금운용방법 및 사업의 변경, ⑤ 여유자금 등의 활용방법 개선, ⑥ 무단점용 또는 초과사용 재산에 대한 수입증대 방법 강구, ⑦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수입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것
국·공유 재산증가	① 국·공유재산 증가, ② 채무감소, ③ 재산권 보전, ④ 재정지원협약 변경, ⑤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재산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것
지출 합리화	① 세출 구조조정, ② 사업계획의 취소 또는 축소·통폐합, ③ 사업계획의 재검토, ④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지출합리화가 기대되는 것
국민편익	① 가격사정의 합리화, ② 포장·용기 등의 규격 개선, ③ 효율·이자율의 개정 또는 적용방법의 개선, ④ 요금 또는 세금부과 등의 관계규정을 개정, ⑤ 업무처리절차 개선, ⑥ 각종 증명의 사용기간 연장, ⑦ 기타 전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국민 편익이 기대되는 것

자료: 감사원

그런데 이와 같은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되는 산출내역에 대하여, 감사원은 감사 관련 자료이므로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부적인 산출방식 역시 개별 감사사항마다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도출한 연도별 경제적 성과 값에 대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할 만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우선 '경제적 성과의 산출내역'이 원천적으로 전부 공개 불가능한 감사 관련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사원의 감사 역시 전부 비공개인 것이 아니고 이미 상당수 그 결의내용과 감사결과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감사보고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횡령·부당집행 등 금액과 부적정 업무방식까지 명시되어 있다는 점, 모든 산출내역에 대하여 일괄 공개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준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주요한 경제적 성과 산출에 대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논거는 타당하지 못하다.

나아가, 이와 같은 논거가 타당하다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원이 산출한 경제적 성과의 정확성을 외부에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므로, 성과지표 자체가 검증이 어려운 지표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성과목표 관리를 통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동법은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85조의6 제3항). 또한, 「국가회계법」은 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4조). 따라서 성과보고서에서의 성과지표는 정부 성과관리체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지표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의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는 실제 그 체계성을 확인할 만한 근거자료를 외부에서 세부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그 방식의 타당성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과지표보다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환수건수 및 금액 등)을 바탕으로 하여 외부에서의 검증이 용이한 다른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며, 1억 1,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인 1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112	112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예산현액은 253억 9,100만원이며, 이 중 89.6%인 227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2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5,268	25,268	25,391	22,748	347	2,296	89.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자산은 192억 4,500만원, 부채는 3,800만원으로 순자산은 192억 6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금융자산 1억원, 유무형자산 127억 3,400만원, 기타자산 64억 1,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7억 6,100만원(32.9%) 증가하였다.

부채는 차입부채 3,400만원, 총당부채 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200만원(46.2%)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9,245	14,484	4,761	32.9
Ⅰ. 금융자산	100	63	37	58.7
Ⅱ. 유·무형자산	12,734	14,309	△1,575	△11.0
Ⅲ. 기타자산	6,410	112	6,298	5,623.2
부 채	38	26	12	46.2
Ⅰ. 차입부채	34	26	8	30.8
Ⅱ. 총당부채	4	-	4	-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	19,206	14,458	4,748	32.8
Ⅰ. 기본순자산	1,869	1,869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7,337	12,589	4,748	37.7
Ⅲ. 순자산 조정	-	-	-	-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00억 7,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77억 2,200만원, 관리운영비 125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2억 1,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8억 6,300만원(10.2%) 증가한 200억 7,400만원이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가 2,500만원 감소하고 경비가 5억 5,700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5억 3,200만원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프로그램별 재정부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722	6,184	1,538	24.9
가. 프로그램 총원가	7,722	6,184	1,538	24.9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2,569	12,037	532	4.4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217	9	208	2,311.1
V. 재정부영순원가(I+II+III-IV)	20,074	18,211	1,863	10.2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부영결과(V-VI)	20,074	18,211	1,863	10.2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44억 5,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92억 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7억 4,800만원(32.8%)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부영결과는 기초 대비 18억 6,3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54억 1,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을 살펴보면, 국고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재원의 조달은 249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 4,800만원 증가하였고, 이는 주로 국고수입 및 기타이전수익의 증가에 기인한다. 재원의 이전은 1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고이전지출의 감소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4,458	13,263	1,195	9.0
II. 재정부영결과	20,074	18,211	1,863	10.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4,823	19,406	5,417	27.9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II+III+IV)	19,206	14,458	4,748	32.8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헌법재판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억 4,400만원이며, 3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00%인 3억 6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4	244	244	306	306	-	-	1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84억 2,400만원이며, 이 중 97%인 566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7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8,424	58,424	58,424	56,676	-	1,748	97.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한편, 헌법재판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헌법재판소의 자산은 2,142억 1,200만원, 부채는 38억 8,000만원으로 순자산은 2,103억 3,2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2억 1,000만원, 유·무형자산 2,139억 3,600만원, 기타자산 6,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억 100만원(0.1%) 증가하였다.

부채는 차입부채 38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3,100만원 (3.5%)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가 신규 금융리스 등으로 인하여 1억 2,8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a)	214,212	213,911	301	0.1
Ⅰ. 금융자산	210	406	△196	△48.3
Ⅱ. 유·무형자산	213,936	213,433	503	0.2
Ⅲ. 기타자산	66	72	△6	△8.3
부 채(b)	3,880	3,749	131	3.5
Ⅰ. 차입부채	3,880	3,749	131	3.5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	-	-	-
순 자 산(a-b)	210,332	210,162	170	0.1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18억 2,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이전비용 4,000만원, 국가 운영비용 618억 9,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국가운영수익 1억 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수익합계(a)	105	80	25	31.3
Ⅰ. 이전수익	-	-	-	-
Ⅱ. 국가운영수익	105	80	25	31.3
비용합계(b)	61,934	59,216	2,718	4.6
Ⅲ. 이전비용	40	28	12	42.9
Ⅳ. 국가운영비용	61,894	59,188	2,706	4.6
재정운영결과(b-a)	61,829	59,136	2,693	4.6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101억 6,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103억 3,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억 7,000만원(0.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6억 9,300만원 증가하였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3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5회계연도 헌법재판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10,162	210,299	△137	△0.1
Ⅱ. 재정운영결과	61,829	59,136	2,693	4.6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1,999	58,999	3,000	5.1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10,332	210,162	170	0.1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인건비 사업**, ② **본부기본경비 사업**이 있다.

인건비 사업은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감액(347억 9,200만원 → 346억 9,200만원)되었으며, 본부기본경비는 국외업무여비를 실소요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감액(69억 5,700만원 → 69억 5,500만원)되었다.



대법원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813억 4,400만원이며, 7,818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0%인 7,583억 9,700만원을 수납하고 231억 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02,770	502,770	502,770	501,924	495,323	6,301	300	98.7
등기특별회계	278,574	278,574	278,574	279,878	263,074	16,804	-	94.0
합계	781,344	781,344	781,344	781,802	758,397	23,105	300	97.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2,734억 7,7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2조 1,965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69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0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77,639	1,977,639	1,992,479	1,958,086	26,874	7,519	98.3
등기특별회계	278,574	278,574	280,998	238,454	38	42,506	84.9
합계	2,256,213	2,256,213	2,273,477	2,196,540	26,912	50,025	96.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902억 6,600만원이며, 2,881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3%인 2,861억 5,3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 8,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8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266	390,266	390,266	288,148	286,153	1,987	8	99.3

자료: 대법원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의 계획현액은 3,928억 3,400만원이며, 이 중 72.8%인 2,861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진흥기금	390,266	390,266	392,834	286,153	506	7,012	72.8

자료: 대법원

###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904억 6,900만원(△8.3%)이 감소한 9,98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347억 3,300만원(15.6%)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716,748	729,896	729,896	743,384	13,488	26,636
기금	147,195	359,249	359,249	255,292	△103,957	108,097
합계	863,943	1,089,145	1,089,145	998,676	△90,469	134,73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2025회계연도 대법원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40억 3,000만원(△1.5%)이 감소한 2조 2,782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151억 1,900만원(5.3%)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091,976	2,207,726	2,207,726	2,178,647	△29,079	86,671
기금	71,172	104,571	104,571	99,620	△4,951	28,448
합계	2,163,148	2,312,297	2,312,297	2,278,267	△34,030	115,11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대법원의 자산은 9조 1,604억 200만원, 부채는 1,186억 1,900만원으로 순자산은 9조 417억 8,3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4,214억 3,400만원, 유무형자산 8조 6,183억 2,600만원, 기타자산 1,206억 4,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300억 900만원(2.6%) 증가하였다. 이는 소프트웨어 484억 7,800만원, 토지 5억 4,300만원, 건물 12억 7,400만원 등 일반유형자산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168억 1,100만원, 기타부채 18억 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450억 6,700만원(61.3%)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 내 차입금이 300억원 증가한 점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9,160,402	8,930,393	230,009	2.6
Ⅰ. 금융자산	421,434	262,150	159,284	60.8
Ⅱ. 유무형자산	8,618,326	8,448,829	169,497	2.0
Ⅲ. 기타자산	120,642	219,414	△98,772	△45.0
부 채	118,619	73,552	45,067	61.3
Ⅰ. 차입부채	116,811	71,062	45,749	64.4
Ⅱ. 총당부채	-	681	△681	△100.0
Ⅲ. 기타부채	1,808	1,809	△1	△0.1
순 자 산	9,041,783	8,856,841	184,942	2.1
Ⅰ. 기본순자산	3,931,502	3,931,502	0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349,325	1,161,520	187,805	16.2
Ⅲ. 순자산 조정	3,760,956	3,763,819	△2,863	△0.1

자료: 대법원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조 7,609억 5,600만원 발생하였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325억원(7.2%) 증가한 1조 9,745억 9,600만원이며, 이는 사법정보화운영 프로그램이 651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8억 4,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1,315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00만원 증가하였고, 경비는 47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2,100만원 감소하였다. 비배분비용에서 이자비용은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0만원 증가하였다. 비배분수익에서는 재화및용역제공수익이 2,176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1,700만원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555,697	559,842	△4,145	△0.7
II. 관리운영비	2,022,586	1,926,580	96,006	5.0
III. 비배분비용	2,028	2,941	△913	△31.0
IV. 비배분수익	605,715	647,267	△41,552	△6.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974,596	1,842,096	132,500	7.2
VI. 비교환수익 등	252,325	142,134	110,191	77.5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722,271	1,699,963	22,308	1.3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조 9,315억 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82조 1,019억 7,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2조 4,441억 8,700만원(△9.9%)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7조 2,908억 5,800만원 감소,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3조 384억 1,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34조 2,221억 5,2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7조 9,580억 3,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12조 782억 4,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조 485억 4,2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897억 1,300만원, 기타순자산의 증가 30조 5,426억 8,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전기 기초순자산	3,931,501	1,033,566	3,795,771	8,760,839
II. 재정운영결과	-	1,699,963	-	1,699,963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	1,827,917	-	1,827,917
IV. 조정항목	-	-	△31,953	△31,953
V. 전기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3,931,501	1,161,520	3,763,819	8,856,841
VI. 당기 기초순자산	3,931,501	1,161,520	3,763,819	8,856,841
VII. 재정운영결과	-	1,722,271	-	1,722,271
VIII. 재원의조달및이전	-	1,910,076	-	1,910,076
IX. 조정항목	-	-	△2,863	△2,863
X. 당기 기말순자산 (VI - VII + VIII + IX)	3,931,501	1,349,325	3,760,956	9,041,783

자료: 대법원

##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대법원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등기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없었다. 일반회계 지출은 1조 9,581억원, 사법서비스 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862억원이며, 등기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785억원이다.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일반회계		← 전출 0	등기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7,813	19,581		2,785	2,785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운용규모 2,862

주: 총계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본부 운영지원 사업이 있다.

본부 운영지원 사업은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하므로 의무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예상액의 10%를 감액(1,169억 1,100만원 → 1,165억 4,800만원)하였다.

대법원은 ①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여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② 재판 지연을 해소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법원 구현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대법원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145개 계약이 당초 계획보다 착수 지연되었고, 그 중 49개 계약에서 147억 5,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정보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법원은 2024년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요청을 3차례 하였지만 조달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분 20억 2,600만원의 집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2025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하였다가 조달청으로부터 반송된 후에 비로소 전액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은 정밀한 세입 추계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계약 체결 지연

가. 현황

사법업무 전산화<sup>1)</sup> 사업은 사법업무시스템 구축,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각급법원 정보화기반 구축,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개선·관리하는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예산액은 727억 4,000만원, 예산현액은 714억 4,800만원으로 이중 539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147억 5,0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828억 4,6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법업무전산화	72,740	72,740	937	△2,229	71,448	53,957	14,750	2,741	82,84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00

## 나. 분석의견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145개 계약이 당초 내부 사업계획보다 착수 지연되었고, 그 중 연내 집행이 어려워진 49개 계약에서 147억 5,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대법원은 향후 정보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사법업무시스템 구축'(사법업무시스템 기능 개선 등) 사업은 사법업무시스템 고도화, 재판서 및 사건부 DB구축,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162억원 중 26억 8,800만원만을 집행하고 차년도로 132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그 외에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에서는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 각급법원 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사법정보화 기반 구축 사업 등 내역사업에서 여러 계약대금이 이월되었다.

이와 같은 이월이 발생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으로 추진된 여러 내역사업에서 다수의 계약이 계획 대비 착수가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총 145개 계약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착수일자보다 지연되었으며, 그 중 33.7%에 해당하는 49개 계약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컨대 재판사무시스템 기능개선(사법부인증관리센터 개발사업) 과제는 본래 '25년 7월 경 착수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10월에 착수하여 대금이 이월되었고,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사업은 본래 2025년 4월 경 착수 예정이었으나 그로부터 151일 지연된 2025년 9월에 비로소 계약이 체결되는 등, 다수 계약에서의 지연 및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에서 대부분 계약은 이월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상의 착수일보다 실제 착수가 늦어짐으로써, 사업 전반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세부 계약별 이월 현황]

연번	계약명	내부 사업계획 수립일	실제 착수 (계약일)	계약까지 걸린기간 (일)
1	2025년 재판사무시스템기능개선(사법부인증관리센터 개발사업)	2025-07-09	2025-10-17	100
2	2025년 사법업무전산화시스템 고도화 사업(개인정보보호조치 등)	2025-08-28	2025-12-22	116
3	2025년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인사관리시스템 액티브X제거 및 고도화 1차)	2024-10-18	2025-05-07	201
4	코트메일 외부접속 보안강화 사업(본인 확인 적용)	2024-11-20	2025-01-20	61
5	2025년 재판서 및 사건부 DB구축 사업	2025-01-21	2025-04-21	90
6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통합발주)	2025-01-21	2025-07-18	178
7	재판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감리용역	2025-07-30	2025-12-01	124
8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통합발주)	2025-04-18	2025-09-16	151
9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인프라)	2025-08-05	2025-12-26	143
10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2025-08-04	2025-12-15	133
11	2025년 사법부 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 사업	2025-07-03	2025-10-21	110
12	2025년 사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감리용역	2025-05-16	2025-07-30	75
13	2025년 사법부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ISP 사업	2025-01-24	2025-07-10	167
14	2025년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상용SW 도입(xFrame5 v3.0)_UI SW	2025-07-03	2025-08-14	42
15	2025년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상용SW 도입(웹리포팅 SW)	2025-07-03	2025-08-18	46
16	2025년 사법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상용SW도입웹구간암호화 및 전자서명 SW	2025-07-03	2025-08-14	42
17	재판업무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통합발주)	2025-01-21	2025-07-18	178
18	재판업무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MGMT스위치)	2025-09-08	2025-09-26	18
19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DBMS SW	2025-09-08	2025-10-28	50
20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DB암호화	2025-09-08	2025-10-28	50
21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DB접근제어	2025-09-08	2025-10-28	50
22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인프라통합모니터링	2025-09-08	2025-10-28	50
23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데이터베이스성능관리	2025-09-08	2025-10-28	50
24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서버보안	2025-09-08	2025-10-28	50
25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시스템접근제어	2025-09-08	2025-10-28	50
26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 _웹어플리케이션 성능관리	2025-09-08	2025-10-28	50
27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웹어플리케이션서버	2025-09-08	2025-10-28	50
28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인프라취약점진단	2025-09-08	2025-10-28	50

연번	계약명	내부 사업계획 수립일	실제 착수 (계약일)	계약까지 걸린기간 (일)
29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플랫폼 구축 및 모델개발 사업(직접구매_통합로그관리)	2025-09-08	2025-10-28	50
30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	2025-04-18	2025-09-16	151
31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인프라)	2025-09-02	2025-12-26	115
32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WAS Server)	2025-11-06	2025-11-26	20
33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PKI 인증 솔루션)	2025-11-21	2025-12-11	20
34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SSO 솔루션)	2025-11-21	2025-12-11	20
35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LADP)	2025-11-21	2025-12-11	20
36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영상스트리밍 솔루션)	2025-11-21	2025-12-11	20
37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API 운영관리플랫폼)	2025-11-21	2025-12-11	20
38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DB암호화)	2025-11-21	2025-12-11	20
39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DB접근제어)	2025-11-21	2025-12-11	20
40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 구축(상용SW)(서버보안)	2025-11-21	2025-12-13	22
41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감사로그)	2025-11-25	2025-12-11	16
42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DBMS, DBMS 이중화)	2025-11-25	2025-12-19	24
43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DBMS 성능 모니터링)	2025-11-25	2025-12-18	23
44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계정관리)_시스템접근제어	2025-11-25	2025-12-18	23
45	차세대 사법부 그룹웨어시스템(상용SW)(인프라취약점진단)	2025-11-25	2025-12-18	23
46	2025년 하반기 사무용 전산장비 구매 사업(레이저프린터(흑백))	2025-07-10	2025-09-18	70
47	20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통합구매)	2025-01-23	2025-09-23	243
48	20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가상화솔루션)	2025-04-23	2025-08-07	106
49	2025년 영상재판 등 관련시스템 개선확충 사업(영상재판 관리클라우드)	2025-04-23	2025-11-17	208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에서 작성성

특히, 동 사업에서 추진한 전체 계약 145건 중 78.6%에 달하는 114건의 계약이 2025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계약들이 하반기에 체결되었는데, 이러한 하반기 집중 현상은 사업비 이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조속한 계약 착수 및 사업관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 계약체결일 현황]

(단위: 건, %)

월별	건수	비율
2024년	5	3.4
2025년 1분기	7	
2025년 2분기	19	17.9
2025년 3분기	44	
2025년 4분기	70	
총합	145	100

주. 2024년 체결된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에 해당됨.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2025.1. 오픈) 및 형사전자소송시스템(2025.10. 오픈) 등 대규모 사업에 인력 자원이 대거 집중됨에 따라, 예년 대비 신규 사업의 착수가 피치 못하게 지연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정보화 사업은 단순 물품 구매와 달리 설계-개발-테스트-검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장기 사업이므로, 이전 단계의 성과가 확정되어야 다음 단계 집행이 가능하여 정밀한 품질 관리를 위한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내 사업수행을 완료할 경우 사업 부실이 우려되어 기술 협상 및 환경 구성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였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산직 주무 담당자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인력이 부족하여 사업의 적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제3조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계획된 정보화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지게 되어 큰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사업의 적정한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법원은 향후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의 계약 체결 지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화 사업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기을일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법원정책연구비<sup>1)</sup>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사업이다.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은 6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억 5,800만원 등을 합쳐 예산현액은 10억 6,200만원이며, 이중 8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차년도로 2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6억 5,0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법정책 연구개선	1,945	1,945	358	54	2,357	2,084	238	34	1,691
법원정책 연구비	650	650	358	54	1,062	824	238	-	65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계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등 사유로 이월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제 실시를 조기에 하는 등 연구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원정책연구비는 정책연구비(260-02) 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매년 연례적으로 일부 과제의 연구용역대금이 이월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여러 과제가 회계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하여 대금이 이월되었으며, 2025년에도 2억 3,8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22.4%가 미집행되고 이월된 것으로, 이와 같은 높은 이월률은 동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원정책연구비 연도별 이월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A)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B)	불용액	이월률 (B/A)
2021	1,026	350	△182	1,195	507	324	364	27.1
2022	1,026	324	-	1,320	853	464	3	35.1
2023	1,026	464	-	1,490	952	501	37	33.6
2024	885	501	-	1,386	1,018	358	10	25.8
2025	650	358	54	1,062	824	238	-	22.4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원경매 이용자 조사를 통한 신문공고 효과성 분석 및 법원경매 공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경우 2025년 6월 계약체결되었으나 연구기간이 2026년 3월까지로 연장되어 연구비 전액(3,600만원)이 이월되었고, “전자소송기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방안 연구”는 2025년 9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2026년까지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고 전액(8,900만원) 이월되었다.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도 9월 말 계약 체결되어 5,500만원이 이월되었다. 유사하게 타 이월 과제들도 2025년 3분기에 계약 체결되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및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의 연구비 부족을 이유로 각 2025.6.24.과 2025.12.30.에 3,600만원, 1,900만원을 자체전용했고, 두 연구 모두 차년도로 연구비가 이월되었다.

[2025년 이월 과제 목록]

(단위: 백만원)

연번	연구기간	과제명	연구비	차년도 이월액	방식
1	25.6.13.~ 26.3.13.	법원경매 이용자 조사를 통한 신문공고 효과성 분석 및 법원경매 공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36	36	제한경쟁 →수의
2	25.9.26.~ 26.2.25.	전자소송기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암호화방안 연구	89.94	89.94	제한경쟁 →수의
3	25.9.8.~ 26.1.7.	법원보관금의 출연금 산정모형에 관한 연구	43	17.2	제한경쟁 →수의
4	25.8.20.~ 26.2.19.	해외 주요 법원의 소송절차규정 분석 및 우리 지재소송절차에의 시사점 연구	40	40	제한경쟁
5	25.9.29.~ 26.3.28.	사법연수원 발전을 위한 방향과 구체적 방법에 관한 연구	55	55	제한경쟁 →수의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책연구비는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으로,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다(「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제4조 및 제5조). 동 사업에서의 연구용역 목록을 살펴보면 2025년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체결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연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상반기 정책연구용역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연례적인 정책연구비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의 연례적 이월 문제는 이미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sup>2)</sup>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법원정책연구비의 적시 집행을 위하여 계약체결시기를 조정하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 법원정책연구비는 연례적으로 과제 기획 및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일정으로 운영되어 다수의 과제가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수행기간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 3-1.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 후 불용

## 가. 현황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sup>1)</sup> 사업은 종전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으로, 재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적용한 범용 IT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 재판사무·전자소송시스템이 93개 시스템의 산발적 개발로 인해 시스템 간 수백 개 호출 관계가 존재하여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 노후화와 비표준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법업무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14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8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3억 2,600만원이며, 대법원은 이 중 41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고, 21억 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23,000	23,000	5,848	-	28,848	24,151	1,916	2,781	30,177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구축	1,478	1,478	5,848	-	7,326	4,102	1,118	2,106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2024년 계약금액 조정 사전검토 요청을 3차례나 하였지만 조달청으로부터 모두 반려되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분 20억 2,600만원의 집행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2025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물가변동 조정요청을 하였다가 조달청으로부터 반송된 후에 비로소 전액 불용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을 미리 예상하고, 2024년 예산에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20억 2,6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다.<sup>2)</sup>

[2024년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일반연구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303]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13,278
[260]연구용역비	5,848
[260-01]일반연구비	5,848
1.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5,848
가. 소송절차별 업무지원 전면개편	3,822
1) 법관지원 등	480
2) 재판서작성관리 등	3,342
<b>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b>	<b>2,026</b>

자료: 대법원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제3항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3조제1항1호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므로, 대법원은 조달청의 사전검토 결과가 적정 회신될 경우 사업자(LG CNS)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및 물가변동금액 지급을 하려는 계획이었다. 사업자는 2024.7.29. 대법원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2) 대법원의 2024년도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2020.9. 28.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따라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에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한 계약금액조정을 사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산식에 따라 20억 2,600만원의 순증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하여 2024.8.5., 2024.10.3., 24.12.2., 3회에 걸쳐 조달청에 사전검토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은 모두 반려하였다. 대법원은 계약금액 조정분 예산 2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후 2025.3.20. 4차로 계약금액 조정을 조달청에 신청하였으나, 이번에는 증빙서류 누락으로 반송되었다. 이후 사업자의 증빙서류 보완이 없으면서 추가적인 조정신청은 없었고, 대법원은 2025회계연도 2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내역]

구분	일자	내용
1차 신청	'24.8.5.	[조정요청금액] - 1회 물가변동 분(24.1.1.): 720,638천원 - 2회 물가변동 분(24.5.13.): 373,526천원 계: 1,094,164천원
	'24.8.24.	[반려] 투입인력 중 데이터베이스관리-하위와 데이터 아키텍트는 직무분야의 통합에 의한 SW기술자의 평균임금 변화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차 신청	'24.10.3.	[조정요청금액] - 1회 물가변동 분(24.1.1.): 525,826천원 - 2회 물가변동 분(24.5.13.): 364,553천원 계: 890,379천원
	'24.11.25.	[반려] 투입인력 중 데이터베이스관리-하위와 데이터 아키텍트를 제외한 나머지 SW기술자 직무분야에서 1차 조정신청 시와 상이한 등락률을 적용할 근거가 타당하지 않아 물가변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차 신청	'24.12.2.	[조정요청금액] - 1회 물가변동 분(24.5.13.): 383,879천원
	'24.12.16.	[반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따라 인상된 기능점수 단가는 2025년 이후 추진 예정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 불가

구분	일자	내용
4차 신청	'25.3.20.	[조정요청금액] - 1회 물가변동 분(24.5.13.): 383,879천원
	'25.4.1.	[반송]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6항에 따른 증빙서류 누락 등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대법원의 예산 집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적절하다. 이미 2024년 중순 물가변동 조정을 위한 사전검토 신청이 조달청으로부터 3차례나 반려되어, 실질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거의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고이월하였다.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각 호3)에 따른 이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이월에 해당된다.

또한, 대법원은 2025년에 이전과 동일한 사유(24.5.13. 물가변동분)로 다시 4번째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번에는 증빙서류 누락(용역공정예정표 미제출)으로 인하여 반송처리되었다. 이후 사업자 측에서 별다른 요구가 없자 대법원은 사고이월한 20억 2,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이는 2024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예산 미집행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예산 집행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이월과 불용이라고 볼 것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재원 배분·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3-2. HW 및 상용 SW 구입 지연

#### 가. 현황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sup>1)</sup> 사업은 종전 전자소송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으로, 재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적용한 법원 IT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HW 및 상용 SW 구입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17억 8,500만원으로 이중 9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800만원은 이월하였고 3,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23,000	23,000	5,848	-	28,848	24,151	1,916	2,781	30,177
HW 및 상용 SW 구입	1,785	1,785	-	-	1,785	951	798	36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에서의 HW 및 SW 구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전 검토 및 준비를 강화하고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과제를 적시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전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은 1999년 이후 부분적, 단계별 확장으로 인한 시스템의 복잡도가 심각하고, 노후화와 비표준으로 신기술을 수용할 수 없어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기획하고, 2020년 계약체결 및 분석단계에 착수하여 2025.1.31. 차세대전자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총사업비는 2,446억 3,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0년('20~'30), 이 중 구축 기간은 5년('20~'25), 사업비는 1,042억 5,700만원이고 운영·유지관리 기간이 5년('25~'30), 사업비는 1,403억 7,900만원이다. 따라서 구축 사업은 2025년 종결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운영·유지를 위한 예산만이 편성되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연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사업비	21,994	21,262	18,461	13,278	23,000

자료: 대법원

그런데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HW 및 상용 SW 구입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17억 8,500만원으로 이중 9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 9,800만원은 이월하였고 3,600만원은 불용하였다. 이에 동 내역사업의 집행률은 53.3%에 불과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과제인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보안장비 구매 사업(인프라취약점진단)' 및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보안장비 구매 사업(GPKI DB 서버)' 2개 과제의 각 납품기한이 2025.12.24., 2025.12.26.이었다가, 구축에 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납품기한이 2026.3.31.로 연장되었고, 각 구매대금 및 조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2026년으로 사고이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프라취약점진단 과제의 경우 계약체결은 2024년 말에 이루어졌음에도 2025년 연내 납품을 받지 못하여 이월되었다. 반면, GPKI DB서버의 경우 계약체결 자체가 2025년 10월 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두 사업은 2026.3월 및 2월에 각 납품되었으며, 2026.4월에 이르러 대금이 지급되었다.

[HW 및 상용 SW 구입 사업의 이행 현황]

사업명	계약체결	납품기한	납품일	검수완료	대금지급	사고이월액
인프라 취약점진단	'24.12.26.	'25.12.24. →'26.3.31.	'26.3.6.	'26.3.19.	'26.4.1.	7억 5,500만원
GPKI DB서버	'25.10.20.	'25.12.26. →'26.3.31.	'26.2.26.	'26.3.26.	'26.4.1.	4,300만원

주. 사고이월액은 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것임.

자료: 대법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같이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업무시스템 및 기반환경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단순 물품 납품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장비·소프트웨어 적용 여부 검토, 설치환경 준비, 연계 테스트, 안정화 및 검수 절차 등이 함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안장비의 경우 단순 물품 납품에 그치지 않고 설치·연동·시험운영 등 후속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납품요구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프라 취약점진단 과제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1년의 계약이행기간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말에도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취약점 진단이 더 늦어져 2026년 3월에서야 완료되었다는 점, 그리고 DB서버의 경우 처음부터 25년 10월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계약이 이행되기 위한 시간이 여유롭게 확보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가지 과제에서는 대법원이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 준비와 계획 마련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은 HW 및 SW 구입 사업 등 유사한 보안장비 구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전 검토 및 준비를 강화하고 일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과제를 적시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1.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사업의 연례적인 지원

##### 가. 현 황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sup>1)</sup> 사업이란, 대법원 판례 중 국민들에게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하고 유용한 판례 5~8개를 선정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소개하는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SNS 등에 게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은 4,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1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100만원, 이중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00만원이다. 2026년도 예산액은 3,0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일반 경비지원	46,158	46,158	202	155	46,515	45,768	525	221	47,762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40	40	31	-	71	31	40	1	3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의 제작이 지연되어 2024년 및 2025년에는 판례 동영상이 공개되지 못하였고 사업 예산의 연례적인 이월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동영상 제작 프로세스를 신속히 수행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사업은 국민에게 쉽게 판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실시되었으며, 2026년까지 총 40개의 판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TV 등에 게시하였다. 연간 5~8편 가량의 동영상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12월 22일에 사업자와 계약하였고(계약금액 3,960만원), 이에 따라 제작된 “이혼한 부부 간에도 스토킹 처벌 가능?” 등 동영상 8개는 2024년 6~9월 경 게시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예산액 4,000만원 중 3,091만원을 차년도로 이월하였고, 2024년에는 공개된 동영상이 없었다.

또한, 2025년의 경우 9월 30일에 사업자와 계약하였고(계약금액 3,950만원), 대법원의 수정 및 추가 요청사항 등에 따라 25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약이 2개월 연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에 동영상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추가적인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흰색실선, 차선변경 사고, 처벌되나요?” 등 6개 동영상은 2026년 4~5월 경 공개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업 지연에 따라 2025년 예산현액 7,100만원 중 4,000만원은 이월되었다.

대법원은 2024년 동 사업의 예산으로 판례 동영상이 아닌 장애인 사법지원 제도 교육 동영상을 제작·게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지적되었던 바 있었는데,<sup>2)</sup> 2025년에도 동영상 공개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모두 판례 동영상 공개 건수는 0건에 불과하였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공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회)

구분	2022	2023	2024	2025
공개된 판례 동영상 수	5	8	0	0
예산	40	40	40	40
집행액	39.93	0	39.6	30.91
차년도 이월액	0	39.6	30.91	39.5
총 조회수 합계	125,146	250,521	217	-

주: 1. 총 조회수는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만 집계된 것임(법원TV는 조회수 집계 되지 않음)

2. 판례 동영상 수는 해당 연도에 공개된 동영상의 수를 의미함.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에서 재작성

2) 참고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제도 교육 동영상 제작’을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제작’ 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어긋난 집행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은 ① 대상 판례 선정, ② 사실관계 및 시나리오 기초자료 정리, ③ 사업자 선정, ④ 계약 체결 및 용역 수행, ⑤ 동영상 감수 및 수정, ⑥ 정기 업로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동영상 제작·공개 지연과 연계적인 이월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례의 선정과 검토, 시나리오 기초자료의 정리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며, 동영상 전문 제작업체가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동영상 수정과 감수에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계연도의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하면서 본래 계획되었던 동영상 제작과 공개를 지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현재와 같은 방식에서는 당해연도에 동영상을 제작해 차년도에 공개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합한 예산현액 중 상당 부분을 미집행하고 다시 이월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업의 착수 시기를 당기고 판례 선정 및 검토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는 등 사업관리 전반을 강화하며, 사업자와의 계약 시기를 매년 상반기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예산상 동영상 제작비가 편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판례 동영상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는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4-2.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의 장비구매 문제

### 가. 현황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sup>1)</sup> 사업이란, 법원에서 활용하는 문서감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증 절차인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문서감정인의 전문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2억 6,900만원 중 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은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1억 3,9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일반 경비지원	46,158	46,158	202	155	46,515	45,768	525	221	47,762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269	269	-	-	269	69	195	5	13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예산 승인 전용을 8월에 신청하여 9월에 실시된 숙련도 평가에서 영상분광분석기를 계획과 달리 활용하지 못했고 예산은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 구매한 영상분광분석기를 법원 문서감정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

문서감정의 경우 국가공인자격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단 등재 절차에서 후보자의 자질·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법원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 과정에서 실질적인 검증 절차(숙련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2023년 시범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 후,<sup>2)</sup> 2024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의를 거쳐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을 시행하였다.

[법원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 현황]

(단위: 명)

연도	명단 등재 감정인 수
2023	26
2024	28
2025	31

자료: 대법원

동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 중 영상분광분석기(VSC)는 자외선, 적외선, 고강도 가시광선을 여러 각도로 비추어 다르게 반응하는 대상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장비로서 문서감정, 지문감식, 광원, 미세증거 장비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사업비로 구매한 영상분광분석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를 요한다.

**첫째, 장비 구매가 늦어져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예산상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영상분광분석기를 도입하여 숙련도 평가에서 해당 장비를 후보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증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해당 장비의 구입비 2억원이 예산안 편성 당시 자산취득비(43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로 잘못 편성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2025.8.20. 기획재정부에 전용을 위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승인전용이 이루어진 시점은 2025.10.22. 이었다.

2) 당시 시범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는 필요 장비의 부재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인영과 필적 2개 분야에 대해서만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2025.9.25. 치러진 후보자 숙련도 평가 심사에서는 영상분광분석기를 활용한 평가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에서는 필적, 인영 분야에 대해서 실제 시료감정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였고, 문서위·변조 부분은 장비 등의 문제로 이론(주관식) 평가만 진행하였다.

한편, 해당 장비는 국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국세청, 조폐공사, 국가기록원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후보자 숙련도 평가가 9월 경으로 계획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비목 전용을 위한 절차는 8월보다 이른 시기에 신속하게 착수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나아가 승인을 받지 못하여(또는 늦어지게 되어) 장비 구입이 어려울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해당 장비를 보유한 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장비를 대여해 평가에 사용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는 점, 장비 구입비가 이월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은 향후 필요한 장비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여 유사한 평가 제도의 운용 및 예산의 집행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기 구매한 영상분광분석기를 법원 문서감정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로 구매한 영상분광분석기는 2억원의 고가 장비이므로, 이후 단순히 숙련도 평가에서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해당 장비의 활용계획에 대하여, ① 법원감정인 명단 등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서등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의 문제 설계 및 출제, 평가대상자의 응시에 사용하는 것(‘26년 9월 평가에 최초 활용 예정), ② 법원 감정인 명단 등재자를 대상으로 한 직무 연수(‘26년 8월 연수에 최초 활용 예정), ③ 법원 감정인 명단 등재 문서감정인들이 법원의 문서감정 사건에서 해당 장비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상분광분석기 보유 필요성]

**1.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개선(→숙련도 평가 응시에 필요)**

- 향후 문서감정 평가 분야의 세분화가 필요한데, 인영 및 필적 외에 지문, 문서 위·변조 등 평가분야를 추가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상분광분석기(VSC)와 같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2023년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이 있었음
- 2023년도 숙련도 평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 예산으로 진행하였으나, 향후 매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숙련도 평가 응시를 위해 매년 타 국가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문서감정인 직무연수**

- 이와 같은 교육·연수 명령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법원 감정에 관한 재판 절차 등에 관한 교육 외에도 최근 문서 감정 유형 및 감정 기술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데 최근 문서감정이 과학화·객관화를 지향함에 따라 필수 장비가 고가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교육·연수에 소요되는 장비 및 비용에 관한 지원이 필요함

자료: 대법원

다만, 문서 등 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의 경우 연 1회 치러지는 평가이고, 법원 감정인 명단 등재자에 대한 직무 연수 역시 연 1회 실시되므로,<sup>3)</sup> 법원의 문서 감정 사건에 해당 장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문서감정인에 대한 직무연수는 2023~2025년까지 매년 5월 경 1회씩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21조 (감정인에 대한 지도·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지정된 감정인들에게 감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문서등의 감정업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을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4-3.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 집행 구조 개선 필요

#### 가. 현황

법정통역센터 운영<sup>1)</sup> 사업은 법정 통·번역인 후보자가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편중됨에 따라 우수한 역량의 통·번역 자원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므로, 법정 통·번역 서비스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상근 통역인을 고용하여 영상으로 통역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3억 5,4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 3,8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억 9,200만원이고, 이중 2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차년도로 1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3억 5,4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일반 경비지원	46,158	46,158	202	155	46,515	45,768	525	221	47,762
법정통역센터 운영	354	354	138	-	492	298	189	5	35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은 연례적으로 12개월분의 상근통역인 인건비를 계상하여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절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향후 소요 인건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

법정통역센터는 법정통역 서비스의 질 향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역 서비스의 격차해소를 목적으로 2024.7.1. 개소하였다. 동 센터에서는 법률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가 높은 우수한 통역인을 채용한 후, 영상재판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 법원에 영상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통역인을 구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 영상으로 통역을 제공하여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 소송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법정통역센터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7명의 통역인을 두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에서는 상근통역인을 통번역 용역업체를 통하여 고용하고 있다. 2024.7월 센터가 개소하면서 1년 임기로 상근통역인을 채용하였고, 2025.6.에 근무기간이 종료되었다. 2025년 다시 위탁고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5.7.1. 새로운 상근통역인들이 근무를 개시하였다.2) 이에 대법원은 2024~2025년 배정받은 법정통역센터 운영 예산 중 일부분만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년도로 이월하는 양상을 반복하여 보이고 있다. 2024년의 경우 사업비 2억 7,900만원 중 1억 3,700만원을, 2025년의 경우 예산액 3억 5,4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다.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				2025				2026
	예산액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액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액
법정통역센터 운영	279	136	137	6	354	298	189	5	354

자료: 대법원

특히 2026년의 경우에도 상근통역인 6인의 12개월분 인건비를 모두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선금 외에 상당 부분의 사업비는 2027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회계연도 내의 예산 집행과 적정한 자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적정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2025년 법정통역센터 통역인 위탁고용에 관한 용역기간은 2025.7.1.~2026.6.30.이다. 상근 통역 인원은 7명이다(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 아랍어, 파키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각 1명). 근무시간은 1일 5시간(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1주 25시간으로 한다.

### 가. 현 황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운영<sup>1)</sup> 사업이란 영상재판 및 화상회의 장비의 성능 개선과 확충을 통한 원격 재판·회의 환경 고도화를 하는 사업이고,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sup>2)</sup> 사업은 영상재판시스템을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운영 사업의 예산액은 10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7,7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12억 4,300만원, 이중 2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6억 6,0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업업무전산화	72,740	72,740	937	△2,229	71,448	53,957	14,750	2,741	82,846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운영	1,066	1,066	177	-	1,243	226	1,016	1	66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사업의 2025년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이 중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6년도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 동일하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일반회계 1331-300의 내역사업

2) 코드: 일반회계 1143-404의 내역사업

[2025회계연도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판일반 경비지원	46,158	46,158	202	155	46,515	45,768	525	221	47,762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170	170	-	-	170	169	-	1	17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영상재판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이용상의 편리성 여부, 제도의 장점과 미비점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상재판이란, 재판부 및 소송관계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절차를 말한다. 영상재판의 종류는 크게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이용한 영상재판'<sup>3)</sup>으로 나눌 수 있다. 어느 방식이건 직접 물리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2021.8.17. 영상재판의 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해 11.18.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의 영상재판 활용 범위 및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3) 가까운 법원이나 관공서 등에 있는 중계시설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영상재판의 활용 범위 및 방법]

1. 민사재판: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 조정기일,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인신문, 통역
2. 형사재판
  - 증인신문, 감정인, 통역인: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공판준비기일: 인터넷 화상장치 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 구속 이유 고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자료: 대법원

영상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사법업무전산화’ 세부사업의 ‘영상재판/화상회의 등 관련 시스템 기반 구축 운영’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홍보 사업비는 ‘재판일반경비지원’ 세부사업의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내역사업에 편성되어 있다.

2021년 11월부터 실시된 영상재판은 초기에는 활용빈도가 적었으나, 매년 실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5년에는 14만 8,816건에 달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상재판 실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실시건수	128	6,123	24,976	73,305	148,816

자료: 대법원

하지만 민사 또는 형사 재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전체적인 재판의 규모에 비해서는 영상재판의 실시건수가 아직까지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sup>4)</sup> 영상재판의 활성화를 통하여 당사자의 편리한 재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영상재판의 실시 독려와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이에 대법원은 ‘영상재판시스템 활성화 홍보’ 사업을 통하여 홍보물 제작, 온라인 배너 광고, 옥외 광고, 포스터 제작 등 2025년 1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던 바 있다.

4) 민사사건의 접수 건수는 2022년 422만 7,700건에서 2024년 470만 9,506건으로 증가하였고, 형사 사건 역시 2022년 151만 7,547건이던 것이 2024년에는 176만 2,869건으로 증가하였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 2025.9. 748·791면.)

다만, 위와 같은 홍보 외에도 영상재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상재판시스템 및 제도와 관련한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응답자의 31.2%가 영상재판을 잘 모르거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영상재판을 해보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3%를 차지하였다. 다만 동 자료는 2023년 조사 결과이므로, 이러한 인식이 최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를 법관, 참여관(법원사무직 등), 변호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해 본 시민들까지 확대하여,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피드백 결과를 사업 전반에 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사업의 경우 2025년 신규 편성된 사업인데, 예산 투입에 따른 홍보 효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를 위한 버스·지하철 광고물 게시 사례]



자료: 대법원

따라서, 영상재판시스템의 적정 운영 여부,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이용상의 편리성 여부, 제도의 장점과 미비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

일반회계 전출<sup>1)</sup>이란 등기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해소 및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등기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말한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출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305억 9,600만원으로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전액이 불용되었다.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액은 234억 9,6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전출	30,596	30,596	-	-	30,596	-	-	30,596	23,49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은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은 정밀한 세입 추계 및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는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잉여금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매년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예산상 편성하고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등기특별회계 8010-800

그런데 최근 등기특별회계는 연례적으로 기 편성된 전출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있다. 2023년 1,702억 1,100만원 예산 중 111억 7,600만원(6.6%)을 전출한 것을 제외하면, 2022년과 2024년, 2025년 모두 편성된 전출금을 전액 불용시켰던 바 있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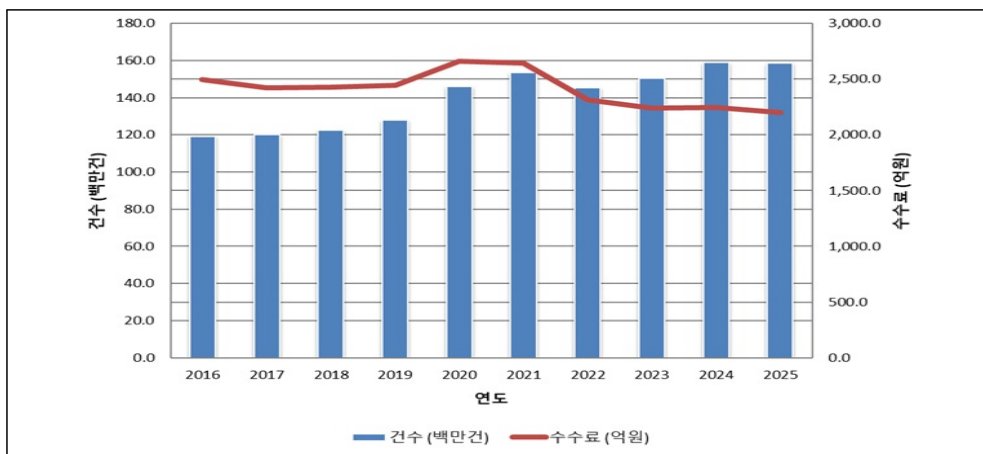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	49,493	50,305	50,305	-	-	-	50,305
2023	170,211	170,211	170,211	11,176	6.6	6.6	159,035
2024	123,965	123,965	123,965	-	-	-	123,965
2025	30,596	30,596	30,596	-	-	-	30,596
2026	23,496	23,496	-	-	-	-	-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불용은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이 부족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등기신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포함한 수수료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2,495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 2,644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2,201억원이다.

[등기신청 건수 및 수수료 현황(2016~2025)]



주. 건수 및 수수료는 등기신청(무인납부포함)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포함한 값임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등기특별회계의 순세입이 감소하면서 순계 역시 지속적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순세입은 2,436억 2,200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2,180억 6,100만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등기특별회계는 2025. 11월 예수기간 10년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억원을 예수하였다.

[등기특별회계 순세입·순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순세입	243,622	233,052	228,147	218,061
순세출	249,256	253,027	250,033	238,454
순계	△5,634	△19,975	△21,886	△20,393

자료: 대법원

한편, 대법원은 등기신청수수료를 2012년 인상한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약 13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사업비 등의 지출 증가를 사유로 2025년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2025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인상 내용]

종류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등 (규칙 제5조의2제1항)	수기신청	15,000원	18,000원
	e-form신청	13,000원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	동결
상속(유증·사인증여 포함)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이전등기 (규칙 제5조의2제2항)	수기신청	15,000원	20,000원
	e-form신청	13,000원	17,000원
	전자신청	X	X
신탁등기 (규칙 제5조의2제3항)	수기신청	면제	8,000원
	e-form신청	면제	6,000원
	전자신청	면제	4,000원
기타등기 (규칙 제5조의2제4항 본문)	수기신청	3,000원	4,000원
	e-form신청	2,000원	3,000원
	전자신청	1,000원	동결

자료: 대법원

[2025년 법인등기신청수수료 인상 내용]

종류	방법	개정 전	개정 후
회사의 설립, 관할 외 본점이전 등의 등기 (규칙 제5조의3제1항)	수기신청	30,000원	35,000원
	e-form신청	25,000원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동결
상호·목적, 주소 등 변경등기, 기타등기 (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수기신청	6,000원	7,000원
	e-form신청	4,000원	5,000원
	전자신청	2,000원	동결

자료: 대법원

그러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이 수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등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연례적인 과대 추계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예정된 전출이 집행되지 않고 그 잔액이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것은 국회가 심의한 세출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점, 그리고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예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에 직결되는 것으로 전출금 예산의 낮은 집행률은 일반회계 세입 부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향후 이와 같은 전출금 미집행과 순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등기수수료의 계속적인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등기수수료의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자정부의 확대와 함께 과거 유료로 발급하던 각종 민원문서(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가 온라인 발급 시 무료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정부 문서의 무료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최근의 정책적 경향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등기특별회계의 성질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전하거나, 불필요한 특별회계 사업을 지출구조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이 매우 저조한 점에 대하여는 2019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그리고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바 있는데,<sup>2)</sup> 이와 같은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전액 불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2)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부진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 내역]

회계연도	시정요구 내용
2019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2015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매년 집행액이 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중략) 대법원은 법률 규정과 실제 운용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등기특별회계 수입예산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것 (제도개선)
2020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은 최근 5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한데, (중략)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수입 변동 예상액 및 정보화 사업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전출 예상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출 예산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개선할 것(제도개선)
2021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과다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해소하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당초 집행계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
2023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현황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 (중략) 대법원은 연말까지의 총 세입 징수액 추이를 보다 정확히 추계하여 다음연도 세계잉여금 이입액을 최소화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제도개선). 대법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립적인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가 심의한 세출예산의 집행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시정)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 가. 현황

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sup>1)</sup>란, 등기시스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 및 무중단 대국민서비스를 위해 등기응용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액 319억 1,200만원 중 297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액은 292억 4,0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등기업무 전산화	33,388	33,388	-	-	33,388	31,158	35	2,195	30,951
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31,912	31,912	-	-	31,912	29,737	-	2,175	29,24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부족을 사유로 이미 내용연한이 장기간 도과한 노후장비의 교체 시기를 지연시켰는데, 해당 장비 대부분이 내용연한을 상당 기간 경과한 장비인 만큼 추후 교체를 적기에 실시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등기특별회계 1334-305의 내역사업

등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등기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임차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임차료(210-07) 목의 경우 2025년 예산액 51억 7,600만원 중 38억 4,000만원만을 집행하고, 13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또한, 국외업무여비(220-02) 목 3,100만원 역시 전액 불용하였다.

이와 같은 불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등기특별회계의 일시적 세입 부족 상황에 대응하여 일부 등기업무전산화 예산의 자체적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특별회계의 세입부족을 이유로 계획에 따르지 않고 불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편성되어 있던 임차료는 대법원의 노후화된 정보화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에 사용되려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용에 의하여 WAS서버 등 다수의 노후화된 장비가 교체일정이 늦춰지게 되었다.

[노후화 장비 교체 계획 현황]

(단위: 원)

우선 순위	2025년 예산상 당초 구매 대상 장비	최초 도입시점	내용연한 만료시점	당초 도입일정	변경 후	구매금액
1	디스크어레이 및 백업복구솔루션	2016년	2021년	'25년 4분기	계획변경 없음 ('25.12.10.)	24,028,090
2	일일점검자동화 솔루션 외 5건	2025년 신규 도입	-	'25년 4분기	계획변경 없음 ('25.10.29.)	21,705,950
3	WAS서버 등	2011년	2016년	'25년 1분기	'25.6.19.	270,968,720
4	장애인 편의기능 도입 통합무인발급기	2026년 신규 도입	2031년	'25년 4분기	'26.3.13.	252,467,750
5	등기콜센터 노후장비 교체	2011년	2016년	'25년 4분기	'26년 3분기 구매 추진	69,446,840
6	서버(UNIX, X86)	2007 ~2012년	2012 ~2017년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85,769,200
7	네트워크(데이터센터 L2, L3, L4스위치)	2014 ~2016년	2019 ~2021년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59,988,870
8	등기소 L2, L3 스위치	2015 ~2018년	2020 ~2023년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43,109,760
9	저장장치(스토리지, SAN 스위치)	2011 ~2016년	2016 ~2021년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22,140,000

(단위: 원)

우선 순위	2025년 예산상 당초 구매 대상 장비	최초 도입시점	내용연한 만료시점	당초 도입일정	변경 후	구매금액
10	소프트웨어(미들웨어, WAS, DBMS 등)	신규 도입	-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75,007,780
11	방화벽(소형, 중형, 대형)	2018년	2022년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35,445,650
12	침입방지시스템 등	2018년	-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14,909,400
13	가상 사설망(VPN)	2016~2018년	-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143,905,460
14	HSM중계서버 및 중계서버OS	2015년	2020년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3,198,390
15	DB 접근제어 및 암호화 등	2008년, 2015~2017년	-	'25년 4분기	'26년 4분기 구매 추진	20,887,950

주. '-' 표기는 별도의 내용연한이 없는 경우임  
자료: 대법원

예컨대 UNIX 서버의 경우 통상 내용연한은 6년인데, 대법원이 보유한 41개는 2007년 내지 2011~2012년에 도입된 것으로 이미 연한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불용에 따라 2026년 4분기에나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x86 서버 역시 내용연한이 6년 정도로, 대법원이 보유한 27개 수량은 2013년 도입된 것이지만 이번 불용에 따라 2026년 4분기로 교체 시기가 늦춰졌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데이터센터 L2, L3, L4스위치) 역시 대법원이 2014~2016년 경 도입했던 것으로, 내용연한이 6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미 연한을 6년 가량 초과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 부족에 대응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 자체를 반드시 부당한 결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조정은 국회에서 이미 의결된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을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하고 조정대상의 선별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현재 교체가 지연된 노후장비는 대체로 내용연한을 상당 기간 경과한 것이므로, 향후 대법원은 이미 내용연한이 장기간 초과한 노후장비의 교체를 적기에 실시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sup>1)</sup> 사업이란, 소년·아동보호사건 및 가사사건 등의 특성에 맞는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 대상으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물적 시설 확보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의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계획액은 31억 6,100만원, 계획현액은 35억 8,400만원으로 이중 6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차년도에 4억 4,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액은 28억 5,1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소년보호 등 지원	9,207	9,207	423	-	9,630	6,386	449	2,795	8,764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3,161	3,161	423	-	3,584	617	449	2,518	2,851

자료: 대법원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행정상 절차 지연으로 기본계획이 늦어졌다는 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실시설계와 병행하는 것으로 당초 예정하였다가 계획을 수정하면서 실시설계가 무기한 중단되었다는 점, 실시설계가 재개된 후에도 사업 지연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경기도 여주시에 가정법원의 각종 후견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건 당사자를 위한 관찰·교육·상담·집중치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중심 기관으로서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4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1161-304)						
사업 위치	경기도 여주시 흥문동 146-3 일원						
사업 규모	건축부지: 6,036㎡, 건물연면적: 8,668㎡						
사업시행 방법	직접수행						
사업시행 주체	대법원						
재원조달	국고 100%(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기간	2024~2028년(5년)						
총사업비	37,893백만원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여부: 대상						
	2024 (집행액)	2025 (집행액)	2026 (예산현액)	2027 (예산액)	2028 (예산액)	2029 (예산액)	합계
7	617	3,300	11,784	13,756	8,429	37,893	

(단위: 백만원)

구분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1161-304)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전용	이월액	불용액
예산 집행내역	2024	430 (430)	7 (7)	-	423	-
	2025	3,161 (3,584)	617 (617)	-	449	2,518
	2026	2,851 (3,300)	- (-)	-	-	-
사업집행 절차별 추진 경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5.: 신축 건축기획 수립</li> <li>○ 2024.12.~2027.1.: 기본 및 실시설계(24개월)</li> <li>○ 2025.7.: 설계용역 중지(중간설계적정성 검토 후 총사업비 조정 시 까지)</li> <li>○ 2027.5.~2029.10.: 착공 및 공사(30개월)</li> <li>○ 2029.10.: 준공(예정)</li> </ul>					

자료: 대법원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편성된 건설보상비 전액(25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계획상 기본설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는 2026년 1월에는 완료되고, 이에 2026년 6월 경에는 착공하는 것이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상 절차 등의 지연으로 기본설계가 6개월 가량 지연되어 2025년 7월에서야 완료되었다.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설계 계약 현황]

구분	당초 계획기간	실시기간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현재까지 지급내용
기본 설계	'24.6. ~'25.3.	'24.12. ~'25.7.	(주)종합건축사 사무소 이림	10억 6,650만원	(선금 25.02.20.) 3억 1,995만원 (기성금 25.08.19.) 2억 2,397만원
실시 설계	'25.4. ~'26.1.	'25.7. ~중지	-		-

자료: 대법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부지의 경우 (구)여주지원의 부지로 활용되었고, 용도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8] 제2호 아항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되는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이 8,380㎡로 이를 초과하므로, 이에 대법원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하여 용도를 ‘공공청사’로 변경함으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웠다.

당초 대법원은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2025년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2024년 말 기본설계 수행자와 도시관리계획결정 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기본설계 이후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고, 이에 실시설계가 중단되었다. 2025년 4월 대법원은 여주시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신청을 하였고, 최종 고시는 2025년 12월 18일에 이루어졌다. 이에 8개월 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에 의하여 사업이 8개월 더 지연되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진행 내역]

2025.4.15.	·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 신청 (법원행정처 → 여주시)
2025.4.21.	·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요청
2025.4.24.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14일 이상)
2025.5.21.	· 여주시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1차)
2025.5.29.	· 여주시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2차)
2025.6.12.	· 제4회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의견없음)
2025.7.15.	· 여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청 (여주시 → 경기도)
2025.7.15.	· 경기도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요청
2025.10.1.	· 경기도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제출
2025.10.24.	· 제12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5.12.18.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료: 대법원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에도 불구하고, 중간설계 적정성검토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도 추가로 거쳐야 하므로, 사업은 추후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6년 4월 조달청에 중간설계 적정성검토를 요청하였고, 5월 말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에 실시설계는 계속 중단된 상태다.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2025회계연도에 편성된 건설보상비는 불용되었다. 대법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2025.12.18.에서야 최종 통보를 받아 2025년 편성된 건설보상비 2,518백만원을 불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2)</sup> 이에, 건설보상비는 종래 2025~2027년까지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2026~2028년까지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당초 계획상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실시설계와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가 이를 수정하여 결정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 때문에 2025년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간적정성검토 이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이후 실시설계를 한 후 다시 적정성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려우며, 연내 착공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다. 2028년 9월 준공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사업 추진 현황]

구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 현황	비고(변동 사유 등)
기본계획	'24.3.	'24.7.	행정상 절차 지연
기본설계	'24.6.~'25.3.	'24.12.~'25.7.	행정상 절차 지연
실시설계	'25.4.~'26.1.	'25.8~중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
공사 입찰 및 계약	'26.2.~'26.5.	미정	-
착공	'26.6.~'28.8.	미정	-
준공	'28.9.	미정	-

자료: 대법원

2) 건설보상비는 대법원이 재정경제부와 유상관리전환을 협의하여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의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83억 9,300만원을 3년에 걸쳐 나누어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행정상 절차 지연으로 기본계획이 늦어졌다는 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실시설계와 병행하는 것으로 당초 예정하였다가 계획을 수정하면서 실시설계가 무기한 중단되었다는 점, 실시설계가 재개된 후에도 사업 지연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적인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는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 가정법원 사건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후견·복지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이므로,<sup>3)</sup> 동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업 취지를 적시에 달성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

3) 가정법원에서는 재판업무 외에도 가사사건 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연계, 관계개선 프로그램, 면접교섭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는 각급 법원의 청사 사정이나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인프라의 차이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업무에서의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사건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고,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 가. 현황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sup>1)</sup>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지식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시킴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의 2025년 계획액은 41억 200만원, 이중 39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7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계획액은 39억 5,7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사법서비스항상 상임전문심리 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13,894	13,329	197	-	13,526	12,879	37	610	14,869
	4,625	4,102	-	-	4,102	3,935	-	167	3,957

자료: 대법원

## 나. 분석의견

대법원은 감정(鑑定) 관리센터 6개소를 임차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1개소만 임차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한 임차료는 불용하였는 바, 향후 신규 시설 운영 시 소요 공간 규모 및 임차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문심리위원 제도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지식재산권, 건축, 의료, 환경 등)에서 법원 외부의 관련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후, 해당 사건

김민석 예산분석관(kms@assembly.go.kr, 6788-4644)

1)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6의 내역사업

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심리위원 운영 사업에서는 ‘감정관리 절차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 감정(鑑定) 절차의 효율적 진행 및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감정절차 지연에 따른 재판절차의 연기를 방지하고 감정결과의 충실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2024년부터 감정관리 절차지원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2025년부터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감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감정관리센터는 전국 각 고등법원(6개)에 설치되어 있다.

감정관리센터 인력은 감정담당판사(감정관리센터장 및 일반 감정담당판사), 감정관리위원(상임전문심리위원 겸임),<sup>2)</sup> 직원으로 구성된다. 감정담당판사는 감정관리위원을 관리하고, 감정인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감정절차 전반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감정관리위원은 민사사건 중 의료, 건설 분야 감정신청 사건에 참여하여 감정절차를 관리하고, 감정관리센터 직원은 감정사건관리를 위한 재판사무 및 법원 행정사무를 지원한다.

대법원은 2025년 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6곳(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감정관리센터를 임차의 형식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임차료 3억 5,900만원, 공사비 3억 2,000만원, 센터 운영비 1,200만원 등 감정관리절차에 필요한 사업비 29억 6,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 [감정관리절차 지원을 위한 2025년 예산 편성내역]

감정관리절차 지원: 2,963백만원 (순증)
○ 감정관리위원 위촉: 2,052백만원 (순증)
- 감정관리위원 19명(건설 6명, 의료 13명) × 12개월 x 9백만원
○ 감정관리사무실 설치: 899백만원 (순증)
- 각 고등법원 권역별로 6곳(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수원)에 감정관리사무실 설치
* 공사비 320백만원(서울 120,000천원+그 외 5지역 각 40,000천원)
* 자산취득비 220백만원
* 임차료 359백만원(서울 254,256천원+대구 35,905천원+부산 34,024천원+광주 34,456천원)
○ 감정관리사무실 운영비: 12백만원 (순증)

자료: 대법원

2) 예컨대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건설 분야에서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 등이 감정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주 5일 상근이며, 각 고등법원의 감정관리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5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정절차 관리제도 운영에 법원 내부 전산 서버 사용이 필수적인데 외부 임차사무실을 마련하는 경우 서버 구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추가로 예산(정보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서울고등법원만 법원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센터를 설치하고<sup>3)</sup> 다른 5개 고등법원은 청사 내 공간을 마련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임차료 3억 5,900만원 중 서울에만 2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집행하고, 나머지 5개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임차료 1억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감정관리센터 운영 현황]

고등법원	센터 위치	임차료	근무인력	센터 개소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250백만원	위원 15명, 직원 3명	2025.1.1. <sup>1)</sup> (2025.10.17.)
대구	청사 내	-	위원 3명, 직원 1명	2025.1.1.
부산	청사 내	-	위원 3명, 직원 1명	2025.1.1.
광주	청사 내	-	위원 3명, 직원 1명	2025.1.1.
대전	청사 내	-	위원 3명, 직원 1명	2025.1.1.
수원	청사 내	-	위원 4명, 직원 1명	2025.1.1.

주: 1) 서울고등법원 청사 내 임시사무실을 마련하여 개소한 후, 임차 사무실의 공사(내부공사, 서버 구축)가 완료된 2025.10.17. 정식 센터를 개소하였음

자료: 대법원

이와 같은 불용은 사전에 예산편성 및 센터의 추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버 이용 문제 및 법원 내의 유휴 공간 이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은 신규 시설의 운영 시 소요 공간 규모 및 임차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감정관리센터는 신규위촉 감정관리위원 인원수가 많아 청사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감정관리센터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당시 외부 임차 사무실을 준비 중이던 조정센터 및 스마트워크센터와 연계하여 서버를 구축할 수 있어 당초 계획한 대로 외부에 임차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